

법령등록번호

11-1170000-000550-01

www.mileg.go.kr

MONO12021000004485

328.377 -21-2

2020

의원입법 지원업무 편람

2020. 12.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 개정안 1건
- 의원입법 지원업무 개편
- 입법지원 업무개선 지원업무 추진방안
- 의원입법 업무개선
- 의원입법지원시스템의 활용



법제처

0002726967



2021.03.05(기증)

2020 의원입법 지원업무 편람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일러두기



이 편람은 의원입법 발의부터 공포까지 의원입법의 전 과정에서 정부 지원업무의 절차·방법·내용 등을 종합·정리한 것으로서, 의원입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이 편람은 의원입법의 국회심의과정, 각 입법단계별 정부의 의원입법 지원업무의 구체적 내용, 의원입법 검토기준,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등 의원입법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이 정리되어 있는 자료로서 본체차 직권뿐 아니라 각 부처 공무원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제19대 국회부터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의원입법 지원업무를 위한 정부의 내부 업무용 시스템인 의원입법지원시스템 활용방법도 자세히 수록하였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CONTENTS



의원입법 개관



1 의원입법의 의의	3
1) 의안의 개념	3
2) 의원입법의 개념	3
3) 의원입법의 요건	4
4) 관련 용어 해설	5
2 의원입법의 현황	8
1) 의원입법 발의 현황	8
2) 의원입법 처리 현황	9
3) 법률안 유형별 발의 통계	10
4)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별 법률안 접수 건수	11
5) 대통령 임기법 법률안 발의 통계	12
3 의원입법 과정	14
1) 법률안의 입안 및 발의(제안)	14
2) 위원회 회부	18
3) 위원회 심사	20
4)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26
5) 심사보고서의 작성·제출	27
6) 전원위원회의 심사	28
7) 안건의 신속처리	29
8) 본회의 심의	29
9) 무제한토론	30
10) 정부이송 및 공포	30
11) 환부(還付)와 재의(再議)	30
12) 대통령령·총리령에 대한 검토	31

2 **장** 의원입법 지원업무 개관



1 의원입법 지원업무의 목적 및 필요성	35
2 법제처의 의원입법 지원조직	37
3 의원입법 지원업무 절차	39

3 **장** 입법단계별 의원입법 지원업무 추진절차



1 법안 발의 단계에서의 의원입법 지원	43
1) 의원입법 검토에 필요한 참고자료 수집 및 제공	43
2) 의원입법 모니터링 및 법안 처리현황 상황보고	45
3) 의원입법 발의사실 통보	45
2 국회 심의 단계에서의 의원입법 지원	46
1)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 및 부처협의	46
2)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통한 의견조정	55
3) 국회 상임위원회의 의견제시 요청에 대한 처리	90
3 그 밖의 의원입법 지원 업무	94
1) 중앙부처 의원입법 담당자 면담회 개최	94
2) 의원입법 세미나 개최	101

CONTENTS

4

의원입법 검토기준



1 검토 대상	107
2 검토기준 및 검토사례	108
1) 법리적 정합의 유무	108
2) 다른 법률과의 충돌 여부	121
3) 조세의 감면 여부	124
4) 재정지출의 증가 여부	126
5) 정부조직의 신설·폐지·변경 및 인원의 소요 여부	128
6) 규제의 신설·강화 여부	132
7) 입법정책상 부처 간 이견 및 그 밖에 집행상 문제 여부	135

5

의원입법지원시스템의 활용



1 의원입법 지원 업무 소개	141
1) 의원입법의 심사 절차	141
2) 법제처의 의원입법 지원	142
3) 의원입법지원시스템 소개	143
2 의원입법지원시스템 사용자 준비사항	146
1) 시스템 이용 대상	146
2) 시스템 접속	146
3) 회원가입 및 로그인	147
4) 사용자정보 현행화	152

3	법제처용 매뉴얼	153
1)	시스템 접속	153
2)	의원 법률안 검토	154
3)	법제처 현황·관리	161
4)	국회입법현황	164
5)	자료실 (현황/동계)	165
6)	통합검색	165
7)	질의답변/FAQ	166
8)	의원입법 지원 소개	168
4	소관부처용 매뉴얼	167
1)	법무담당부서의 확인 및 법안 검토 담당부서 지정	167
2)	소관부서의 의견조회 실시 및 협의결과 등록	171
5	관계부처용 매뉴얼	173
1)	법무담당부서의 확인 및 법안 검토 담당부서 지정	173
2)	관계부처 담당부서의 의견제시 및 등록	177
6	그 밖의 활용 정보	179

6

참고자료



1	관련 법령	187
2	의원입법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	218
3	주요 홈페이지 안내	219



2020 의원입법
지원업무 편람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1 장

의원입법 개관

1. 의원입법의 의미
2. 의원입법의 현황
3. 의원입법 과정

2020 의원입법 지원업무 편람

House of Commons Legislation



01 • 의안의 개념

국회는 법률안, 예산안, 동의안 등의 심의를 통하여 헌법이 요구하는 국회의 기능을 수행하고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게 된다. 이와 같이 국회에서 심의하는 법률안, 예산안, 동의안 등과 같은 안건을 통칭 “의안”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되고 있는 의안의 개념은 헌법, 국회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안건 중에서 특별한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어 국회에 제출된 것을 말한다.

의안의 종류에는 헌법개정안, 법률안, 예산안, 동의안, 결의안, 권의안, 규칙안 등이 있으며, 이 중 법률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02 • 의원입법의 개념

우리 헌법은 제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하여 국회입법의 원칙을 명문으로 선언하고 있으면서도 제52조에서는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하여 법률안 제출권을 국회뿐 아니라 정부에도 부여하고 있다.

보통 “의원입법”이란 의원발의 법률안(bills)이 법률(law)이 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의원발의 법률안(Member's Bills)과는 의미상 차이가 있다. 하지만 정부제출 법률안(Government's Bills)의 상대개념으로서 “의원발의 법률안”의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좁은 의미로 의원입법을 말할 때에는 국회의원이 직접 발의한 법률안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의회 내 위원회 발의 법률안을 포함하게 되며, 우리 국회에서 통상적으로 말하는 “의원입법”은 후자까지를 포함한다.

구분	제안권자		근거 규정
의원입법	국회	국회의원	• 헌법 840,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위원회	• 국회법 851, 국회의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과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정부입법	정부		• 헌법 852,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03 • 의원입법의 요건

의원입법의 경우 국회의원은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국회법」 879(1)). 종전에는 20명 이상의 찬성을 요건으로 하였으나 2003년 「국회법」 개정을 통하여 현재는 국회의 원 수의 발의요건을 10명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의사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정 수 이상의 찬성이 없는 의안은 국회실의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이다. “10명 이상의 찬성”은 발의자를 포함하여 최소한 10명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발의자가 1명이면 찬성자는 9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의안은 국회의 하기 중이나 폐회기간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제출할 수 있다. 제10대 국회까지는 폐회 중에 제출하더라도 다음 국회가 집회된 후에 본회의에 보고한 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에서는 회부 받은 후에 심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행 「국회법」은 폐회 중에도 의원이 의안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제출된 의안의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국회법」 881(1)).

그리고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위원을 구분하여 법안실명제를 채택하여 해당 법률안에 대하여 그 제목의 부제(副題)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한다(「국회법」 879(1)). 또한 예산 또는 기금설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국회법」 879(2)(1)~(2)).

이렇게 발의된 법률안은 「국회법」과 국회의사에 관한 각종 국회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에 의해 본회의에 상정되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의결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헌법 849).

04 • 관련 용어 해설

㉑ 의안·안건·의제(議案·案件·議題)

- 의안: 헌법, 「국회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안건 중 특별한 형식의 요건을 갖추어 국회에 제출된 것을 말한다.
- 안건: 국회에서 논의대상이 되는 모든 사항을 말하여 의안과 그 밖의 사항을 포함한다.
- 의제: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일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에 설정되어진 심의 대상 안건과 제목을 말한다.

㉒ 발의·제출·제안·제의(發議·提出·提案·提議)

헌법과 「국회법」에서 의안 등을 국회에 내는 것을 발의, 제출, 제안 또는 제의 등의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이들 용어는 다음과 같이 구별된다. 일반적으로 발의와 제출을 포함하여 “제안”이라고도 한다.

- 발의: 의원이 의안을 낼 때
- 제출: 정부가 의안을 낼 때
- 제안: 위원회가 의안을 낼 때
- 제의: 의장이 의안을 낼 때

㉓ 의결·부결·폐기(議決·否決·廢案)

- 의결: 합의를 전제 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상의 의사형성행위로서 그 결과는 가결·부결·동의·승인·채택 등으로 나타나며, 가결(可決)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 부결: 의결정족수가 미달하는 의결의 형태이다.
- 폐기: 제출된 안건을 심의·의결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행정적 조치로서 국회에서 의안이 폐기되는 경우는 다음의 4가지가 있다.

① 위원회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여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 후 의원(30인 이상)으로부터 일정 기간(제외 또는 부의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 내에 본회의 부의요구가

없는 경우(「국회법」 857)

- ② 「국회법」 상 의결시한이 경과할 경우(「국회법」 8127~8130의2)
- ③ 의안의 제안권자가 상실된 경우
- ④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헌법 853)

■ 원안·수정안·대안·위원회안(原案·修正案·代案·委員會案)

- 원안 : 국회에 최초로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 파부된 의안을 말한다.
- 수정안 : 의안의 원안에 대하여 다른 의사를 기하여 추가·삭제·변경 등을 행하는 것을 수정안이라 하며, 그 수정내용에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발의하는 것을 수정안이라 한다. 수정안은 위원회 수정안과 본회의 수정안으로 구분되며, 그 내용은 원안의 목적 또는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작성되어야 한다.
- 대안 : 대안은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 단계에서 소관 위원회 또는 의원이 원안을 폐기하고 이를 대신하여 제출하는 새로운 법률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원안의 목적 또는 성격이 바뀔 정도로 원안의 체계 및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전혀 다른 내용으로 새로이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대안에 반영된 원안은 대안반영폐기된다.
- 위원회안 : 위원회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입안한 안으로서 원안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심의과정에서 원안을 폐기하고 그 대신으로 제출하는 대안과는 달리 원안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아니한다.

■ 동의(動議)

의원 또는 위원이 의사결정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만(議)을 갖추는 동의 형식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회의장에서 직접 발의하는 것을 말한다. 동의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발의할 수 있으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동 의자 의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이 된다(「국회법」 889).

■ 철회(撤回)

의원은 그가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動議)를 철회할 수 있다. 이 때 발의자가 아닌 찬성자의 동의(同意)는 필요하지 아니하지만, 2명 이상 공통발의인 경우에는 발의의원 2분의 1 이상이

법안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 법안의 원안 위원회에서 의결가반 의안 또는 법안을 법의안 때에는 법회의 또는 위원회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국회법〕 890)

● 법안(法案)

위원회에서의 법안은 위원회가 이미 가결한 의안에 대하여 그 의결을 무효로 하고 전과 다른 내용으로 법률안이 다시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위원의 법안은 해당 위원회 위원회 동의를(勸議)로 인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한다.〔국회법〕 891). 법안 동의를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총회와 총회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Memo



01 • 의원입법 발의 현황

제헌국회 이래 양적 측면에서 정부입법어 의원입법보다 우세하다가 제12대 국회부터 의원입법이 정부입법을 추월하여 현재에는 의원입법이 정부입법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국회 대수	총 제안 건수	의원입법 건수(비중)	정부입법 건수(비중)
제헌국회(48~50)	248	105 (42.3%)	143 (57.7%)
제2대(50~54)	420	202 (48.1%)	218 (51.9%)
제3대(54~58)	410	171 (41.7%)	239 (58.3%)
제4대(58~60)	325	124 (38.1%)	201 (61.9%)
제5대(60~61)	298	139 (46.6%)	159 (53.4%)
국가재건최고회의(61~63)	1,158	545 (47.1%)	613 (52.9%)
제6대(63~67)	658	416 (63.2%)	242 (36.8%)
제7대(67~71)	535	244 (45.6%)	291 (54.4%)
제8대(71~72)	49	14 (28.6%)	35 (71.4%)
비상국무회의(72~73)	271	0 (0%)	271 (100%)
제9대(73~79)	633	154 (24.3%)	479 (75.7%)
제10대(79~80)	130	5 (3.9%)	125 (96.1%)
국가보위입법회의(80~81)	189	33 (17.5%)	156 (82.5%)
제11대(81~85)	491	204 (41.5%)	287 (58.5%)
제12대(85~88)	379	211 (55.7%)	168 (44.3%)
제13대(88~92)	938	570 (60.8%)	368 (39.2%)
제14대(92~96)	902	321 (35.6%)	581 (64.4%)
제15대(96~00)	1,951	1,144 (58.6%)	807 (41.4%)
제16대(00~04)	2,507	1,912 (76.3%)	595 (23.7%)
제17대(04~08)	7,489	6,387 (85.3%)	1,102 (14.7%)
제18대(08~12)	13,912	12,219 (87.8%)	1,693 (12.2%)
제19대(12~16)	17,822	16,729 (93.9%)	1,093 (6.1%)
제20대(16~20)	24,138	23,045 (95.5%)	1,094 (4.5%)

02 • 의원입법 처리 현황

제15대 국회 이후 의원입법의 가결건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발의건수 증가폭이 더 커서 의원입법의 가결률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¹⁾

국회 대수	의원입법					정부입법				
	제출 건수	가결 건수	통과 건수	가결률	통과률	제출 건수	가결 건수	통과 건수	가결률	통과률
제1대	105	51	60	48.6%	57.1%	143	97	106	67.8%	74.1%
제2대	202	80	104	39.6%	51.5%	216	135	150	61.9%	68.8%
제3대	171	71	82	41.5%	48.0%	239	83	91	34.7%	38.1%
제4대	124	32	40	25.8%	32.3%	201	43	53	21.4%	26.4%
제5대	139	25	36	18.0%	25.9%	159	39	43	24.5%	27.0%
제6대	416	178	235	42.8%	56.5%	242	154	200	63.6%	82.6%
제7대	244	123	151	50.4%	61.9%	291	234	255	80.4%	87.6%
제8대	14	7	6	50.0%	57.1%	36	33	34	91.3%	97.1%
제9대	154	84	102	54.5%	66.2%	479	460	470	96.0%	98.1%
제10대	5	3	3	60.0%	60.0%	125	96	96	76.4%	76.4%
제11대	204	84	104	41.2%	51.0%	287	257	279	89.5%	97.2%
제12대	211	66	120	31.3%	56.9%	162	156	164	92.9%	97.7%
제13대	570	171	352	30.0%	61.8%	366	321	355	87.2%	96.5%
제14대	321	119	167	37.1%	52.0%	561	537	561	92.4%	96.6%
제15대	1,144	461	687	40.3%	60.1%	807	669	727	81.7%	91.3%
제16대	1,912	517	1,031	27.0%	53.9%	596	431	551	72.4%	92.6%
제17대	6,387	1,352	2,938	21.2%	46.0%	1,102	563	883	51.1%	80.1%
제18대	12,220	1,663	4,890	13.6%	40.0%	1,693	690	1,269	40.8%	76.1%
제19대	16,729	2,415	6,827	14.4%	39.0%	1,023	379	803	34.7%	73.5%
제20대	23,045	2,890	8,061	12.5%	35.0%	1,094	305	738	27.9%	67.5%

1) 또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안에 반영되어 그 원인을 제거시키는 처리법대안, 대안반영제기도 실질적으로는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많으므로, '가결 + 대안반영제기'인 법률안을 '국회 통과'로 보고 그 건수 및 비율을 별도로 산정해보았다.

03 • 법률안 유형별 발의 통계

구분	주체	일부개정	전부개정	폐지	제정	계	합계
17대	정부	820 (74.4%)	111 (10.1%)	14 (1.3%)	157 (14.2%)	1,102 (100.0%)	7,489
	의원	4,967 (86.7%)	57 (1.0%)	85 (1.5%)	619 (10.8%)	5,728 (100.0%)	
	위원장	531 (80.6%)	46 (7.0%)	7 (1.1%)	75 (11.4%)	659 (100.0%)	
18대	정부	1,492 (86.1%)	61 (4.8%)	35 (2.1%)	65 (5.0%)	1,693 (100.0%)	13,913
	의원	10,267 (92.0%)	77 (0.7%)	30 (0.3%)	787 (7.0%)	11,191 (100.0%)	
	위원장	913 (88.7%)	55 (5.3%)	0 (0.0%)	61 (5.9%)	1,029 (100.0%)	
19대	정부	1,012 (92.6%)	22 (2.0%)	5 (0.5%)	54 (4.9%)	1,093 (100.0%)	17,822
	의원	14,431 (93.4%)	65 (0.4%)	19 (0.1%)	929 (6.0%)	15,444 (100.0%)	
	위원장	1,192 (92.8%)	21 (1.6%)	0 (0.0%)	72 (5.6%)	1,285 (100.0%)	
20대	정부	1,027 (93.9%)	20 (1.8%)	0 (0.0%)	47 (4.3%)	1,094 (100.0%)	24,139
	의원	20,412 (94.5%)	82 (0.4%)	67 (0.3%)	1,031 (4.8%)	21,592 (100.0%)	
	위원장	1,374 (94.6%)	17 (1.2%)	0 (0.0%)	62 (4.8%)	1,453 (100.0%)	

04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별 법률안 접수 건수

순서	제19대 국회		제20대 국회	
	소관상임위	건수	소관상임위	건수
1	국회운영위원회	357	국회운영위원회	533
2	법제사법위원회	1,300	법제사법위원회	1,947
3	정무위원회	1,187	정무위원회	1,687
4	기획재정위원회	1,660	기획재정위원회	2,119
5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768	교육위원회	943
6	외교통상통일위원회	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029
7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1,627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15
8	외교통일위원회	235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59
9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6	외교통일위원회	323
10	국방위원회	430	국방위원회	549
11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8	안전행정위원회	164
12	안전행정위원회	2,386	행정안전위원회	3,050
13	농림수산식품위원회	6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813
1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21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652
15	산업통상자원위원회	971	산업통상자원위원회	102
16	지식경제위원회	5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298
17	보건복지위원회	1,896	보건복지위원회	2,590
18	환경노동위원회	1,223	환경노동위원회	2,145
19	국토교통위원회	1,613	국토교통위원회	2,250
20	국토해양위원회	78	정부위원회	34
21	정보위원회	32	여성가족위원회	412
22	여성가족위원회	376	특위	22
23	행정안전위원회	49	미확정	3
24	특위	151		
25	미확정	8		
	합계	17,619	합계	24,139

05 • 대통령 임기별 법률안 발의 통계

	제안일자	의원	위원장(대안)	정부	합계
	노태우 (13대)	1988.02.25~1988.12.31	191	31	64
1989.01.01~1989.12.31		184	48	89	321
1990.01.01~1990.12.31		34	20	104	158
1991.01.01~1991.12.31		53	9	111	173
1992.01.01~1992.12.31		27	3	54	84
1993.01.01~1993.02.24		13	2	10	25
총 합계		502	113	432	1,047
	제안일자	의원	위원장(대안)	정부	합계
	김영삼 (14대)	1993.02.25~1993.12.31	54	14	179
1994.01.01~1994.12.31		67	23	172	262
1995.01.01~1995.12.31		88	26	165	279
1996.01.01~1996.12.31		171	18	168	357
1997.01.01~1997.12.31		163	52	138	353
1998.01.01~1998.02.24		21	4	18	43
총 합계		584	137	840	1,541
	제안일자	의원	위원장(대안)	정부	합계
	김대중 (15대)	1998.02.25~1998.12.31	168	122	281
1999.01.01~1999.12.31		276	140	202	618
2000.01.01~2000.12.31		250	28	199	474
2001.01.01~2001.12.31		448	62	135	645
2002.01.01~2002.12.31		324	59	109	492
2003.01.01~2003.02.24		46	6	9	61
총 합계		1,512	414	935	2,861
	제안일자	의원	위원장(대안)	정부	합계
	노무현 (16대)	2003.02.25~2003.12.31	560	98	139
2004.01.01~2004.12.31		840	64	206	1,110
2005.01.01~2005.12.31		1,817	174	242	2,233
2006.01.01~2006.12.31		1,462	165	325	1,942
2007.01.01~2007.12.31		1,476	192	319	1,987
2008.01.01~2008.02.24		145	32	14	191
총 합계		6,290	725	1,245	8,260

이명박 (17대)	재안일자	의원	위원장(대안)	정부	합계
	2008.02.25~2008.12.31	2,706	83	549	3,338
	2009.01.01~2009.12.31	3,009	272	399	3,680
	2010.01.01~2010.12.31	2,439	166	406	3,011
	2011.01.01~2011.12.31	2,893	494	330	3,717
	2012.01.01~2012.12.31	2,891	106	294	3,291
	2013.01.01~2013.02.24	585	14	16	615
총 합계	14,523	1,136	1,994	17,652	
박근혜 (18대)	재안일자	의원	위원장(대안)	정부	합계
	2013.02.25~2013.12.31	4,349	283	240	4,872
	2014.01.01~2014.12.31	3,707	330	309	4,346
	2015.01.01~2015.12.31	3,976	465	238	4,679
	2016.01.01~2016.12.31	4,369	255	338	4,962
	2017.01.01~2017.04.19	1,893	117	45	1,855
총 합계	18,094	1,450	1,170	20,714	
홍교인 권한대행	재안일자	의원	위원장(대안)	정부	합계
	2017.04.20.~2017.05.09	38	0	5	43
총 합계	38	0	5	43	
문재인 (19대)	재안일자	의원	위원장(대안)	정부	합계
	2017.05.10~2017.12.31	3,753	228	213	4,204
	2018.01.01~2018.12.31	5,891	446	275	6,612
	2019.01.01~2019.12.31	5,706	303	211	6,250
	2020.01.01~2020.05.29	243	221	13	477
총 합계	15,603	1,228	712	17,543	



Memo

3

의원입법 과정



의원입법 과정은 일반적으로 크게 ① 법률안의 발의, ② 발의된 법률안의 심의·의결, ③ 의결된 법률안의 정부이송 및 대통령의 공포의 3단계로 구분된다. 의원입법의 일반적 절차는 다음 페이지 그림과 같다.

01 • 법률안의 입안 및 발의(제안)

절차가 아닌 국회에서 입안되는 법률안의 종류에는 ① 의원발의 법률안과 ② 위원회제안 법률안이 있다.

1. 의원발의 법률안

① 입법 준비 단계

의원입법에 대해서는 연간 입법계획의 수립이라는 제도나 절차가 없고, 국회의원 개개인의 입법계획과 재량에 따라 법률안의 발의가 이루어진다. 국회의원 각자가 독자적으로 법안을 발의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특정 주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분야에서 입법동기를 찾아 입법을 구상하고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소속 정당의 주요 정책과 관련된 법률안은 정당 내 정책기구의 결정 또는 정당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입법이 추진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도 법률안의 발의는 정당 소속 의원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 각 정당은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정책 위원회 등 정책을 입안하는 기구를 두어 법률안 발의를 지원하고 있으며, 정당에 소속된 전문 위원은 정책을 개발하고 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대국민 관계에 있어 전문가 및 일반국민의 의견을 수집하기 위하여 당 차원에서 세미나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하기도 한다.

법률인 심사절차



※ 신속처리대상인건 지정 시 소관위 180일, 법사위 90일 이내 심사 완료

② 법률안 기초 단계

법안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원은 법제실무자에게 법률안의 기초를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직접 보좌직원에게 지시하거나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도 있고 국회 내 설치된 법제지원 기구를 활용하기도 한다. 의원입법을 지원하는 법제지원기구로는 국회사무처 법제실과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예산정책처가 있고, 비영리법인인 국회 미래연구원도 있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법률안의 기초 및 정안 등의 법제지원을 위한 조직으로서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법제지원과 각종 법제자료의 제공역할을 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중립·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여 그 결과를 국회의원 등에게 제공함으로써 국회의 입법 및 정책개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설립된 국회의 독자적인 입법·정책 조사분석기관으로서 의원입법과정에서는 의원입법의 준비단계에서 의원의 의뢰를 받아 법률안 입안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조사·연구하여 제공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연구분석·평가를 통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특히 의원입법과정에서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에 대하여 그 법률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의원입법과정에서 반드시 국회사무처 법제실,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예산정책처 등의 법제지원기구의 지원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최근 그 활용도가 높아지는 추세이다.²⁾

③ 비용추계서 작성 단계

국회사무처 법제실을 통하여 작성되거나 의원실에서 직접 작성한 법률안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의원은 법률안을 제출하기 전에 비용추계서를 마련하거나 국회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국회법」 제79조의2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1). 비용추계서의 작성은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하거나 의원실 등에서 직접 작성할 수 있다.

④ 국회 제출 단계

법률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서 소정의 찬성자(발의자 포함 10인 이상)와 면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의의원외 찬성의원들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안 제명의 부제에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되, 발의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 발의의원 1인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전헌재, 「국회가 보는 의원입법의 현황 및 의원입법과정에서의 국회의 책임과 역할」, 2012. 8. 28 입법선진화 포럼

■ 위원회제안 법률안

① 제안자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이나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국회법」 제51).

② 소관 사항

상임위원회는 만전이 외부법으로써 심사권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자주적인 심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소관에 관하여 의안을 스스로 입안하여 제출할 수 있다(「국회법」 제36·제37·제51).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은 「국회법」 제37조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정 사항에 대한 법률안의 입안·심사를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도 그 목적 범위에서 법률안을 입안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제안 법률안의 유형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의안은 “위원회안”과 “위원회제출 대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위원회안”은 위원회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의안을 입안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위원회제출 대안”은 국회의원 또는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 취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내용을 대폭 수정하거나 체계를 다르게 하여 원안을 대신하는 안을 제출하는 것이다. 즉, “대안”은 원안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심사과정에서 원안을 폐기하고 그 대신으로 제출하는 것인데 반하여 “위원회안”은 원안의 존재 여부를 가리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④ 제안절차

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입안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내용을 위원회에서 질의·토론·측조심사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채택(의결)하거나 위원회 동의를(勸諭)로 제안된 내용을 위원회에서 직접 심사·의결 또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사·보고하게 한 다음 의결함으로써 위원회안을 마련하게 된다.

위원회제안 법률안 역시 예산 또는 기금상의 재정수반 요인이 있으면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추계요구서를

본부하여야 하고 국회예산결핵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 전에 국회예산결핵처의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국회법」 §79의21).

위원회에서 제출한 법률안은 이미 그 위원회에서 승인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것이므로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지만, 그 의안의 내용이 불충분하다는 등의 이유로 다시 심사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국회법」 §88).

본회의 심의 중에도 위원회로 하여금 다시 심사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피결로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할 수 없다(「국회법」 §93).

02 • 위원회 회부

법률안 등 의안을 '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것은 의장이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을 심사할 권한이 있는 소관 위원회에 송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회의장은 법률안이 제출되면 이를 인쇄하거나 전신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 심사할 권한이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한다. 폐회나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국회법」 §811). 또한 그 법률안의 내용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위원회에도 이를 회부한다.

① 소관 위원회가 상임위원회인 경우

법률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외에는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는 「국회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그 소관을 결정하되, 그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그 소관을 결정한다.

• 의원발의 법률안의 경우

제정법률안의 경우 법률안 연혁, 제정법률안의 경우 법률안의 내용, 주무부처와 「정부조직법」 및 부처별 직제 등 내용의 형식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관 위원회를 결정한다. 특히 제정법률안에서 기존 정부부처의 업무가 아닌 새로운 영역을 제도화하려는 경우에는 어느 부처업무와 연관성이 높은지, 어느 부처에서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법률안에서 주무부처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한다.

소관 부처를 변경하는 개정법률안이 발의된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해당 법률안을 소관하는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정법률의 개정법률안이 발의되는 경우에는 제정법률안 공포 시 부처한 국무위원의 소속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위원회에 회부한다.

•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

부처한 국무위원을 참조하여 소관 위원회를 결정한다. 특히, 소관부처가 둘 이상으로서 둘 이상의 국무위원이 공동으로 부처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개정 내용과 직접 관련된 1개 위원회를 소관으로 결정한다.

• 법률안의 소관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 위원회를 결정한다(「국회법」 537조, 581조).

• 위원회의 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법률안의 경우

의장은 제출된 의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위원이 소관 상임위원회 재의위원의 과반수로 의안의 심사에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국회법」 581조).

② 법률안과 관련된 특별위원회가 있는 경우

특별위원회는 수개의 상임위원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되는 위원회로서(「국회법」 544조), 구성 시에 소관 사항이 정하여지게 된다. 그 외에도 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본회의 의결을 얻어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으며(「국회법」 582조),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은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도 있다(「국회법」 582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명시적으로 법안심사권이나 의안심사권을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심사권은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1. 법률안이 다른 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경우

의장은 소관 위원회에 법률안을 회부하는 경우 그 법률안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위원회에 이를 회부하여야 하고,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국회법」 제85). 관련위원회의 의견은 소관 위원회의 결정을 기속하지는 아니하고 소관 위원회가 심사를 함에 있어서 참고의견으로 활용된다.

- 다른 상임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여러 부처의 업무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

03 • 위원회 심사

위원회의 역할은 의안에 대한 예비적 심사기관으로서 회부된 법률안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위한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위원회 심사는 입법예고 → 위원회 상정 → 제안자의 취지설명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 대체토론 → 공청회·청문회 → 소위원회 심사 및 보고 → 축조심사 → 찬반토론 → 표결의 순서를 밟게 된다.

1. 입법예고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입법예고하여야 한다(「국회법」 제82의2). 다만, 1)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입법내용의 실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입법예고를 할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에는 국회공보 등에 임의적으로 예고할 수 있도록 하여 입법예고제의 실효성이 의문시되었는데, 2011. 5. 19 「국회법」 개정시(2012. 5. 30. 시행) 국회공보 외에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도록 하였고, 입법예고를 의무화하여 그 예외사유를 병기한 것이다. 또한 종전에는 입법예고기간을 법률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는데, 개정 「국회법」에서는 그 기간을 일률적으로 10일 이상으로 병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입법예고된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소관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 중 법률안의 체계, 적용범위 및 명칭상 실체 여부 등 중요한 사항은 소관 위원회의 전문위원이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보고한다.

■ 상정

위원회에 법률안이 회부되면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정한다(「국회법」 제93조). 이 경우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견이 있는 경우엔 제외하고는 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15일(제정법률안, 전부개정법률안 및 폐지법률안은 2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는 5일)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국회법」 제59). 이는 의원에게 충분한 검토시간을 주기 위한 조치로서 이상의 기간을 ‘숙려기간’이라 한다.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않은 의안은 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위원회에 자동상정된 것으로 보도록 하되,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국회법」 제59의2). 또한 2003. 2. 4. 부터 2012. 5. 30. 「국회법」이 개정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정기회 기간 중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상정하는 법률안은 다음 연도 예산안 처리에 부수하는 법률안으로 제반하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또는 본회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였으나(법률 제6855호 「국회법」 제93의2(2)), 입법환경이 변화하여 열중 법률안 처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국회법」을 개정(2012. 5. 25. 개정, 5. 30. 시행)하면서 이 규정을 삭제하였다.

■ 제안자의 취지설명

법률안이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상정되면 제안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제안취지를 설명한다. 의원발의 법률안은 발의한 의원이 1인인 경우에는 발의 의원이, 수인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자가 설명을 하며, (대표)발의자가 설명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다른 발의자나 찬성자가 대리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의사일정에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필수적이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소속 위원이 안전을 위하여 능률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제안이유, 문제점, 이해득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분석하여 작성한 보고서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법률안의 위원회 상정일 48시간 전까지 소속 위원에게

대부분이고(「국회법」 §58), 위원회에서 구두로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위원회제안 법률안의 경우에는 제안과정에서 전문위원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따로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 대체토론(大體討論)

대체토론(general debate)이란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당부에 관한 일반적인 토론을 말하며 제안자와의 성의·담판을 포함한다(「국회법」 §58). 따라서 안전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사까지 마친 다음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최종표결 전에 실시하는 찬반토론과는 구별된다.

대체토론은 안전 전체에 대한 문제점과 당부를 검토하고 문제점의 시정을 위한 여러 가지 수정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가 안전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대체토론이 끝난 후에 하도록 하고 있다(「국회법」 §58). 이는 소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할 때 대체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이나 의견 등을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전체위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려는 취지이다.

필요한 안전에 대하여 제안자에게 질문점을 물어서 밝히는 것으로 의원발의 법률안인 경우에는 제안의원 외에도 그 법률안을 소관하는 주무부처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을 출석하게 하여 집행상의 제반 문제점을 질의할 수 있다.

■ 공청회·청문회(公聽會·聽問會)

위원회는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제정법률안이나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국회법」 §58). 「국회법」은 공청회·청문회의 개최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나, 대체토론이 끝나고 안전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소위원회의 심사 및 보고

위원회는 대체토론이 끝나면 반드시 상설소위원회에 안전을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특정한 안전의 심사를 위하여 두는 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국회법」 제58조) 다만,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건과 직결 관련된 안건이 위원회에 새로이 회부된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할 것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바로 해당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함께 심사하게 할 수 있다(「국회법」 제58조).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언제든지 회의를 소집하여 회부된 법률안 등 의안을 심사할 수 있고,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수정안·대안의 제시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기초 등을 행하며, 그 의결로 의안의 심사와 직결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정부·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고, 증언·감정인·참고인의 출석도 요구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일반적으로 「국회법」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또한 소위원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축조 심사를 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반전심사가 증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국회법」 제57조). 그리고 소위원회의 검토의견 및 의결은 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존중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국회법」은 법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필수적인 과정으로 보고 있으므로, 상임위원회에서의 법안심사는 실질적으로 소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소위원회에서의 법안심사가 현실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법률안의 수가 급증하고 법률안의 내용 역시 전문화되면서 위원회의 분업화가 요구되는 등의 이유로 법률안의 심사 단위로써 소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

■ 안전조정위원회

위원회는 안전에 대하여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여·야 동수로 위원회에 안전조정위원회를 두고, 안전에 대한 조정안을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의결된 조정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 심사를 거칠 것으로 보아 30일 이내에 표결하도록 한다.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심사하는 조정위원회는 그 안건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또는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활동을 종료한다.

■ 축조심사(逐條審査)

축조심사란 의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심사하여 나가는 것을 말하며, 실제로는 종점이 있는 주요 주제별로 한 주제의 심사를 해 나가고 있다. 안건의 내용과 심사의 필요에 따라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재정법률안 및 헌부개정법률안은 반드시 축조 심사를 거쳐야 한다(「국회법」 제58조).

원칙적으로 축조심사는 전체회의와 소위원회에서 각각 실시되어야 하지만(『국회법』 §57조·§58조),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소위원회에서 축조심사를 마친 점을 감안하여 전체 위원회에서 간소하게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 찬반토론(贊反對論)

찬반토론은 의제에 대하여 찬반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다. 토론은 소견을 개진하는에 그치지 아니하고 찬성 또는 반대의 이유와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찬반토론은 신청자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국회법』 §106).

■ 표결(表決)

표결은 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이 의제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수를 집계하여 위원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절차이다. 위원회에서의 표결은 본회의의 표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국회법』 §109 ~ §114의2). 표결의 방법에 있어서는 기립표결이 통례 이나 기수표결도 가능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국회법』 §54). 번안동의(『국회법』 §91), 전속처리안건지정동의(『국회법』 §85의2) 및 법사위 계류법안 중 본회의 부의요구(『국회법』 §86)에 대한 표결을 제외하고는 특별의결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위원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위원회는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의제가 간단하고 특히 반대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는 위원장이 여의 공무를 줄여서 의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결을 선포하는 약속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심사기간의 지정

의장은 1) 전체지번의 경우, 2)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3) 의결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없으며, 위원회가 매우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국회법」 제53조).

■ 법안 통과형태

① 원안의결

위원회에서 의원 또는 정부가 제안한 의안을 수정 없이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는 것이다. 이는 내용상의 변경이 없음을 의미하며 문백의 조항을 바르게 하기 위한 단순한 자구의 변경이나 오자·탈자·한자의 한글로 의 표기 등의 변경이나 법제사법위원회 의 채택·자구 심사로 수정되어 그 내용이 심사보고서에 반영되었다도 원안의결로 본다.

② 수정의결

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원안의 취지와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원안의 내용·체계·형식 및 자구의 일부를 추가·삭제·변경 등을 하는 것이다.

③ 대안의결

“대안”이란 원안과 일반적으로 그 취지는 같으나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전면 다르게 하여 원안을 대신할 만한 내용으로 변경하여 제출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수정안의 성격을 띤 것이다.

대안에는 위원회에서 원안이 심사되는 동안에 의원이 30인 이상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제출하는 ‘의원별의 대안’(「국회법」 제53조)과 위원회에서 원안을 심사하는 과정에 원안을 폐기하고 그 원안에 대신할 만한 새로운 안을 입안하여 위원장 명의로 제출하는 ‘위원회제출 대안’(「국회법」 제51)이 있는데, 보통 대안이라고 하면 위원회제출 대안을 의미한다.

④ 폐기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한 결과는 “가결”(원안 수정)과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의 어느 것으로 의결된다. 위원회는 의안의 본회의 심의에 앞서서 예비적 심사를 하는 것이므로 위원회의 의결이 그대로 국회의 의사로서 최종적인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

에서 어떠한 의결을 하던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을 하설음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있다.

우리 국회는 관례상 위원회에서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위원회에서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이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면 그 의안은 위원회의 의결과 관계없이 본회의에 부의되며 어떠한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결된 법률안은 확실히 배기된다(『국회법』 887).

04 •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위원회에서 진리·제각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국회법』 886).

“체계의 심사”란 법률안 내용의 위헌 여부, 관련 법률과의 저촉 여부, 균형유지, 차례조항 간의 모순유무를 심사하는 동시에 법률명식을 정비하는 것이고, “자구의 심사”란 법규의 명확성, 용어의 리항성과 통일성 등을 심사하여 각 법률 간에 용어의 통일성을 기함으로써 법률용어를 정비하는 것이다. 이는 제2대 국회인 1951년에 『국회법』을 개정하여 “위원회에서 법안 또는 심사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경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이래 지금까지 채택해 오고 있다.

■ 법률안의 상정시기 및 심사절차

법제사법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률안이 회부된 경우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률안이 회부되어 5일이 경과한 후에 의사일정으로 상정한다(『국회법』 859). 법률안이 회부되어 5일이 경과한 후에도 상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 경과 후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에 처음으로 제외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본다(『국회법』 859의2).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절차는 상임위원회 절차와 동일하다.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뒤 수정의견이 있으면 체계·명식과 자구에 대한 수정 의견을 한 뒤, 그 심사결과를 해당 법률안 소관위원회에 통보하고, 소관위원회에서는 그 수정내용을 반영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한다.

▣ 심사의 범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은 어디까지나 체계와 자구 심사에 한하고 법률안의 정제와 내용면까지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법률안의 내용이 헌법에 위배되는 중상위법이나 타법과 상충·저촉될 때에는 국가법체계의 통일·조화를 위하여 제제심사의 대상이 된다.

▣ 심사기간의 지정

의장은 ① 천재지변의 경우, ②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③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할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국회법」 §86조).

또한 2012. 5. 25. 개정된 「국회법」은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할 때에는 심사 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소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해당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하고, 의장은 본회의 부의요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였다(「국회법」 §86조-1).

05 • 심사보고서의 작성·제출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결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국회법」 §66조).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면 본회의와 의제가 되지 않는 의안에 대하여도 반드시 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06 • 전원위원회 심사

전원위원회의 의결 전원이 위원이 되어 주요 안건을 심사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전원위원회가 개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2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최 요건을 갖추더라도 의장은 주요의안의 심의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교섭단체대표 의원의 동의를 받아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국회법」 제63의2(1)).

- 1) 심사대상안건으로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에서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의안일 것
- 2) 재석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것

■ 전원위원회의 개최시기

전원위원회 개최시기는 주요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이나 본회의 상정 후인데(「국회법」 제63의2(1)), “해당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또는 제안설명이 있는 날”에 최초로 개최하고, “심사보고 또는 제안설명이 있는 후”에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전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5).

■ 전원위원회의 권한

전원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에서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국회법」 제63의2(2)). 이 경우 해당 수정안은 전원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 전원위원회의 위원장

전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이 된다. 국회의부의장은 현재 2인이므로 전원 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한 안건별로 의장이 해당 부의장을 지명하면 지명된 부의장이 전원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한다.

■ 전원위원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전원위원회는 재석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석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07 • 안건의 신속처리

“안건의 신속처리”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제제·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업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포함한다)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한 날부터 180일(법제사업위원회 제제·자구심사의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제사업위원회로 회부되거나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며,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신속처리대상 안건은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하되,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 경과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는 것으로, 의결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대신 마련된 법안신속처리제도(Fast Track)이다(「국회법」 885의2).

08 • 본회의 심의

“심의”란 의회에서 그 안건에 대하여 회의형식에 따라 그 내용을 심사하고 논의함을 의미하는데, 현재 「국회법」에서는 본회의 심사·논의를 “심의”라 하고, 위원회의 말전에 대한 검토·논의는 “심사”라는 용어로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본회의는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고, 의원들의 질의·토론을 거쳐 법률안에 대하여 최종의결을 하게 된다.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에도 서로 저촉되는 조항·자구·숫자와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하는 때에는 피장 또는 위원회에 이를 위원할 수 있다.

09 • 무제한토론

의견은 재회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본회의 심의 안건에 대하여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무제한 토론할 수 있고,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1일 1차 회의'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무제한 토론 종결 전후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무제한 토론 종결은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거나, 재회의원 3분의 1 이상이 제출한 토론 종결동의를 재회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 또는 무제한 토론 중 회기가 종료될 경우에 하도록 하였다.(『국회법』 제106의2)

10 • 정부이송 및 공포

"이송"이란 국회에서 통과된 안건을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의장이 정부에 보내는 행위를 말한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헌법 85조), 『국회법』 89조).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어 오면 법제처는 법률공포안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받지만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한다.

11 • 환부(還付)와 재의(再議)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송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는 없다(헌법 85조 3).

법률안 재의요구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서명과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정부의 재의요구안이 국회에 접수되면 위원회에 회부되지 아니하고 바로 본회의에서 「○○법률안 재의의 권」으로 의사당정을 정하여 상정·처리한다. 본회의에 재의요구안이 상정되면 정부로부터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절차를 들은 후 결의·토론을 거쳐 표결하게 된다.



2020 의원입법
지원업무 편람

Office of Government Legislation



2 장

의원입법 지원업무 개관

1. 의원입법 지원업무의 목적 및 필요성
2. 법제처의 의원입법 지원조직
3. 의원입법 지원업무 절차

**2020 의원입법
지원업무 편람**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지원과



법률안은 국회의원이거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 의결을 거쳐 법률로서 확정되도록 되어 있다.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뿐 아니라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해서도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적극 참여하고 있다.

정부가 제출 법률안의 경우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 정부내 입법결자 과정에서 법률 집행 방안을 사전에 준비하게 된다. 즉, 예산, 인력 등 인적·물적 자원을 미리 확보하거나 계획한 상태에서 입법을 하게 되므로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의원발의 법률안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법률 집행 방안을 준비하는 과정 없이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므로, 법률안 집행을 위한 준비를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하게 되는 것이다. 국민의 뜻을 담아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본래 의도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인 정부에 의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필요가 있고, 정부의 인적·물적 자원과 정책 집행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법률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집행되어야 본래의 입법 의도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원입법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우선, 법률안을 집행하기 위해 새로운 예산, 인력이 필요하거나, 법률안의 내용에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이 있는 경우 소관부처에서는 법률안이 통과되기 전에 예산, 인력의 확보 방안 및 하위법령의 마련 작업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예산도 없고 재정확보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한 정도의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을 담은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경우에는 담당 그 법률을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가 또는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법률안의 취지가 정부의 정책방향과 크게 맞지 않거나 법률안의 내용에 대하여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정부의 통일된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여 향후 법률의 집행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다. 가령, 정부에서는 뜻하지 않았던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집행을 위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여러 부처가 관련되는 정책에 대하여 부처 간 입장이 다음에도



의원입법의 증가 현상은 제17대 국회(2004. 5. 30. ~ 2008. 5. 29.) 들어 현저하게 나타났는데, 의원입법 발의건수도 크게 증가하였고, 정부입법으로 제출한 법률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수정되는 경우도 크게 증가하여 이때부터 국회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시작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의원입법이 크게 증가한 만큼 집행상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법안도 많아졌다. 국가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부처 간 의견불일치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정부로 오게 되면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심의과정에서부터 정부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집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정부부처 내에서 확산되었다. 이에 2006. 6. 16.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 내에서의 심도 있는 사전검토와 관계 기관과의 원활한 협의·조정을 통하여 행정부가 입법정례를 통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제처에 법제지원단을 신설하였다. 당시 법제지원단은 의원발의 법률안의 검토,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협의기관의 운영,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 및 협의 관련 자료의 용자·관리, 법령용어의 개선·연구, 남북한 법제의 조사·연구 및 그 밖에 법제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2008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조직 축소방향이 의하여 법제처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같은 해 2월 29일 법제지원단이 폐지되고, 의원입법 법제관을 3개 법제국에 분산·배치하는 한편, 의원입법 총괄업무는 기획조정관실 하의 법제총괄담당관실에서 담당하도록 하였다. 의원 입법 지원에 있어 총괄업무와 검토업무가 분리됨에 따라 의원입법에 대한 총합적 취합·관리기능이 약화되고, 의원입법 검토업무 또한 정부입법 심사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법제국의 사정상 약화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날로 급증하는 의원입법에 대한 효율적 대처 필요성이 증가하자 법제처는 정부 내 컨트롤타워 기능을 담당할 조직으로서 2011. 3. 7. 법제처 내에 법제지원단을 다시 설치하게 되었다. 법제지원단과 함께 그 밑에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법제지원팀과 검토 업무를 담당하는 3개의 법제관실을 신설하였으나, 2012. 8. 13. 대부 조직개편으로 법제지원팀 내 총괄업무를 전일 의원입법 법제관실로 이관하면서 총괄행정법제관/사회문화법제관/경제법제관, 3법제관실 체제를 유지하였다. 이후 2016. 9. 5. 정부의 입법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



법제처는 국회에서 의원발의 법률안이 제안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모니터링하여 소관부처에 통보하고, 그 법안의 내용을 검토한 의견서를 소관부처 및 관계부처에 제공하고 있다. 법제처의 의원입법 담당 법제관실에서 법률안을 검토할 때 주요 검토사항은 입법 필요성 및 타당성, 헌법 위반 여부, 다른 법률과의 중복·상충 여부, 법 제제상 모순·불합리성 여부, 법규정의 명확성 여부, 하위법령 제정의 적정성 여부, 부처 간 업무 중복 여부, 국가재정 부담 정도, 조직 확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기타 부처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이다.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일의사실을 법제처로부터 통보받은 소관부처에서는 예산·조직·규제 등과 관련하여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경우로서 헌법 위반 또는 법령(조약을 포함한다) 상호 간의 체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경우, 조세 감면이나 제정 지출 증가를 수반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관련부처의 의견을 들어야 하되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면 지체 없이 관련부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련부처는 소관부처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관련부처가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 소관부처는 관련부처의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15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또한, 부처 간 협의 결과를 법제정보시스템인 의원입법지원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법제처장은 소관부처에서 관련부처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경우 소관부처에게 관련부처의 의견을 듣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연락 의견협의를 실시한 결과 소관부처와 관련부처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³⁾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의견협의를 요청은 소관부처는 물론이거니와 관련부처도 할 수 있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개최를 요청하게 되면, 법제처에서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⁴⁾를 소집하여 의견조정을 실시하게 된다. 정부

3)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2조의2에 따라 법제처 차장을 의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과무조정실, 공청거래위원회 및 법제처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법령안 주관 기관 및 관계기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된다.

4)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제6항에 따라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 관계 기관, 과무조정실 및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입법정책협의회를 통하여 부처 간 의견이 조율되면 해당 법률안의 소관부처에서는 그 조율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부처의 경우에도 국회에서 의견조화가 있을 때에는 그 조율된 의견대로 국회에 대응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통한 의견조정 결과 부처 간 의견이 조율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법률안의 소관부처 및 관련부처에서는 정부 내 의견이 있음을 국회에 전달하여야 한다. 또한, 국회의 법안 심사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법제처도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결과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직접 전달하고 있다.

정부와 의원입법 지원업무 절차를 흐름도로 나타내 보면 다음의 그림과 같고, 각 단계별 지원 업무의 구체적 절차 및 상세한 내용은 후술하기로 한다.



Memo



3 장

입법단계별 의원입법 지원업무 추진절차

1. 법안 발의 단계에서의 의원입법 지원
2. 국회 심의 단계에서의 의원입법 지원
3. 그 밖의 의원입법 지원 업무

**2020 의원입법
지원업무 편람**

House of Representatives Legislation

의원입법 참고자료 수집방법

구분	내용	특이 사항
국회 홈페이지(www.assembly.go.kr)		
국회활동> 의사일정캘린더	본회의·위원회·국정감사 일정 확인	일정이 바뀌는 경우 많으므로 지속적 체크 필요
말씀마당> 행사일정캘린더	공청회, 세미나 등 일정 확인	행사도 국회 일부본인 원로도 됨
말씀마당> 국회뉴스	주요 정치동향 및 성명 파악	
말씀마당> 공지사항	일일주요청지일정, 국회방송주간편성표 등 확인	
정보마당> 정책참고자료실	국회도서관,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의원 정책자료 등을 통합적으로 파악 가능	
국회 입법조사처(www.nars.go.kr)		
주요행사	입법조사처 주최 행사 자료 수집	행사 개최 후 2~3일 후 다운로드 가능
발간물	이슈의 논점 현안보고서 등 입법조사처 발행물 수집	최근 사회적 이슈 관련 행천 등 파악 용이
국회예산정책처(www.nabo.go.kr)		
일정&상세) NABO 일정	예산정책처 주최 행사 자료 수집	주최 행사가 많지 않으며 다운로드 늦게 업로드 됨
국회 시스템		
국회방송 (www.natv.go.kr)	국회 홈페이지지상 주간편성표 확인 후 주요 행사 생방송 또는 녹화방송 시청	의원실 주관 공청회도 중계하는 경우 있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assembly.webcast.go.kr)	국회 위원회·본회의 진행상황 생중계	소위원회 회의는 중계하지 않음
영상회의록시스템 (www.assembly.go.kr)	질문회/공청회 메뉴에서 위원회 주관 공청회 영상자료 시청 가능	
미디어자료관 (www.assembly.go.kr)	영상자료관) 의원공청회 메뉴에서 의원실 주관 공청회 영상자료 시청 가능	
열린국회장보 (open.assembly.go.kr)	국회 정보공개포털	
기타		
각 상임위원회 홈페이지	위원회 주관 공청회 자료 등록	
국회의원별 개별 홈페이지	본인 주관 공청회 자료 등록	
인터넷 검색기능 활용	Google 알리미 서비스 등 활용	

02 • 의원입법 모니터링 및 법안 처리현황 상황보고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에서는 국회가 열려 있는 기간에는 주요 법안의 국회 심의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법안 심사현황 보고서'를 작성하며, 작성한 보고서는 청와대, 국무조정실 등과 공유하고 있다.

03 • 의원입법 발의사실 통보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의2에 따라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 회부되면 그 사실을 신속하게 소관 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 때 행정부가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헌법재판소 소관 법률안 등은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되, 행정부 소관 법률이 아닌 경우에도 행정직을 증가를 수반하는 등 행정부 내 관계 기관이 있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을 지정하여 통보한다.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에서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¹⁾과 연동되어 있는 행정부 내 의원입법지원시스템²⁾을 통해 의원발의 법률안의 발의 및 회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에서는 법률안의 발의 사실과, 관계 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내용을 의원입법지원시스템을 통해 법률안의 소관부처로 배부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각 부처 법무담당부서에서 의원입법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자는 법률안을 담당하게 되는 부서(과)를 지정하여 소관 부서(과)에 발의 사실과 관계 기관의 협의 필요 사항 등을 알릴 수 있다. 법률안의 발의사실을 통보받은 소관부처의 입안 담당자는 법률안에 대한 검토 및 부처협의를 시작한다.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에서는 제20대 국회에 발의된 의원발의 법률안 21,594건 중 관계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법률안 15,055건도 관계부처로 통보하였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된 의원입법이 발의되더라도 이를 파악하기가 어려워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에서는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2017년 8월부터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시·도지사 협의체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 관련 의원입법 발의 현황을 주기적으로 통보하고 있다.

1) <http://ikims.assembly.go.kr/bill/scr/main.jsp>

2) 각 부처 업무 내부망에서 '정부입법지원센터(www.lawmaking.go.kr)'로 접속하여 '의원입법 지원' 메뉴 클릭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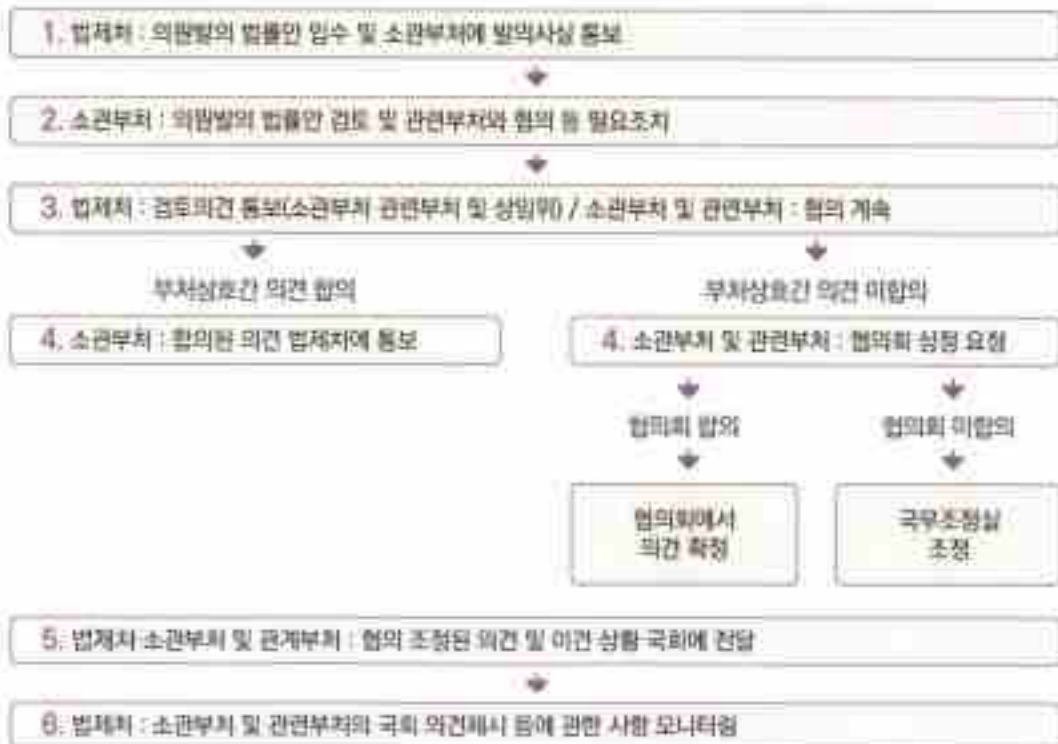
국회 심의 단계에서의 의원입법 지원



01 •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 및 부처협의

의원발의 법률안이 발의되면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심에서는 그 법률안이 법리적 쟁점이 있는지, 재정지출 증가를 수반하는지, 부처 간 정책 상충 여지는 없는지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소관부처 및 관련부처에 통보하고 있고, 소관부처 및 관련부처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부처협의를 실시하여 정부 의견을 조율한 후 이를 법제처 및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검토 및 부처협의 처리절차 흐름도



법제처의 검토업무 처리

① 의원발의 법률안의 입수 및 통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의원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면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에서는 의원발의 법률안의 발의 사실을 최대한 신속히 파악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수요를 고려하여 실무상 의원입법지원시스템을 통해 해당 법률안을 입수하면 지체 없이 발의 사실과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신속하게 소관부처에 통보하고 있다.

② 의원발의 법률안의 배경

법률안이 발의되면 법제정책국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에서는 의원입법지원시스템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법제조정총괄법제관·법제조정법제관 1·법제조정법제관 2, 법제조정법제관 3으로 소관 법안을 배정한다.

담당법제관실	담당 기관
총괄	[운영위] 국회 [법사위]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행안위] 선거관리위원회
행정	[운영위]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인명위원회 [정무위]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법사위]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안위]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인사혁신처, 경찰청 [교육위] 교육부 [문체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여가위] 여성가족부 [외통위] 외교부, 통일부 [국방위] 국방부, 법무사업청, 병무청,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정보위] 국가정보원 [과기정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경제	[기재위]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용재청 [국토위] 국토교통부, [신차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기법부, 특허청
사회문화	[행노위] 고용노동부, 환경부, 기상청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업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복지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3.12월 기준

③ 의원발의 법률안의 검토

발의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에서 그 내용을 검토하게 되는데, 모니터링을 통하여 확보된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안에 대한 심층정보를 진행하게 된다. 이 때 소관부처는 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 및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제2항⁷⁾ 및 「정부입법절차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4항⁸⁾ 입시국회나 정기국회가 개최하는 경우에는 중립적인 검토업무 외에 주요 쟁점법안을 별도로 파악하여 기획검토를 병행하기도 한다.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에서 법안을 검토할 때에는 헌법 합치 여부, 법률 간 모순·저속 여부, 예산지출이 수반되는지 여부, 조세 감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정부조직의 확대 또는 인력의 증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게 되어, 그 검토기준에 관하여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에서는 2014년도까지는 예산·조직·규제 등에 관련된 관료부처에 해당조문과 그 내용을 특정하여 통보하는 형태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처에 제시하여 왔다. 그러나 의원입법의 법의 건수가 현저히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법의 건수에 비례하여 검토 인력을 계속해서 증가시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가용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리적 쟁점을 해소할 필요성이 높고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경우 등 검토 대상을 선별하여 검토의견서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17년도부터는 의원입법지원시스템 및 공문을 통한 검토의견서 제공 이외에 이메일 또는 전화로 검토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묻는 경우에 대해서도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공하고 있다.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에서 법안을 검토하여 검토의견서를 작성한 후에는 법률안의 입법형식(제정안·개정안) 및 법률안의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장 결재, 법제정책국장 권결, 법제관 권결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또한, 국정과제법안 등 주요 법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쟁점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사항 체크리스트에 따라 확인하고, 검토가 필요한 쟁점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서를 작성한다. 당장 검토의견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체크리스트 확인 결과를 법제관 권결로 처리하도록 한다.

③ 소관부처 및 관련부처에 대한 법제처 검토의견 통보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에서는 법안에 대한 검토가 끝나게 되면 의원입법지원시스템을 통해 검토 의견을 해당 법안의 소관부처 및 관련부처에 통보하는데, 소관부처와 관련부처가 편리하게

7) 제12조(법률안 국회 심의과정의 협조 등)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및 의원입법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은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률안의 충분한 검토와 효율적인 입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법률안의 국회 심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8) 제4조(적용대상법령문의 검토 및 의견통보) ③ 법제처장은 제1항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적용대상 법률안에 대한 소관부처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관부처에 대하여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검토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검토의견서를 받아볼 수 있도록 온나라 시스템(공문을 포함여 재경하는 방법을 개발하기도 한다. 그리고 소관부처와 관련부처에 동보한 검토의견 중에 국가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국무조정실에도 검토의견을 함께 동보한다.

관련부처의 예

필요적 부처협의 사항 및 관계 부처

필요적 부처협의 사항	관계 부처
규제 신설·강화	해당 부처 국무조정실
조세감면, 재정지출 증가, 공공기관(출자출연, 조직 인선), 국유재산 특례	기획재정부
조각위원회)의 신설·폐지·변경, 서식의 신설·변경 지방자치, 지방세, 국유재산 특례	행정안전부
청원 증가, 공무원 인사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경쟁제한사항	공정거래위원회
양성평등 관련 중요사항	여성가족부
벌칙, 징서위반행위벌	법무부
법령상 다른 부처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해당 부처

■ 소관부처의 검토업무 처리

① 법률안 검토

의원입법지원시스템을 통해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발의사실 또는 검토의견을 법제처로부터 동보받은 소관부처 법무담당부처에서는 의원입법지원시스템을 통해 그 법안 담당부처에 이를 동보하여 검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법률안 담당부처가 법률안 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하되, 그 법률안에 둘 이상의 담당 부처가 있는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처가 총괄하여 처리하며, 법률안 담당부처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처 또는 기관장이 지정한 담당부처가 처리한다.

2. 관련부처 의견조회

소관부처 법무담당부처로부터 법안에 대한 발의사실을 통보받은 법안 담당부처는 즉시 법안을 검토하고, 관련부처를 파악하여 공문으로 부처 간 의견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소관부처(법안 담당부처)는 예산·조직·규제 등과 관련하여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을 의무가 있고, 관계부처의 장은 원활한 집행 등을 위하여 의원발의 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법제업무 운영규정」 811의2). 그리고 법제처장은 다른 부처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의원발의 법률안 소관부처가 관계부처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소관부처에게 관계부처의 의견을 듣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제처에서 소관부처에 통보한 관계부처에만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협의 공문을 발송하는 경우도 있으나, 소관부처의 판단 하에 실제 법안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처에도 의견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소관부처는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관계부처의 검토 의견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고, 15일 이내에 회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회신 기한을 통지해야 한다.

소관부처 및 관계부처는 온·오프 공문을 통해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을 때, 법제처도 수신처로 지정하여 함께 의견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법제처에서는 부처 간 이견 여부를 파악하게 된다.

한편, 법안의 내용상 경쟁지원을 강화하거나 조칙을 확대하는 등 소관부처에 유리한 경우 법제처 등으로 통조하여 부처협의와 국회 대응에 소극적인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관련부처는 소관부처에서 적극적으로 부처협의를 요청하지 않더라도 해당 법률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소관부처에 대하여 의견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소관부처는 관련부처의 협의 요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9)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8조의2(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정부 내 기관 간 협조)

① 영 제11조의2제2항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헌법 위반 또는 법령(조약)을 포함한다 상충 간의 체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2.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경우
3. 조세 감면이나 재정지출 증가를 수반하는 경우
4. 조칙의 신설·폐지 및 변경이 있거나 정권이 넘어오는 경우
5. 정부의 중요 정책사항과 서로 배치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6. 해당 법률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10)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법률안 국회 심의과정의 협조 등)

① 법제처장은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이견 여부를 파악하여 제11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련부처와 의견협의 및 의견조정

소관부처는 의원발의 법률안의 발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없이 관련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관계부처가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협의를 통하여 부처 간 의견을 조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만약 부처 상호간 자율적 의견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¹¹⁾

④ 정부의견의 확정 및 국회 제출

소관부처에서 부처협의를 실시한 결과 이견이 없거나 이견이 해소되어 합의된 경우 그 결과를 법제처 법제조정(총괄)입법관실과 관련부처에 지체 없이 통보하고 의원입법지원시스템에 등재하여, 국회에도 합의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부처의 경우에도 해당 법률안에 대한 국회의 의견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정부 의견이 조율되지 않은 경우 반드시 부처 간 이견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부처 간 협의로 의견조정이 안되면 소관부처 또는 관련부처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신청할 수 있고, 협의회를 통해 부처 간 이견이 조정되면 소관부처는 그 조정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여 정부의견이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만약 부처 간 이견이 조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소관부처와 관련부처 모두 정부 내 이견이 있음을 반드시 국회에 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 관련부처의 검토업무 처리

① 법률안 검토

소관부처로부터 공문을 통하여 의견조회 요청을 받거나 법제처로부터 의원입법지원시스템을 통해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관련부처의 법무담당부처에서는 해당 부처에 통보하여 검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법률안 담당부처가 법률안 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하되, 그 법률안에 관여 이상의 담당 부처가 있는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처가 총괄하여 처리하며, 법률안 담당부처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처 또는 기관장이 지정한 담당부처가 처리한다.

11)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통한 의견조정 절차에 관하여는 50페이지 이하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② 소관부처와 협의 및 의견조정

법률안을 검토한 후 관련부처는 소관부처에 그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의견협의를 통하여 부처 상호 간 의견을 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만약 소관부처에서 부처협의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해당 법률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부처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소관부처가 의견형식에 소극적이거나 부처 상호 간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정부의견의 확정: 정부의견의 국회 제출

부처 간 협의로 정부의견이 확정되거나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통해 부처 간 이견이 조정되면 일차적으로 소관부처가 그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지만, 관련부처도 해당 법률안에 대한 국회의 의견조치가 있는 경우 그 합의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서 부처 간 이견이 조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소관부처와 관련부처 모두 정부 내 이견이 있음을 반드시 국회에 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Memo

관련 규정

관련 분야	법제업무 운영규정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p>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부처 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보받은 소관부처의 장은 예산·조직·규제 등 부처 협조가 필요한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 10일 이상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야 함(제11조의2제2항) • 관계부처의 장은 통보받은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제시 가능(제11조의2제3항) • 소관부처의 장은 관계부처의 검토의견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확신하여야 함(제11조의2제3항) • 부처 간 의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정부입법정책회의 등을 거쳐 국회의 심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함(제11조의2제4항) • 법제처장은 의원발의 법률안의 법리적 보완사항을 소관부처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요청 시 적절한 증제지원을 하여야 함(제11조의2제5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부처의 장은 다음의 경우 10일 이상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야 함(제8조의2제2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헌법 위반 또는 법령(조약등 포함한다) 상호 간의 관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2.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경우 3. 조세 감면이나 재정지출 증가를 수반하는 경우 4. 조직의 신설·폐지 및 변경이 있거나 총원이 늘어나는 경우 5. 정부의 중요 정책사항과 서로 배치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6. 해당 법률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소관부처의 장은 의원발의 법률안이 상임위에 상정되면 지체 없이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들어야 함(제8조의2제3항) • 소관부처의 장은 관계부처의 장의 의견 및 협의 결과를 의원입법지원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함(제8조의2제4항) • 법제처장은 소관부처가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듣지 않은 경우에는 소관부처의 장에게 관계부처의 의견을 문도록 요청할 수 있음(제8조의2제5항)

02 • 정부입법정책협의체를 통한 의견조정

법률안에 대하여 법리적·정책적으로 소관부처와 관련부처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간의 협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견을 없애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종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이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대하여 소관부처와 관련부처 간에 자율적인 협의 결과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협의·조정을 위하여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두고 있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상설기구는 아니며 부처 간 의견 조정이 필요할 때 소집된다.

▣ 근거 및 역할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입법업무 운영규정」¹²⁾에 따라 법제처에 설치된 협의·조정기구로서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부처 간 이견 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부처 간 협의를 지원하고 객관적·법리적 견지에서 조정을 실시하여 정부의 의견을 조율하는 한편, 소관 부처로 하여금 이러한 정부의 조율된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구성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및 법제처의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법원법률주관기관, 의원발의 법률안 소관 기관 및 관계기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의장은 법제처의 차장이 된다.

입법협의회의 경우 법령안 주관 기관, 의원발의 법률안 소관 기관, 관계기관, 국무조정실 및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통상 정부부처 과장급으로 운영된다.

12) 제12조의2(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입법협의회) ① 제13조의2에 따른 법령안에 대한 관계 기관 간 이견의 해소에 제12조에 따른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입법정책의 일관성 또는 추진을 위하여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의 대상이 되는 단건부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관기관,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 관계기관, 국무조정실 및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입법협의회를 둘 수 있다.

13) 법제처의 경우에는 법제정책의장을 맡는다.

▣ 주요 심의사항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1) 정부입법과정에서 법령안의 내용에 대하여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 사이에 법리적 쟁점으로 견해 차이가 발생한 사항, 2)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통일적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3) 대통령훈령안, 국무총리훈령안의 내용에 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 사이에 법리적 쟁점으로 견해 차이가 발생한 사항, 4) 「대한민국 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제의(再議) 요구와 관련한 부처 간 협조 및 대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4) 등).

정부입법정책협의회 흐름도



14)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부입법과정에서 법령안의 내용에 대하여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 사이에 법리적 쟁점으로 견해 차이가 발생한 사항
2.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통일적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3. 대통령훈령안, 국무총리훈령안 및 내용에 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 사이에 법리적 쟁점으로 견해가 발생한 사항
4. 「대한민국 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제의 요구와 관련한 부처 간 협조 및 대책에 관한 사항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정부입법정책협의회 협의사항)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2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협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대상법률안의 법리적 쟁점에 대한 대응방안 등 협의
2. 적용대상법률안에 조처감연의 필요, 재정지출의 증가, 정부조직의 신설·폐지·변경, 규제의 신설·감화 또는 그 밖에 집행상 문제가 있는 경우 그 대응방안 협의
3. 의원발의법률안의 소관부처가 불분명한 경우 그 소관부처 협의
4. 그 밖에 적용대상법률안에 대한 정부의견의 통일을 위한 협의

가.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상정 요청

① 소관부처 또는 관련부처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의원방의 법률안에 대하여 부처 간 협의가 안 될 경우, 소관부처 또는 관련부처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신청서” 양식에 협의 필요사항 등을 기재하여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법제처에서는 협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전에 정부입법정책심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심무협의회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와 비교하여 의장 및 참석자의 직급만 다른 본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신청서 서식은 의원입법지원시스템의 “질의답변/FAQ > FAQ”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법안의 소관부처 또는 관련부처는 이 신청서를 정부에서 법제처에 공문으로 협의회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 요청에 관한 공문 등의 관리는 법제정책국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에서 담당하고,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은 협의회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담당 법제조정법제관실에 협의회 소집 요청 사실을 알려 협의회 개최 준비를 하도록 한다.

② 법제처장이 협의회를 직권으로 소집하는 경우

법제처장은 법리적 명칭 유무 여부, 다른 법률과의 충돌 여부 등에 관한 법제처 의견에 대하여 소관부처가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실무협의회 또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제3호).

③ 협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소집하는 경우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의장(법제처 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제4호).

부처협의 후의 목적으로 의원입법이 발의되거나 법안의 내용이 부처에 유리한 경우 부처 입장에서는 불리한 조정 결과를 우려하여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신청에 소극적인 경우도 있으므로,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에서는 법안에 대한 부처 간 이견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중립적 입장에서 이견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제처가 적극적으로 협의회를 소집하여 정부의견을 신속히 조율할 필요가 있다.

나.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안전 검토

부처로부터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 요청을 받으면, 법제처의 담당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에서는 협의회 상정 안전을 검토한다. 이 때 안전의 중요도,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 상정할 것인지, 실무협의회에 상정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나,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실무협의회를 우선적으로 거치게 된다.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에서는 소관부처 및 관계부처와 협의회 개최일정을 협의하고, 상정 안전의 행정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처 및 관련부처의 공식의견을 모두 미리 받아 이를 바탕으로 법제처 내부 의견을 정리한 후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경우 과장·차장에게, 실무협의회는 경우 법제정책국장에게 보고한다.

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개최계획 통보

협의회 인원과 참석자가 확정되고, 상정 안전에 대한 내부 보고가 완료되면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에서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개최계획¹⁵⁾을 할부한 협의회 개최 공문을 부처로 통보한다. 이 때 실무협의회가 아닌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처 및 관련 부처 외에 당면의 위원으로 있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같이 통보하여 각 부처 소속 고위공무원(국장급)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실무협의회인 경우에도 협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설적 위원으로 있는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 외에 법제처,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 등의 소속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상호 이권이 있는 사항에 대한 문제분치, 이권에 대한 과 부처 의견, 해결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협의회 개최 일정이 확정되면 협의회 개최 계획을 공문으로 소관부처 및 관련부처에 보내고, 의원 입법지원시스템과 '법제처 현황·관리' 협의회에 개최계획을 등록하여 법안의 관계 부처가 의원입법지원시스템을 통해서도 협의회 개최일정 및 상대 부처의 의견을 확인하고, 시스템 상의 댓글 기능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한다.

15) 협의회 개최계획에는 회의 일시 장소 등 기본정보 뿐 아니라, 법안의 심의경과, 주요내용, 행정 및 생계에 대한 각 부처의 의견을 간략히 정리한다.

라. 정부입법정책협의회 협의결과 처리

① 협의회 결과 부처 통보

법제처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개최한 후 그 협의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및 관계부처에 통보한다. 해당 법률안의 소관부처도 그 협의된 결과를 법안을 심사하고 있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알려야 하고, 관련부처도 국회에서 의견조치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 결과대로 국회에 대응하여야 한다.

또한 협의회가 종료된 후에는 해당 반건, 협의회 개최계획, 협의회 결과 등 관련 자료들을 모두 의원입법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 협의회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② 국무조정실 조정 의회

소관부처 또는 관련부처의 요청으로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으나 의견조치가 잘 안 되어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 법제처장은 지체 없이 국무조정실장 등 관련 조정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법제업무운영규정」 제12조의2제5항 및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제4호).

③ 고위당청협의회 및 국무회의 보고

법제처장은 정부의 의견을 입법에 반영하기 위하여 여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고위당청협의회에 이를 보고할 수 있고, 입법추진상황 및 정부대응 개선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¹¹⁾.

11)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고위당청협의회의 회의 보고) 법제처장은 직권대상법률안에 대한 정부기관의 입법 반영을 위하여 여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청협의업무 운영규정」 제7조에 따른 고위당청협의회의 회의에 이를 보고할 수 있다.

제13조(국무회의 보고) 법제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대상법률안의 입법추진상황 및 정부대응 개선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신청서

신청부처:

법령안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주요 쟁점사항	○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기재)		
협의 필요사항	신청부처 건의의견	○	
		※ 세부건의의견 : 별첨	
	신청부처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관련부처 (소관부처) 건의의견	○	
※ 세부건의의견 : 별첨			
관련부처(소관부처)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한민국 내외 법제정보시스템



법 제 처



수신: 수신자 참조
(과유)

제목: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의 결의 승부(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조제2, 제1조제3 및 제12조제2』
3. 권익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비안번호 제20230888 호)에 대한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의 결의를 결임과 같이 승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의 결과 1부. 끝.

법 제 처 장

수신처: 행정안전부입법(시민정책담당관실, 고추부동산(고추시정대응))

주요인: 입법지원과장 / 입법지원과 고추대응과장, 고추부동산(고추시정대응) 담당관

발신처:

시행: 입법지원과장(114) / 결의

☎ 27100 서울특별시지하철 2호선 20, 법제처 (비전통) / www.mleg.go.kr

전화번호 044-200-8810 / 팩스번호 044-200-8810 / geneg@mleg.go.kr / 112(국번)0

주요정보: 개시일: 2023. 08. 24. / 개시처: mleg.go.kr/notice

국문은 호국공공어입니다



법 제 처



주소 국무조정실청(안전행정청소재지)

(경유)

제목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관계 부처 간 이견 통보

1. 귀 기관의 무궁화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 심의 중인 「소방기본법」(제안번호 제2018660호, 김민기의원 공 11번)에 대해 소관부처와 관계부처 간 의견 합의 결과 조항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부처 간 이견이 있음을 통보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소방청 의견 1부.
 3. 기획재정부 의견 1부. 끝.

법 제 처 장

주요관	입석근(입석근) 장	입석근(입석근) 사무관(입석근)
참모차		김수
전화	044-201-4811 / www.m02g.go.kr	
팩스	044-209-4810 / www.m02g.go.kr (비공개용)	
전자우편	www.m02g.go.kr/home	

▣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실적

법제처는 의원입법 지원업무를 시작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부적 관이건 조정을 위하여 정부입법정책협의회(실무협의회 포함)를 총 293회 개최하여 562건의 안건을 협의·조정하였다.

의원입법 관련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개최 실적

연 도	협의회 개최 횟수	협의회 안건 수
2006년	10회	11건
2007년	36회	51건
2008년	9회	92건
2009년	16회	17건
2010년	17회	51건
2011년	21회	31건
2012년	16회	19건
2013년	24회	40건
2014년	20회	27건
2015년	19회	28건
2016년	21회	32건
2017년	20회	37건
2018년	12회	51건
2019년	20회	61건
2020년	32회	97건
합 계	293회	562건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 개최 목록

개회회수	개회일	법안명	협의결과
2006년			
제1회	06.09.0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책협의회 상정
제2회	06.09.1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협의 완료
제3회	06.08.30.	홍수해 및 가뭄피해 경감을 위한 빗물유출저감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법률안	협의 완료
제4회	06.08.30.	빗물 등 대체수자원의 개발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협의 완료
제5회	06.11.0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협의 완료
제6회	06.11.10.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정책협의회 상정
제7회	06.11.21.	해외 소재 우리 문화재의 환수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협의 완료
제8회	06.12.07.	실형동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협의 완료
		광고진흥에 관한 법률안	협의외 재상정
제9회	06.12.12.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협의 완료
제10회	06.12.26.	공인노무사업	협의 완료
2007년			
제1회	07.01.18.	광고진흥에 관한 법률안	국무총리실 이관
제2회	07.01.25.	출판 및 인쇄진흥법	협의 완료
제3회	07.02.14.	국립대학교병원의 설립 및 지원·육성에 관한 법률안	정책협의회 상정
		서울대학교병원의 설립 및 지원·육성에 관한 법률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설립 및 지원·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4회	07.02.27.	황토자원의 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협의 완료
제5회	07.03.13.	건설산업기본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협의 완료
제6회	07.03.15.	요양보호법안	국무총리실 이관
제7회	07.03.23.	소방공무원법	정책협의회 상정
제8회	07.03.27.	국립대학교병원의 설립 및 지원·육성에 관한 법률안	협의 완료
		서울대학교병원의 설립 및 지원·육성에 관한 법률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설립 및 지원·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9회	07.03.28.	지역정보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책협의회 상정
제10회	07.04.10.	소방공무원법	협의 완료

개최회수	개최일	법안명	합의결과
제11회	07.04.27.	산업디자인진흥법	정책합의회 상정
제12회	07.05.01.	지역정보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합의 완료
제13회	07.05.08.	방송영상물 국문 촉진에 관한 법률안	합의 완료
제14회	07.05.10.	연안개발전 특별법안	정책합의회 상정
제15회	07.05.10.	산업디자인진흥법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	합의 완료
제16회	07.05.21.	전자정부의 표준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책합의회 상정
제17회	07.05.25.	군사사형인근지역 개발 및 지원법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합의 완료
제18회	07.05.31.	정신보건법	합의 완료
제19회	07.06.07.	전자정부의 표준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합의 완료
제20회	07.06.1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합의 완료
제21회	07.06.2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합의 완료
제22회	07.06.27.	새만금종합개발 특별법안	합의 완료
제23회	07.07.05.	직능인경제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국무총리실 이관
제24회	07.07.05.	권선산업발전법안	합의 완료
제25회	07.07.19.	방역법	국무총리실 이관
제26회	07.07.26.	건축기본법안 건축문화진흥법안	합의 완료
제27회	07.07.30.	산업디자인진흥법	합의 완료
제28회	07.08.04.	한국교직원공제회법	합의 완료
제29회	07.09.06.	지방교부세법 서남권등 다투지역 발전 및 후차촉진 특별법안 연안개발전 특별법안	합의 완료
제30회	07.09.13.	산업디자인진흥법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 자연환경보전법	합의 완료
제31회	07.09.20.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안	합의 완료
제32회	07.10.11.	군인복지기본법안 선원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합의 완료
제33회	07.10.25.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지원에 관한 법률안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안	합의 완료

개회회수	개회일	법안명	협의결과
제34회	07.11.08.	별액법	협의 완료
제35회	07.11.14.	학생복지활동 진흥법안	협의 완료
제36회	07.12.20.	환경정책기본법	협의 완료
2008년			
제1회	08.05.06.	농산물품질관리법	협의 완료
제2회	08.10.13.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협의 완료
제3회	08.10.24.	번리사업 일부개정법률안	협의 완료
제4회	08.10.2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협의 완료
제5회	08.10.30.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협의 완료
제6회	08.10.30.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안	정책협의회 상정
제7회	08.11.11.	공채제척법 일부개정법률안	협의 완료
제8회	08.11.14.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안	협의 완료
제9회	08.12.22.	도시경법 일부개정법률안	협의 완료
2009년			
제1회	09.02.02.	청매연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협의 완료
제2회	09.02.11.	농수산물회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안	협의 완료
제3회	09.03.19.	농업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협의 완료
제4회	09.04.10.	정보통신공시기술관리법안	추후 논의
제5회	09.04.27.	자연기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책협의회 상정
제6회	09.04.29.	자연기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협의 완료
제7회	09.05.1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협의 완료
제8회	09.05.13.	군민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협의 완료
제9회	09.05.13.	국방대학교생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추후 논의
제10회	09.05.19.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안	협의 완료
제11회	09.06.11.	민터넷중독의 예방과 해소에 관한 법률안	국무총리실 이관
제12회	09.07.15.	반차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협의
제13회	09.09.21.	공채제척법 일부개정법률안	협의 완료
제14회	09.10.15.	공채제척법 일부개정법률안	협의 완료
제15회	09.11.10.	양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실 이관

개회회수	개회일	법안명	합의결과
제16회	09.12.08.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합의 완료
2010년			
제1회	10.04.20.	수난구조법	국무총리실 이관
제2회	10.04.2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합의 완료
제3회	10.04.30.	방위사업에서의 권기부정형외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	합의 완료
제4회	10.05.28.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안	국무총리실 이관
제5회	10.07.22.	선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합의 완료
제6회	10.07.28.	법학전문대학원의 법관·검사 및 일반직 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법률안	철회
제7회	10.09.17.	지벌제법 등 3건	국무총리실 이관
제8회	10.10.28.	한국가스공사법 등 27건	합의 완료
제9회	10.11.09.	지하수법	합의 완료
제10회	10.11.25.	지방제법	국무총리실 이관
제11회	10.11.2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합의 완료
제12회	10.11.29.	한국정책금융공사법 등 7건	합의 완료
제13회	10.12.01.	청소년보호법	추가 논의
제14회	10.12.05.	청소년보호법	합의 완료
제15회	10.12.08.	인터넷중독의 예방과 감소에 관한 법률안	국무총리실 이관
제16회	10.12.1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합의 완료
제17회	10.12.31.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합의 완료
2011년			
제1회	11.03.2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합의 완료
제2회	11.04.0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합의 완료
제3회	11.04.05.	자유방발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5건	합의 완료
제4회	11.04.11.	차별철폐위원회법	합의 완료
제5회	11.04.27.	지하수법	합의 완료
제6회	11.06.08.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합의 완료
제7회	11.06.13.	청소년보호법	합의 완료
제8회	11.06.21.	예술인복지법안 등 4건	합의 완료

개회회수	개회일	법안명	협의결과
제9회	11.07.22.	노인일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무총리실 이관
		경찰관직무집행법	협의 완료
제10회	11.07.29.	하수도법	협의 완료
제11회	11.08.24.	해양환경관리법	국무총리실 이관
제12회	11.09.08.	도로법	정책협의회 상정
제13회	11.09.09.	한국국제협력단법 등 3건	협의 완료
		정보교육진흥법안	협의 완료
제14회	11.09.29.	낙시관리 및 육성법	협의 완료
제15회	11.10.20.	도로법	협의 완료
제16회	11.11.13.	통상조약의 체결철회 및 이행에 관한 법률안	협의 완료
제17회	11.11.20.	축산물위생관리법	협의 완료
제18회	11.11.29.	문화체육 활성화 및 증진에 관한 특별법안	협의 완료
		국제문화교류진흥법안	협의 완료
제19회	11.12.08.	콘텐츠산업 진흥법	협의 완료
2012년			
제1회	12.01.3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협의 완료
제2회	12.01.31.	국가장보화기본법	협의 완료
제3회	12.02.06.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협의 완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회	12.02.21.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협의 완료
제5회	12.02.28.	도시자본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협의 완료
제6회	12.04.05.	초·중등학생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특별법안	협의 완료
제7회	12.09.0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윤석현 의원안)	협의 완료
제8회	12.09.0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승조 의원안)	협의 완료
제9회	12.09.0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정우택 의원안)	협의 완료
2013년			
제1회	13.03.12.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협의 완료
제2회	13.04.30.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기금 설치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 이관
제3회	13.05.10.	수송·친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법제처 수정안 이관
		주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획회수	계획일	법안명	협의결과
제4회	13.05.23	가습기살균제의 흡입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국무조정실 이관
제5회	13.05.23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조정실 이관
제6회	13.05.30	병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 마련
제7회	13.06.31	벌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조정실 이관
제8회	13.06.19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국무조정실 이관
제9회	13.06.19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처 협의 중
제10회	13.07.2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협의 완료
제11회	13.07.24	국민행동피해피 예방에 관한 법률안	부처 협의 중
제12회	13.08.21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처 협의 중
제13회	13.08.26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 마련
제14회	13.08.27	레저스포츠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 마련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5회	13.08.2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조정실 이관
제16회	13.09.06	노후 산업단지 구조정단화 특별법안	부처 협의 중
제17회	13.09.12	양육비 이행확보에 관한 특별법안	수정안 마련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기관 설치에 관한 법률안	
제18회	13.10.04	차별시정과 금융후자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처 협의 중
제19회	13.10.11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안 외 9건	부처 협의 중
제20회	13.10.16	레저스포츠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 마련
제21회	13.10.2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처 협의 중
제22회	13.11.04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부처 협의 중
제23회	13.11.26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처 협의 중
제24회	13.11.28	중소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부처 협의 중
2014년			
제1회	14.01.1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협의 완료
제2회	14.01.24	공유수변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가 논의
제3회	14.02.27	한국수어법안	추가 논의
		재래군민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협의 완료

개회회수	개회일	법안명	협의결과
제4회	14.03.06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2건	국무조정실 이관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2건	
		남북교류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2건	
제5회	14.04.08	세민금융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	협의 완료
제6회	14.05.01	성차별·성희롱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추가 논의
제7회	14.06.19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추가 논의
제8회	14.07.15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협의 완료
제9회	14.07.1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협의 완료
제10회	14.07.18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협의 완료
제11회	14.08.18	생활체육진흥법안	협의 완료
제12회	14.08.19	한국수어법안	협의 완료
제13회	14.09.23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가 논의
제14회	14.10.02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협의 완료
제15회	14.10.06	쌀 관세율 결정에 관한 특별법안	추가 논의
제16회	14.10.31	나눔기본법안	협의 완료
제17회	14.11.12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안	협의 완료
제18회	14.11.24	피의간금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협의 완료
제19회	14.11.25	내무부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	추가 논의
제20회	14.12.08	재한외국인 학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협의 완료
2015년			
제1회	15.01.2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 등 2건	조정안 수용
제2회	15.01.2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조정안 수용
제3회	15.02.25	지하수법 개정안	조정안 수용
제4회	15.03.19	농수산물회계법 개정안	조정안 수용
제5회	15.04.17	송강기서물 안전관리법 개정안 등 4건	협의결과 수용
제6회	15.04.23	국민행정부패의 예방에 관한 법률안	협의결과 수용

개회회수	개회일	법안명	협의결과
제7회	15.05.19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조정안 불수용
제8회	15.06.03	논어협업부지법안	협의결과 (일부)수용
		논어협업부지법에 관한 법률안	
제9회	15.07.01	근로차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조정안 수용
제10회	15.08.17	경북제방법 개정안	조정안 수용
제11회	15.09.21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	협의결과 불수용
제12회	15.09.24	유류기기간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협의결과 (일부)수용
제13회	15.10.0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협의결과 불수용
제14회	15.10.23	농촌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협의결과 불수용
제15회	15.10.28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협의결과 수용
제16회	15.11.0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협의결과 수용
제17회	15.11.10	도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협의결과 불수용
제18회	15.11.1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조정안 수용
		한국과학기술원법 개정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개정안	
		금주과학기술원법 개정안	
제19회	15.12.28	유아교육법 개정안	조정안 수용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2016년			
제1회	16.03.10	해암조사와 그 정보활용에 관한 법률안	이견조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2회	16.08.04	통일교육 지원법안	이견조정
제3회	16.08.08	충청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견 미조정
제4회	16.08.08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안	이견조정
		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	
		생활화학용품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안	
제5회	16.08.11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안	이견조정

개회회수	개최일	법안명	협의결과
제6회	16.08.30	정밀작 배상법안	정부의견 동일 필요성에 합의
		제2회 핵발전법 개정안	
		최저임금법 개정안	
		방위사업법 개정안	
		공공이용시설 등의 안전관리위반법칙 처벌 특별법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안	
제7회	16.10.05	화장품법 개정안	이견조정
제8회	16.10.0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이견조정
제9회	16.10.11	특정 공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견 미조정
제10회	16.10.20	시해 도도 지원 특별법 개정안	이견조정
제11회	16.10.21	학교급식법 개정안	이견조정
제12회	16.10.25	대학구조개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견조정
제13회	16.10.26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이견조정
제14회	16.10.27	원자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견조정
제15회	16.11.03	항공안전법 개정안	이견조정
제16회	16.11.04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법안	이견조정
제17회	16.11.0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견 미조정
		학교보건법 개정안	
제18회	16.12.0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견조정
제19회	16.12.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이견 미조정
제20회	16.12.14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	이견조정
제21회	16.12.15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안	이견조정
2017년			
제1회	17.01.16	사회적 청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이견조정
제2회	17.01.1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의견 동일 필요성에 합의
		특정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살기좋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민주헌정창제행위자의 부정축적 재산환수에 관한 특별법안	
		조세범처벌법 개정안	

개회회수	개회일	법안명	현의결과
제3회	17.02.16.	환경보건법 개정안	이전조정
제4회	17.02.16.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이전조정
제5회	17.02.28.	환경보건법 개정안	이전조정
제6회	17.04.06.	은행법 개정안	이전조정
제7회	17.04.0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전조정
제8회	17.05.31.	항공안전법 개정안	이전조정
제9회	17.07.12.	항공사업법 개정안	이전조정
제10회	17.07.1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견 동일 필요성에 합의
제11회	17.07.19.	영사정보통신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이전조정
제12회	17.09.05.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이전조정
제13회	17.09.1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이전조정
제14회	17.09.14.	동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전 미조정
제15회	17.07.1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전 미조정
제16회	17.10.12.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	이전조정
제17회	17.10.2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전 미조정
제18회	17.11.07.	수도권 등 대기관리관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이전 미조정
제19회	17.11.15.	축산개발회사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전조정
		식품위생법 개정안	
		처치임금법 개정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경부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허도금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관리 위반벌칙 처벌 특별법안			
제20회	17.12.13.	수도권 등 대기관리관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이전조정

개회회수	개회일	법안명	현의결과
2018년			
제1회	18.3.22	국채형택선박 및 함안사실 노안개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견조정
제2회	18.5.2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견조정
제3회	18.7.26	철도보안법 개정안	이견조정
		철도안전법 개정안	이견조정
		아동복지법 개정안	이견조정
		노인복지법 개정안	이견조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견조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견조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이견조정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이견조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이견조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견조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견조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견조정
제4회	18.8.30	관광진흥법 개정안	이견조정
		국민영양관리법 개정안	이견조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이견조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	이견조정
		공중위생관리법개정안	이견조정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이견조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견조정
		행정사법 개정안	이견조정
		산림보호법 개정안	이견조정
		수상채지인정법 개정안	이견조정
		소방기본법 개정안	이견조정
		회차예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이견조정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견조정
		경비업법개정안	이견조정
		수신에서의 주벽·구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견조정

개회회수	개회일	법안명	현역결과
		노인복지법 개정안	이전조정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이전조정
		청소년기본법 개정안	이전조정
		고등안전법 개정안	이전조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이전조정
		건축사법 개정안	이전조정
		철도안전법 개정안	이전조정
		도선법 개정안	이전조정
		축산법 개정안	이전조정
		관세사법 개정안	이전조정
		방안운송사업법 개정안	이전조정
		세무사법 개정안	이전조정
제5회	18.10.5.	최저임금법 개정안	이전 미조정
제6회	18.10.30.	해양쓰레기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개정안	이전조정
제7회	18.11.08.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전 미조정
제8회	18.11.13.	소벌기본법 개정안	이전 미조정
제9회	18.11.1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전 미조정
제10회	18.11.22.	우편법 개정안	이전 미조정
제11회	18.12.10.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이전 미조정
제12회	18.12.18.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	이전조정
2019년			
제1회	19.1.23.	군무원인사법 개정안	이전조정
제2회	19.2.12.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18157)	이전조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18318)	이전조정
제3회	19.3.27.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18157)	이전조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18318)	이전조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18152)	이전조정
제4회	19.3.28.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전조정
제5회	19.4.8.	해운법 개정안	이전조정
제6회	19.6.13.	청소년기본법 개정안	이전조정

개회회수	개회일	법안명	협의결과
제7회	19.6.18	소방기본법 개정안	이전 미조정
제8회	19.6.27	4.15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이전조정
제9회	19.7.10	수상재난안전법 개정안	이전조정
제10회	19.7.10	사용직경제 기본법안	이전조정
		수상재난안전법 개정안	이전조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이전조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	이전조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전조정
		생태·복지도시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전조정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성신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전조정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전조정
		세안근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이전조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전조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전조정		
제11회	19.8.12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전조정
제12회	19.8.13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이전조정
제13회	19.8.23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19764)	이전조정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20023)	이전조정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20392)	이전조정
제14회	19.8.26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이전조정
제15회	19.9.16	발전소주변지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전조정
제16회	19.9.27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19764)	이전조정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20023)	이전조정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20392)	이전조정
제17회	19.9.2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	이전조정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	이전 미조정
제18회	19.10.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16836)	이전 미조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17923)	이전 미조정
		생활용품수거노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전조정

개회회수	개회일	법안명	회의결과
		노인복지법 전부개정안	이견조정
		발령관리법 개정안	이견조정
		역사문화권 설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견조정
		고대역사문화권 지정 및 연구·조사 등에 관한 법률안	이견조정
		자한역사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견조정
		기아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이견조정
		고대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이견조정
		달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이견조정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이견조정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안	이견조정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견조정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견조정
		장애인 권리보장법안	이견조정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	이견조정
		공공기관의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	이견조정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법률안	이견조정
		공공정책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	이견조정
		공공관리기본법안	이견조정
		갈등기본법안	이견조정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이견 미조정
		의료법 개정안	이견조정
		장애를 겪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	이견 미조정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견조정
제19회	19.11.20	공채채취법 개정안	이견조정
제20회	19.12.11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	이견조정
2020년			
제1회	20.1.30	일제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견조정
		보수관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견조정

개회회수	개회일	법안명	협의결과
		신원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형성권심포럼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견조정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이견조정
		공업지역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견조정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견조정
		공공보건외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견조정
		은행일 금융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견조정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견조정
		도시공간 혁신 규제특례법안	이견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견조정
		폐철도부지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견조정
		2018 관광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이견조정
		스포츠생물 진흥법안	이견조정
		이순신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견조정
		국립 국가폭력트러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견조정
		공공차량의 개발 및 국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이견조정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견조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견조정
제2회	20.2.11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견조정
제3회	20.2.24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견조정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견조정
제4회	20.3.17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견조정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이견조정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 및 중태연관침해의 진상규명과 정의의 실현을 위한 기본법안	이견조정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이견조정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이견조정
		명화경제기본법안	이견조정
		교정공무원 보편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이견조정

개최회수	개최일	법안명	협의 결과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견조정
		공공기관의 지출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이견조정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이견조정
		사회적 당국화 해소 기본법안	이견조정
		유신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견조정
		청어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견조정
		관성출발법관리법안	이견조정
		농어업인 기본수당법안	이견조정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이견조정
		수단기자재산업 육성법안	이견조정
		제5회	20.4.16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견조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이견조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안	이견조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안	이견조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견조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견조정		
경제위기지역 지원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이견조정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견조정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견조정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견조정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견조정		
제6회	20.8.26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	이견조정
		대한민국 나라꽃에 관한 법률안	이견조정
제7회	20.9.1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2603)	이견조정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3618)	이견조정
제8회	20.9.21	군보건피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견조정

개회회수	개회일	법안명	협의결과
제9회	20.9.2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건 미조정
제10회	20.9.24	한국중소기업등로지원공사법안	이건 미조정
제11회	20.10.21	전종일 동봉체계 운영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건조정
제12회	20.10.2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건조정
제13회	20.10.23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이건 미조정
		기초학력 보장법안(670)	이건 미조정
		기초학력 보장법안(678)	이건 미조정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	이건 미조정
제14회	20.10.26	제주도부지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건조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조정
제15회	20.10.26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이건조정
제16회	20.10.2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건조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건조정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이건조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조정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이건조정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조정(일부)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조정(일부)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조정(일부)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건조정(일부)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조정(일부)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조정(일부)		
제17회	20.10.30	관광여행집의 조성·관리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이건조정
제18회	20.11.3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안	이건조정
제19회	20.11.3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안	이건조정
제20회	20.11.4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조정
제21회	20.11.18	공중보건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대응을 위한 의료제품 공급 확대법	이건 미조정
		당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이건 미조정

계획회수	계획일	법안명	협의결과
제22회	20.11.20	불곡제민 진흥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이견조정
제23회	20.11.2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견조정
제24회	20.11.2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견조정
제25회	20.11.27	만주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	이견조정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견조정
제26회	20.11.27	반값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견조정
제27회	20.11.1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견조정
제28회	20.12.7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견 미조정
		수신기지재산법 육성법안	이견조정
		농어업인 공익수당지원법안	이견조정
제29회	20.12.7	불곡제민 진흥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이견조정
제30회	20.12.14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이견조정
제31회	20.12.31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협의 진행 중)
제32회	20.12.3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협의 진행 중)

▣ 쟁점별 사례

청소년 기본법 개정안

주요내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단체를 육성하고 청소년단체와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그 책임을 명시하고,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청소년단체를 담당하는 지도교사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

쟁점

-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청소년단체 활동을 담당하는 교원을 “청소년단체 활동 지도교사”로 정의할 수 있는지, ② 교육청이 청소년단체 육성·활동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③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청소년단체 활동 지도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부처 간 이견 내용

- 여성가족부(찬성)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 진흥을 위해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의 근거, 업무과중에 따른 보상 근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에 대한 시책 마련 책무 부과 필요
- 교육부, 기획재정부(신중검토)
민간단체 활동 지도 행위를 교원의 법적 임무로 보기 곤란한 점, 민간단체 진흥을 위한 시책 마련에 국가 개입은 부적절, 다른 교육활동 지도교사와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 가능하므로 신중 검토 필요

현의 결과

- (쟁점 1)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를 정의 규정에 두게 되면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가 따로 창설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점, 제29조제2항에서만 사용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의 규정에서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를 삭제하고 제29조제2항에 직접 규정하는 것에 대해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합의
- (쟁점 2·3) 여성가족부와 교육부는 6.13.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 참석 후 이견이 있는 관련 내용을 추가로 검토하였으나 의견 조정이 어렵다고 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이에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회의 결과를 국무조정실에 통보

수상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주요내용

- 안전한 수상폐기물처리를 위해 수상폐기물등의 일시정지 명령권 부여할 시 과태료 부과권 포함을 소방서장에게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생점

- ① 소방서장의 일시정지 명령권 신설 필요성, ② 소방서장의 일시정지 명령권 행사 범위, ③ 소방서장의 과태료 부과권 인정 여부

부처 간 이견 내용

- 해양경찰청(반대)
소방서장의 일시정지 명령권을 발할 수 있는 경우를 내수면에 한정하고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한다면 수용 가능하나, 수상폐기물 안전관리업무가 일원화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우려
- 소방청(일부 찬성)
소방서장이 일시정지를 영한 사실을 시·군·구·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는 것은 집행과정에서 현실적 어려움 예상

협의 결과

- ① 소방서장의 일시정지 명령권 신설 필요성
수상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점을 고려하여 소방서장의 일시정지 명령권 신설 필요성과 관련한 국회의론과 과정에서 그 입법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아래와 같은 점에 대해 보완 필요
- ② 소방서장의 일시정지 명령권 행사 범위
다른 법률과의 체계를 고려할 때 소방서장의 일시정지 명령권은 내수면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명령권의 행사로 인해 국민의 자유가 제한될 여지가 있으므로 명령권행사 요건을 방지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이 명백히 예견되는 경우'로 한정할 필요
- ③ 소방서장의 과태료 부과권 인정 여부
과태료는 현행대로 내수면 안전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시·군·구·구청장이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나 소방서장에게 일시정지 명령권이 부여되고, 그 실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과태료 부과권도 같이 부여한다면, 일시정지 명령권에 한정하여 과태료 부과권을 부여

국회 심의 반영 여부

- 국회 심의 중(협의 결과가 위원회안(대안)에 반영됨)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주요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및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한 때부터 해당 폐기물의 최종처분이 종료될 때까지 일련의 처리과정이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확인·조치할 의무 부여

쟁점

- 폐기물배출자에게 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때부터 해당 폐기물의 최종처분이 종료될 때까지 일련의 처리과정에서 법에서 정한 처리기준과 방법, 재활용원칙 등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한지

부처 간 이견 내용

- 환경부 수용
폐기물이 법정 상 기준에 부적합하게 처리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폐기물 배출자와 폐기물 처리업자 간의 결합 관계가 부적정처리폐기를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자 뿐 아니라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확대가 필요함
- 산업통상자원부·산중검토 필요
위탁한 때부터 폐기물의 최종 처분이 종료될 때까지 일련의 처리 과정을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은 업계에 과도한 책임부과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폐기물 배출자가 처리업체의 시설, 공정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처리과정이 적합한지 여부 판단 곤란함

협의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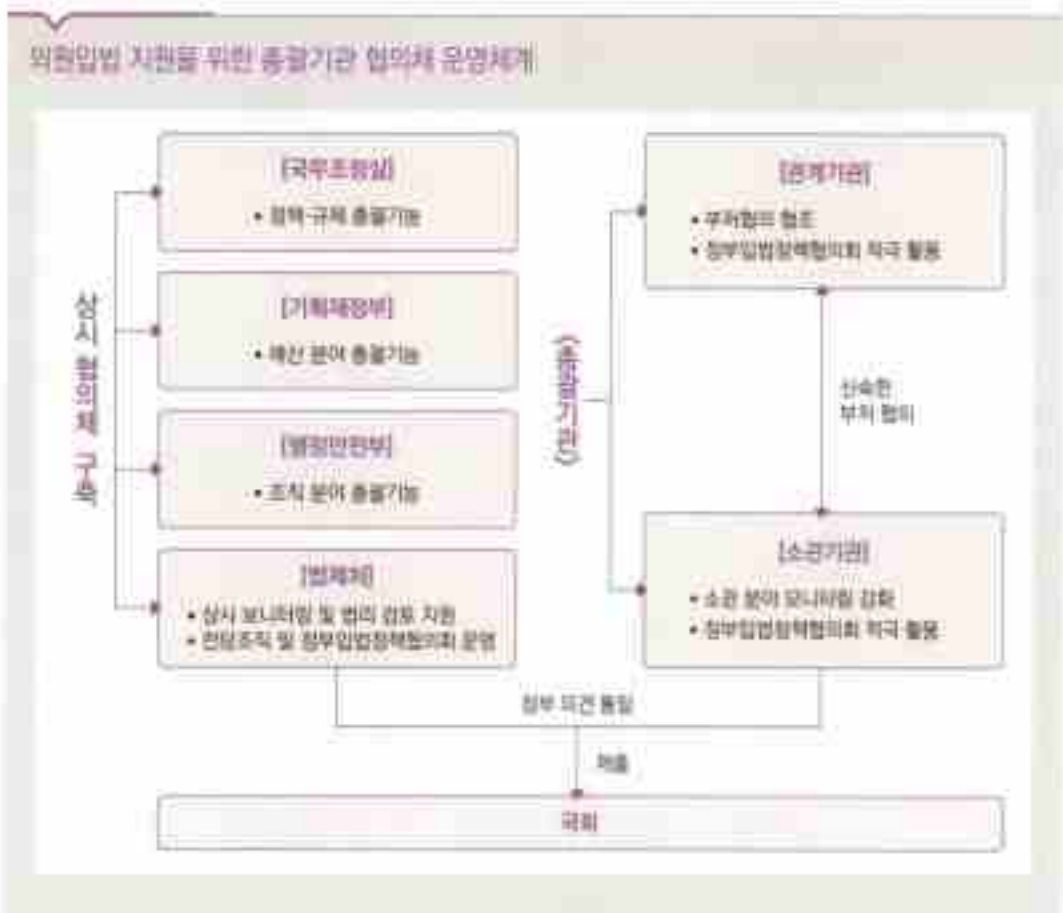
- 음식물 및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의 확인·조치 의무
폐기물 적정 처리를 통한 환경보전이라는 공익을 위해 배출자의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공감하나, 개정안의 본수가 폐기물 배출자에게 폐기물 배출부터 처리 과정 일거수 일투족을 모두 감시하도록 하는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음. 따라서 배출자의 책임을 확대하는 입법취지를 유지하면서 배출자가 준수할 수 있는 최정한 수준의 책임 부과가 될 수 있도록 협의안과 같이 수정하되, 향후 허위법령을 만들 때에도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기로 함

국회 심의 반영 여부

- 협의 결과 반영되어 국회 통과됨

☞ 총괄기관 협의체를 통한 지원

법제처는 임시·정기국회 개최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지원업무 외에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법안 등 과도하게 예산이 수반되어 정부재정에 부담을 주거나 정부정책과 크게 배치되는 주요 쟁점법안을 별도로 파악하고,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법제처 등으로 구성된 총괄기관 회의를 통해 쟁점법안에 대한 정부입장을 정리하여 국회에 전달함으로써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비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정점별 사례

국·공유재산 특례 관련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참여하거나 같은 사업을 위해 신설되는 법인에 국유·공유재산을 50년의 범위에서 임대할 수 있으며, 50년의 범위에서 경신할 수 있도록 함

정점

- 상생법인에 대한 국·공유재산 임대기간(50년 임대, 50년 범위에서 경신)의 적절성

부차간 아간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추가협의 필요
특례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우려의 경우,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원활한 심의·선정을 통해 특례 대상이 특정 가능하므로 해당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현안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일자리창출기업,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특례를 활용하여 상생형지역일자리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상생형지역일자리 기업이 동 시행령에 따른 일자리창출기업 또는 사회적경제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당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고, 해당 조항에 따른 특례내용도 공유재산에 적용되는 내용(장기임대 최대 50년, 수익계약 허용, 임대료 감경 등)과 달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기획재정부·반대
정부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을 통해 상생법인에 대한 패키지 지원방안으로 국유재산의 장기임대 기간을 10년 이상, 최대 50년 범위 내에서 허용하기로 발표한 바 있으므로, 임대기간은 최대 50년으로 한정할 필요
- 행정안전부·반대
그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6~18조)을 통해 일자리창출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해 공유재산 활용 특례를 아예와 같이 기 마련하였으므로, 본 개정법률안의 대부분 상생법인의 경우도 공유재산법령을 적용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시료됨

합의 결과

- 협의의 결과가 반영되어 국회 통과함
- 조문의 구조상으로는 상생법인의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에 특례의 대상과 목적이 특정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에서 상생법인에 대한 국·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을 50년의 범위 이내로 하고, 경신기간도 5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신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해당 상생법인에 대한 과도한 특례이므로, 임대기간은 최대 50년의 범위 이내로 한정하도록 조정함

행정기관 위원회 관련 : 할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현행 할약을 위한 자원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현물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국민보전 형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점

-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현물추진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부처 간 이견 내용

- 보건복지부: 수용
할약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학생 현물(교육부), 군(예비군 포함) 현물(국방부), 공공기관 현물(질러기재부) 등 범부처적·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나, 관련 부처별로 협축하여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나 쉽지 않은 상황
 - * 현물추진협의회(할약관리법 제4조제4) : 지역사회 단위로 현물홍보 등을 위해 구성·운영
 - 할약관리위원회(할약관리법 제5조) :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민간전문가, 담당부처(복지부, 질병관리청) 중심으로 구성되어 범부처적 정책 조정 및 파견에 한계
- 행정안전부: 반대
현재 할약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할약관리법」 제5조에 따라 할약관리위원회를 두고, 회 설치된 위원회를 통해(예 : 간담·분과위원회 활용 등)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동법 제4조의4에 따라 지자체 장이 현물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협의 결과

- 개정안은 마히 협의회가 위원회의 성격과 가지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어 그 성격이 불분명하므로, 만약 협의회를 '협의체'로 운영할 계획이라면 그에 맞추어 개정안 제4조의2제2항*의 수정 필요

03 • 국회 상임위원회의 의견제시 요청에 대한 처리

1. 법제처

국회 상임위원회가 법률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법제처의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법리적 쟁점 중심으로 작성하되, 정부입법성평화회의 등을 통해 정부의견이 정리된 법안인 경우에는 합의회 결과 등 조율된 정부입장을 전달하도록 한다. 그리고 부처 간 이견이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처 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국회에 통보한다.

2. 소관부처 및 관련부처

소관부처(주관부처)가 국회 상임위원회 등으로부터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구받은 경우, 각 부처는 해당 법률안에 대한 부처별의 후 합의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부처 상호간 이견으로 인하여 국회에서 요청한 기간에 합의된 의견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처 간 이견이 있음과 추후 부처 간 의견협의를 거쳐 조율된 의견을 제출할 것임을 명시하여 국회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소관부처는 국회에 의견을 제출한 경우 그 제출한 검토의견을 법제처장, 기획재정부장관(정부재정과 관련한 내용인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정부조직과 관련한 내용인 경우)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법제사법위원회

수신 수신자 참조

(과유)

제목: 의견제시 요청(의안번호 제17246호, 제17364호)

정부권 법률안과 같이 이른바 "프리선정위원회"와 같은 여당의 인사로 특수
법 공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설립 법률에 설치하는 것에 관하여 국 부처의 의견
을 11. 25(화) 17:0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김명진 입법조사관 (02-788-2183)

붙임 1. 국립중앙박물관장 임부개칭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2. 방안공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1부, 공.

법제사법위원회장



수신처: 법무부(국회재정담당관), 입법지원기획재정담당관, 기획재정위원회(기획재정담당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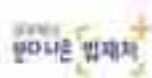
구분	입법조사관 명	담당부서	수신담당자 연락처(내선)
주소지			
서명	법제사법위원회, 김명진 02-788-2183	입부	국회재정담당관-1430 / 02-788-11-262
우	02200 서울 영등포구 30사당동 1국회법제사법위원회 416호		/ legislation.assembly.go.kr
연락번호	가방	팩스번호 -02-788-2672	/ fax@legislation.go.kr / 한국인 명예

제정: 1월 29일, 1월 29일(공정경제혁신위원회) (2021-48-21 (3.58.42))

대한민국



법 제 처



주신 법제사법위원회

(경부)

제목: 의견제시 요항에 대한 회신(회신번호 제17246, 제17384호)

1.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실-3288과 관련하여,
2. 귀 위원회가 요청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불입과 같이 회신하였으나 일부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법제처 검토회견서(17246, 국립해양물류관)
 2. ★법제처 검토회견서(17384, 한국공시법) 1부

법 제 처 장

법제사법부	법제처장에게 문	법제처장부 법제처장에게 제정(제정)
주소지		
서울 법제처중앙대로-4875		경부
우 0101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로 25, 법제처 (우편번호)	Website: www.mleg.go.kr
전화번호 02-210-14801	팩스번호 02-210-14802	이메일주소: mleg@leg.go.kr
문화체육관광부 및 위원회의 귀책, 1부(1부) mleg.go.kr/freemove 공적관리(법제처)법제처장(제정) 4411 1-1		

위원회 신설 법안에 대한 법제처 의견

법안의 개정 경과

- 2018. 12. 6. 황주홍 의원, 최도자 의원이 각각 “유리천장위원회” 관련 법안 대표발의
2019. 11. 20.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안의 주요내용

- 수도권, 광역시(군지역 제외),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1개월 이내에 그 주택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임대 주택의 차임 및 보증금 등을 등록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 등록제도를 도입함(안 제3조 및 제4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등록된 개별 주택마다 해당 연도의 공정임대료(보증금, 차임 등)를 결정하여 공시하도록 하되, 공정임대료를 결정할 때는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 종전 보증금과 차임, 주거비 절감지수, 인근 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7조)
- 공정임대료를 초과하는 차임 등을 약정한 계약은 그 초과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공정임대료를 초과하여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한 임차인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법안에 대한 법제처 의견

1. 법안 개관

- 이 법안 제4조, 제7조 및 제10조는 최근 저금리 기초와 장기화 등으로 폭등하고 있는 전세 가격과 전세의 월세로의 급격한 전환에 따라 위협받고 있는 서민의 주거와 기계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개별주택의 임대료 등록제도와 개별주택에 대한 공정임대료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이하 생략)

3

그 밖의 의원입법 지원 업무



01 • 중앙부처 의원입법 담당자 연찬회 개최

▣ 목적

법제처는 중앙부처 의원입법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의원입법 지원업무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고 전문성을 제고하여 정부입법정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부처 간 업무에 대한 의견교환의 기회를 마련하고 긴밀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원활한 업무 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연찬회를 개최한다.

▣ 내용

의원입법 연찬회는 보통 6월에서 8월 사이에 1일~2일정도 실시하며, 매년 평균 중앙부처 의원입법 업무 담당자(각 부처 법무담당관실 및 법안 담당자 등) 20~50여명이 참석한다.

의원입법 연찬회는 의원입법 지원업무에 대한 계관 및 추진절차, 의원입법 검토사례 및 정부입법 정책협의회 사례, 의원입법의 입안과정, 그리고 의원입법 관련 이슈에 대한 분임토의와 간담회 등으로 구성된다. 의원입법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통해 각 부처 담당자들의 의원입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의원입법 검토 및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사례를 중심으로 해설하여 담당자들이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담당자 간 분임토의 시간에는 법제처의 의원입법 지원 방안, 의원입법지원시스템의 활용 방안, 각 기관의 의원입법 국회 대응 시 대응사항 등 연찬에 대하여 토론 및 발표하는 시간을 가진다. 또한 매년 연찬회 개최 시 모든 교육과정이 마무리되면 참석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는데, 이 설문조사를 통하여 연찬회 장소, 강의 구성 및 내용 등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한다. 매년 제기된 개선 요구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 해 연찬회 개최 시 최대한 반영하여 각 부처 법무담당자들에게 보다 용리한 의원입법 연찬회가 되도록 노력한다.

17) 상황에 따라 당일 일일 또는 2일간, 하반기 2회로 나누어 실시하기도 한다(2011년). 2015년부터는 연찬회와 의원입법 세미나를 각각 격년마다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2014년, 2016년, 2018년에는 연찬회를 개최하지 않고, 의원입법 세미나만을 개최하였다.

▣ 업무프로세스

의원입법 연찬회 개최 실적

구분	일시	장소	참석
2008년도	08.10.16-17	제주도 금호리조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법제업무 담당자 70여명
2009년도	09.6.4-5	부산 대명리조트	문화체육관광부 등 20개 중앙부처 직원 20명
2010년도	10.6.3-4	충천 대명리조트	공정거래위원회 등 19개 중앙부처 직원 20명
2011년도	11.6.17(삼반기) 11.12.14(하반기) ¹⁸⁾	이외도 휴식당호텔	공정거래위원회 등 25개 부처 직원 37명 국회 및 각 부처 실무자 60여명
2012년도	12.6.28 ¹⁹⁾	일산컨벤션스	국회, 유관기관 및 각 부처 실무자 150여명
2013년도	13.6.4	한국 프레스센터	중앙부처 의원입법 담당 국·과장 등 30여명
2015년도	15.8.27-8.28	충남 보령 한화리조트	중앙부처 의원입법 담당자
2017년도	17.3.23-3.24	광주 힐튼호텔	국회 및 중앙부처 의원입법 담당자 33명
2019년도	19.4.23	부여 롯데리조트	중앙부처 의원입법 담당자 40여명

18) 2011년도에는 연찬회를 당일 일정으로 하여 삼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추진하였으며, 하반기 연찬회는 매년 국회 부의 업무협조를 위해 개최되는 의원입법 세미나와 연계하여 개최하였다.

19) 2012년도에는 법제처 주최 국제행사인 "아시아법제포럼"과 연계하여 아시아법제포럼 내 분과회의와 하나로 개최하여, 중앙부처 공무원, 국회 담당자 뿐 아니라 관련 학회, 포스트불 학생 등 외부에서도 많이 참석하였다.

2019년 의원입법 담당자 연천회 기본계획

1. 연천회 목적

- 중앙부처 담당자를 대상으로 법제처의 법제지원(정부입법 및 의원입법지원) 제도를 소개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법제처-중앙부처간 상호 협력 체계 강화

2. 연천회 개요

- (일시) 2019. 4. 23.(화) 10:00 - 17:00
- (장소) 롯데리조트 부여(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소재)
- (참석자) 약 40명(중앙부처 의원입법 담당자, 법령입안 담당자 등)

3. 연천회 구성

- 법령입안지원제도 소개
 - 지원 대상, 법령,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안내
 - 법령입안지원 추진 실적 및 실제 지원 사례 소개
 - 일차리 등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중점 지원 계획 소개
- 법률 입안 시 유의사항
- 적극행정 법령입안 소개
- 법령입안지원 제도 관련 질의 응답 및 토론
- 의원입법 지원제도 소개
- 의원입법 지원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 의원입법지원시스템 활용도 제고 방안
 - 법제처의 법안 검토-조정 결과 국회 전달방식 개선
 -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 활성화 방안
- (분임토의) 의원입법 지원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의 및 발표
- (특검) 헌법재판소 결정례로 배우는 법률 입안의 이해
- (실문조사) 법제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 만족도 조사

연천회 설문조사서 예시(계속)

7. 법리적 쟁점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공 외에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한 상담 등 간략한 의견제시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8. 법제처의 의원입법 지원업무와 관련된 건의 사항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답

■ 의원입법지원시스템 이용

1. 법제처에서는 정부입법지원센터(의원입법지원시스템)를 통해 의원입법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입법지원시스템 메뉴 중에서 이용하신 경험이 있는 항목을 표시해주세요. (중복 체크 가능)

- ① 인간형 또는 인간형(관계기관)에서 발의사실 확인
 ② 법제처에서 법률안 상세정보에 입력한 관계기관 협의 필요사항 확인
 ③ 법제처에서 법률안 상세정보에 첨부한 법리적 검토의견서 확인
 ④ 법률안에 대한 부처의견 입력 및 타 부처 의견 확인
 ⑤ 부처 간 협의 결과 입력 및 확인
 ⑥ 국회입법현황 검색 및 통계 확인
 ⑦ 이용 경험 없음
 ⑧ 기타 (이용사항 기재)

2. 현재 법률안에 대한 부처 간 의견조화는 공문(문나라)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원입법 시스템을 통해 직접 부처 간 의견을 조화하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보통 ④ 필요하지 않다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3. 현재 의원입법시스템에서는 법률안과 관련된 언론보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보통 ④ 필요하지 않다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연찬회 설문조사서 예시(계속)

4. 의원입법지원시스템 이용 시 어떤 점이 불편하십니까? (중복 체크 가능)

- ㉠ 시스템의 빈번한 오류 발생
 ㉡ 컴퓨터보고서 등 필요한 자료 찾기가 용이하지 않음
 ㉢ 기능이 지나치게 복잡함
 ㉣ 검색속도가 느림
 ㉤ 고객센터의 전화응대 불편
 ㉥ 불편한 점 없음
 ㉦ 기타 (불편사항 기재:)

5. 의원입법지원시스템 개선을 위한 의견을 적어주세요.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19년도 법제지원 분야 중앙부처 담당자 워크숍 전반

1. 이번 워크숍 전반에 대한 소감은?

- ㉠ 매우 유익하다 ㉡ 유익하다 ㉢ 보통 ㉣ 유익하지 않다 ㉤ 전혀 유익하지 않다

2. 워크숍 장소·시설에 대한 의견은?

- ㉠ 매우 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 불만족

☞ 추천하고 싶은 다른 장소·시설:

3. 워크숍 기간에 대한 의견은?

- ㉠ 현행 1일이 적당 ㉡ 조정 필요: 1박 2일, 2박 3일

연친회 설문조사서 예시(계속)

4. 특강 내용 및 방법에 대한 의견은?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5. 업무소개, 외부특강, 분임토론 등 워크숍 진행 및 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은?

- ① 매우 적절 ② 적절 ③ 보통 ④ 부적절 ⑤ 매우 부적절

6. 시간을 늘리거나 줄였으면 하는 부분, 그 밖에 개선 의견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

☞ 설문에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2 • 의원입법 세미나 개최

■ 목적

법제처는 정부·국회 실무자 간 교류를 강화하고 의원입법의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와 국회의 상호협력을 통해 의원입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 및 국회 담당자들과 의원입법 협력 세미나를 개최한다.

■ 내용

의원입법 세미나는 보통 하반기에 1회 실시²⁰⁾하며, 주로 중앙부처 법무담당관 및 국회사무처·국회 상임위원회 공무원과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 직원 30~40여명이 참석한다.

의원입법 세미나에서는 법제처의 의원입법 지원업무에 대한 발표와 함께 국회의 법제실, 법제사법위원회, 각 상임위원회 입법조사관 및 외부 전문가의 발표도 함께 이루어진다. 행정부와의 입장이 어긋난 국회에서 바라보는 의원입법의 현안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의견과 제3자인 외부 전문가의 입장에서 본 국회·정부 간 의원입법 협력방안도 같이 논의함으로써 정부와 국회 간 원활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최근에는 과도한 규제 도입과 규제 수 증가의 원인으로 의원입법이 지목됨에 따라 2016년도 세미나에서는 국회, 중앙부처 및 연구기관 관계자가 참여하여 규제 관련 의원입법에 대한 국회와 정부 간 협조체계와 주요 국가의 의원입법에 대한 정부 지원 시스템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의원입법 과정에서의 국회와 정부 간 협력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또한, 2018년도 세미나에서는 입법과정에서의 국회와 정부 간 협력 방안을 주제로 의원입법 합성회에 따른 국회와 정부의 협력방안과 국회의 법률안 심사과정에서의 정부 역할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20) 의원입법 세미나를 개최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2011년까지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10일 이후 개최하였으나, 2012년부터 현재까지는 하반기 중으로 하여 무도칙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2015년부터는 연차회의 의원입법 세미나를 각각 격년마다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2014년, 2016년, 2018년에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업무 프로세스

발표자 선정, 장소 선정 (2개월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자 섭외는 주로 법제처 내부는 의원입법 법제관, 국회 측은 법제실 법사위 상임위 입법조사관 중 섭외 • 발표 링크는 세미나 1개월 전까지 요청
기본계획 수립 (2개월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장소, 구성 등에 대한 세미나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 내부보고 및 국회 홍보
차도집 발간 등 행사준비 (1개월 전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 측 참석자 명단 확정²⁾ • 발표자 권고 취합하여 차도집 인쇄 • 시나리오, 발문자료 등 준비
세미나 개최 (7월 ~ 12월 중)	
결과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미나 결과 보고 • 발표자 사제비, 장소 임차료 등 지급

세미나 개최 실적

구분	일시	장소	참석
2008년도	08.12.10.	여의도 핵심연호텔	국회 법제실, 법사위 입법조사관 등 30여명
2009년도	09.12.10.	여의도 63빌딩	국회 법사위, 치경위 입법조사관 등 30여명
2010년도	10.12.10.	여의도 핵심연호텔	국회 의원과, 법제실, 법사위 입법조사관, 특임장관실 등 40여명
2011년도	11.12.14.	여의도 핵심연호텔	국회 법제실, 법사위 입법조사관, 기획재정부, 건국대 교수 등 60여명
2012년도	12.6.28	일산 컨벤션	국회, 유관기관 및 각 부처 실무자 150여명
2013년도	13.8.28.	여의도 핵심연호텔	국회 법제실, 법사위 법제연구과장 등 40여명
2014년도	14.7.11.	여의도 핵심연호텔	국회 법제실, 국방위 입법조사관, 관공부 등 약 50여명
2016년도	16.6.15.	일레니엄 힐튼호텔	국회사무처·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법제사법위원회, 중앙부처, 학계 등 약 60여명
2018년도	18.11.23.	일레니엄 힐튼호텔	국회, 중앙부처 공무원, 학계, 연구원 등 60여명
2020년도	20.11.6	일레니엄 힐튼호텔	국회, 중앙부처 공무원, 연구원 등 30여명

2) 2012년도에는 법제처 주최 국제행사인 '아시아법제포럼' 및 의원입법 연찬회와 연계하여 아시아법제포럼 내 본국회의와 하나로 개최하였으며, 중앙부처 공무원, 국회 실무자 뿐 아니라 관련 학회, 포스트 학회 등 외부에서도 많이 참여하였다.

연도별 세미나 주제

구분	주제	발표자
2008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회 의원입법 검토 사례 제17대 국회 의원입법 사례별 분석 의원입법 관련 업무 프로세스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회 법제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처 법제총괄담당관실
2009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원입법의 사례별 분석 1 의원입법의 사례별 분석 2 2009년 행정법제 분야 의원입법의 동향 2009년 사회문화법제 분야 의원입법의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법제처 행정법제국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2010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원입법 입법사례 의원입법 부처 간 이견 조정 사례 당정협의 사례 의원입법에 대한 효율적 지원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회 법제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독임청관실 법제처 법제총괄담당관실
2011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의 의원입법 지원업무 개관 및 검토사례 제18대 국회 의원입법 분석 의원입법 관련 국회와 정부의 협력방안 의원입법지원시스템 시용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제처 법제지원단 국회 법제실 간국대 교수 법제처 법제지원단
2012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 국회입법의 문제점과 과제 국회가 보는 의원입법의 현황 및 국회의 책임과 역할 참부가 보는 의원입법의 현황 및 정부의 책임과 역할 중국·일본·인도네시아의 입법과정 및 시사점 입법과정에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바람직한 협력방안 의원입법과정에서 국민참여기능 확대방안 의원입법 내실화를 위한 과제 의원입법 지원업무 소개 및 협조사항 최근 재정여건 및 예산편성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대 명예교수 국회 법제실 법제처 법제지원단 중국 법제연구원 등 간국대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대구대 교수 법제처 법제지원단 기획재정부
2013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원입법의 활성화에 따른 개선방안 의원입법에 대한 효율적 정부지원 수렴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회 법제실 법제처 법제지원단
2014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원입법지원 입안 사례분석과 개선방안 (국회 내 입안절차 및 부처 의견수렴을 중심으로) 의원입법 심의과정에서의 부처협력 강화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회 법제실 법제처 법제지원단
2016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 관련 의원입법에 대한 국회와 정부 간 협조체계 주요 국가의 의원입법에 대한 정부 지원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양대학교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2018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원입법 활성화에 따른 국회-정부 협력 방안 국회의 법안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과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남대학교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2020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법과정의 국회-정부 협력방안 · 사전적 입법영향분석 도입을 중심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국대학교 교수 국회 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



2020 의원입법
지원업무 편람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4장

의원입법 검토기준

1. 검토 대상
2. 검토기준 및 검토사례

**2020 의원입법
지원업무 편람**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검토사항은 「정부입법절차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 제(조 제1항에 따라 ㄱ) 법리적 쟁점의 유무 여부, ㄴ) 다른 법률과의 충돌 여부, ㄷ) 조세의 감면 여부, ㄹ) 재정 지출의 증가 여부, ㅁ) 정부조직의 신설·폐지·변경 및 인원의 소요 여부, ㅂ) 규제의 신설·강화 여부, ㅅ) 입법정책상 부처 간 이견 및 그 밖에 집행하는 데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 등이다.

01 • 법리적 쟁점의 유무

▣ 입법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새로운 입법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법령이 아닌 다른 정책수단(행정지도나 예산조치 그 밖의 행정조치 등)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지, 법률로 정할 사항인지 또는 하위법령으로 정할 사항인지, 입법 내용이 해당 법률안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인지 등 입법의 필요성·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정책의 시행을 위해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새로이 법률을 제정할 것인지 또는 기존의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지, 어디까지를 법률로 규정하고 어떤 사항을 명백히 규정할 것인지 등 입법의 방식에 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제정 법률안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안과 유사한 목적의 현행 법률과의 관계에서 별도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재정자립도 또는 재정자주도가 전국 100분의 20 이하인 시·도 및 시·군·구가 관할 구역 내에 주민등록된 자로부터 "고향기부금"을 모집·접수할 수 있음

검토의견

- 고향기부금 제도는 기부금품의 자발적 기탁 활성화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고,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 필요성이 인정됨

※ 통계청 발표에 따른 2017년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52.5%이나, 광역시의 경우 최저 45.2%(경주), 최고 63.8%(울산), 도의 경우 최저 18.4%(전남), 최고 56.2%(경기), 시의 경우 최저 11.9%(전북 남원), 최고 64.2%(경기 화성) 등 지역 간 불균형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고향기부금 제도 도입은 이러한 불균형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일률적인 기부강요, 지방세의 유종이 예상되는 대도시권의 반발 및 고향기부금 유치를 위한 경쟁 과열로 인한 지역 간 갈등 유발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폐상되는 문제점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예를 들면, 일률적 기부강요에 대한 우려와 관련하여 고향기부금에 대해서도 기부금을 출연 강요금지 조항(제6조제1항) 및 위법 시 제재조항(제16조, 제17조)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미국 입법례] 일본에서는 2008년부터 고향기부금 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재정여유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점도 고려 가능함

* 일본의 제도는 개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출신지 포함)를 골라 기부금을 기탁할 경우 그 기부금의 일부를 국세인 소득세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내어 할증금에서 공제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됨

** 일본의 고향세 기부실적은 2012년부터 급증하여 2012년 649억엔, 2013년 1309억엔, 2014년 1429억엔, 2015년 341억엔, 2016년 1,470억엔을 기록함(감원연구원, 2017. 6. 13. 정책자료 제626호)

- (입법론적 측면에서의 추가 고려사항) 기부금품의 모집 등에 관한 유훈법안 이 법에 특별한 기부금인 고향기부금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보다는, 정치기부금의 경우 이 법이 아니라 별도의 법률인 「정치자금법」을 제정하여 그 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처럼 고향기부금도 일반적인 기부금과 다른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법도 고려 가능할 것임

▣ 헌법 위반 여부 검토

입법은 헌법정신을 구체화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헌법에 적합하여야 하므로, 모든 법률에 있어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원리가 구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의 기본원리, 주요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중립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입법부와 행정부 간 헌법상 권력분립의 정신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내용은 없는지도 검토가 필요하다.

헌법 위반 여부의 판단은 법리적·절차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며, 헌법재판제도 등을 통하여 많은 사례가 축적되고 논의된 바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대법원의 판결례 및 학계의 의견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²²⁾

* 헌법의 기본원리

- 국민주권의 원리, 사유재산주의 원리, 복지국가 원리, 법치국가 원리, 문화국가 원리, 평화국가 원리 등

* 헌법의 기본원칙

- 입법적 내용에 관한 원칙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신체의 자유와 관할소급입법금지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최소보장의 원칙
- 행정 체계에 관한 원칙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최후법정주의, 조세법률주의 등



Memo

²²⁾ 헌법 위반 여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입안 심사기준」 제1편 제2장(법령 입안과 관련한 헌법 원칙과 부칙) (법령 입안·심사시 헌법 관련 체크리스트) 및 「헌법의 법제실무」 등 참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약국과 인접한 시설로서 그 약국의 개설자·종사자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그 밖에 약국과 의료기관 간 경제적·구조적·기능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을 금지함

해당조문

- 제33조(개설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2. 약국과 인접한 시설(약국의 개설자·종사자 또는 그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등 대동영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3.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다만,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지 5년이 경과한 후 해당 약국의 개설자·종사자 또는 그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등 대동영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가 소유하는 곳에 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그 밖에 약국과 의료기관 간 경제적·구조적·기능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검토의견

-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 개정안에 따르면 약국과 인접한 시설로서 그 약국의 개설자·종사자 또는 그의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등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직업 수행의 장소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는 선택한 직업을 행하는 데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임
 - 한편, 약국의 개설자·종사자 또는 그의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경우 자신이 소유하는 시설이 약국과 인접한 경우에는, 그 소유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의료기관 개설이 금지되는 제한이 생기므로 이는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있음
- (명확성 원칙)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있고, 최근 개정된 같은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제33조 개설기준에 위배될 경우 의료업 정지 또는 개설 허가 취소 등을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규정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침익적 규정으로 명확성의 원칙이 보다 강하게 요구됨
 - 안 제33조제7항제2호에서 약국과 '인접'한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데, '인접'의 사전적 의미는 '이웃하여 있음, 또는 옆에 닿아 있음'임. 약국과 의료기관의 담합방지라는 입법목적은 고려하여라도, 인접한 시설의 범위를 알기 어려우므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안 제33조제7항제6호에서 열거된 사유 외에 기타 사유로 경제적·구조적·기능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경제적·구조적·기능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예측하기가 어려우며, 위임 규정의 불명확성은 포괄위임금지원칙의 관점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과잉금지원칙) 직업수행의 자유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비해 비교적 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고, 재산권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헌법(제23조제2항)에서 명시하고 있지만, 그 경우에도 제한입법은 다른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야 함.

- 의료기관 개설이 금지되는 사실의 범위와 관련하여, 인접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광범위하게 적용될 우려가 있고,

- 시설 소유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약국의 개설자 또는 그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 넓게 규정하여 적용할 수 있고, 약국의 영업 이익과 직접 관련 없는 단순한 약국종사자의 경우에도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까지 규율하게 됨

- 또한, 안 제33조제7항제6호는 열거된 개설금지 경우 외에 여러 가지 기타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이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제하여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침해피소성, 법익균형성 등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함



Memo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인터넷 유명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의 매체를 통하여 상품등을 추천한 대가로 사업자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추천 내용과 함께 사업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해당조문

제2조(정의) 6. "인터넷 유명인"이란 인터넷,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등의 매체를 통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질 있거나 소비자의 소비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의2(인터넷 유명인의 고지의무) ① 인터넷 유명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의 매체를 통하여 상품등을 추천한 대가로 사업자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추천 내용과 함께 사업자등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알려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으로부터 받은 금품의 가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미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천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과태료) ④ 인터넷 유명인이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사업자등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검토의견

- 헌법 제75조에서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 함은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로 규정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누구라도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급부행정법규의 경우보다 처벌법규나 조세법규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임(헌재 2011. 12. 29. 2010헌바385 등 참조)
-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 유명인이 안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사업자등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므로,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임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아이돌봄비의 결격사유에 「아동복지법, 제기조제」항의 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추가하고,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를 형을 선고받은 자로 확대하여, 아이돌봄비 자격 취소사유에 아동학대관련범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자를 추가함

주요쟁점

-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결격사유의 확대가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과 관련하여 과잉금지원칙, 무죄추정원칙 등에 반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의견

가. 결격사유 확대 관련

- 아동학대관련범죄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 결격사유 확대
 - 개정안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서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그 형이 확정된 자로 결격사유를 확대하고자 하는데, 유죄로 인정되어 형을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범죄의 경중과 그와 연관된 재범의 위험성을 따지지 않고 영구적으로 아이돌봄비로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비추어 적절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 헌법재판소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게 일률적으로 형의 집행종료날로부터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개설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시(2013. 7. 25.자 2012헌마72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관련된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로 10년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동안 취업을 제한하도록 하는 경명을 선고하도록 개정됨
- 기소유예 처분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결격사유 확대
 -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와 불기소처분의 하나로, 피의사실이 인정되거나 법원의 연행, 상행, 저능과 원경 등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하는 처분임
 - * 참고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검사가 아동학대범죄 피의사실이 인정되는 자에게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상당, 치료 또는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한편, 헌법 제27조제4항은 무죄추정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데, 이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피의자나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하고, 불이익을 부과하더라도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으로,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일반 법생활 영역에서의 기본권 제한에도 적용됨(헌법재판소 2015. 2. 26. 자. 2012헌바435 결정)
- 불기소 처분의 하나인 기소유예 처분을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경우,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을 사실상 유죄로 취급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 자격취소사유 추가 관련

- 법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아동보호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자격취소사유에 아동학대관련범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결격사유 추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일률적으로 자격을 취소하게 하는 것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을 사실상 유죄로 취급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형정처분 취소사유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를 규정한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편, 현행법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자격취소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결격사유는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사유임과 동시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로 보아야 하므로,
- 해석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개정안과 같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만을 결격사유와 자격취소사유에 모두 기재하는 경우, 다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와 달리 이 경우에만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오만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동일한 내용을 결격사유에도 추가하고 있는 개정안의 경우 자격취소사유에 이를 다시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입법론적으로는, 자격취소사유에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자격이 취소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법체계상 모순·불합리·타당성 검토

새로운 입법은 기존의 법 질서 전체와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헌법의 원리를 깨닫는 법의 일반원칙(신뢰성실, 권리남용금지, 불법행위금지 등)과 「민법」 등 일반법의 기본제도(행위능력, 법률행위, 기간, 소멸시효 등)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법률안이 체계적·통일적으로 운용되도록 법률안 내에서도 모순·지속되는 것이 없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하나의 법률 내에서는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여야 한다. 이미 일반화된 용어로서 정착된 용어나 기존의 다른 법령상의 확립된 용어와 같은 의미라면 그대로 동일한 용어를 사용·유지하여야 하며, 법률안이 목적하는 바의 의미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규정하여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해석상 논란의 여지를 최대한 제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법률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법체계적 정합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령입안 심사기준」, 기존의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입법기술적 측면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검토하여야 한다.



Memo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

- 지역사랑상품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가맹점에 이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 정의(안 제2조)
-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안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안 제7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안 제8조)
-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가 요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소된 지역사랑상품권을 재발급 하도록 함(안 제12조)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의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5조)

검토의견

- (정의규정 관련) 제정안 제2조제3호에서는 “가맹점”을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개별가맹점”과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환전대행가맹점”으로 구분하고 있음
 - 즉, “가맹점”은 개별가맹점과 환전대행가맹점을 포괄하는 개념인데, 제정안 제2조제1호는 “가맹점”에 상환권을 제시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전대행가맹점에서도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오해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가맹점”을 “개별가맹점”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등록거부 관련)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략)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여 마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발으로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는데,
 - 제정안의 후지가 안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와 같이 규정하는 발문이 보다 바람직할 것임

- (등록취소 관련) 제정안은 등록거부사유 중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만을 등록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등록거부사유를 제외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인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등록거부사유를 모두 등록취소 사유로 규정하는 법안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제정안은 등록을 취소한 경우는 “이용자” 등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인 제11조는 “이용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용어를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추가적으로, 등록취소는 행정청이 부여한 권리·권한 자체를 박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전문 규정을 둘 필요가 없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상품권 재발급 관련) 인 제12조제1항은 제2항과 달리 “책임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훼손된 상품권의 재발급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고 이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인 제12조제1항과 제2항의 표현을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가지원 관련) 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등은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지방재정법” 제20조), 국가는 개별법에 규정이 없더라도 정책상 필요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으므로(“지방재정법” 제23조), 제정안에 국가의 지원을 명시할 실익이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다만, 상품권 활성화는 인구감소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도 있으므로, 이는 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도 필요할 것임.



Memo

▣ 법칙 검토

해당 법률안에 처벌 또는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거나 처벌 수준 또는 과태료 수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처벌 수준 또는 과태료 수준이 책임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형벌의 경우 법원의 양형판단권을 침해할 소지는 없는지, 구성요건의 명확성 원칙 등 죄형법정주의에 위배하지 않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해서는 법무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법칙 검토 사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개인정보 유출 등 복무의무를 위반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법칙을 강화함

검토의견

- 만 제33조제2항제3호의3 및 제89조의2제3호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제2호 및 제71조제5호에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상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 유출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나, 개정안과 같이 「병역법」에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유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에 따라 「병역법」이 적용될 것임.
 - 개인정보 유출 등의 행위에 대해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될 때 보다 현저히 낮은 형량의 규정이 적용되는데,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병역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복무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적용게 되는데, 양자 간에 현저한 법정형의 차이가 존재하는 문제도 발생함.
-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유출 등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처벌규정을 고려하여 개정안의 법정형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소방안전체험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

- 소방안전체험관 업무를 소방청장 소관으로 하고, 소방안전체험관의 설립을 촉진하여, 소방안전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임
 - 소방안전체험관을 국립·공립·사립 등 설치 주체에 따라 구분함
 - 국립소방안전체험관은 소방청장 소속으로 설립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안전체험관을 설립하려면 소방청장과 협의하도록 함
 - 국립소방안전체험관은 소방청장에게, 공립 및 사립소방안전체험관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

참고의견

1. 소방안전체험관의 업무 소관

- 제정안은 소방안전체험관 업무를 소방청장 소관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상의 행정안전부 소관 안전체험관 업무와 중복될 소지가 있으므로, 정부 내 업무 조정이 필요함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특례

- 안 제19조는 소방청장이 사립소방안전체험관의 설립 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건축 제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토계획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국토계획법 제7조에 따라 보전과 육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사립소방안전체험관을 보다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건축제한 등을 완화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을 지정한 취지, 다른 건축물과의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검토가 필요함
 - 「간척지의 농업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유사 입법례가 있으나 공유수면을 매립한 간척지는 효율적인 토지 활용을 위해 건축 제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동일하게 비교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음

3. 부담금 감면

- 단 제20조는 소방안전체결관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방소방안전체결관의 설립 계획을 승인받은 자에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부담금을 감면하면 다른 납부의무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므로 특정인 또는 특정집단에 대한 부담금 감면은 평등원칙에 비추어 한정된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함.
 - 헌법재판소는 부담금도 공헌납부의무를 부담하게 하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준하는 원칙에 구속되어야 하고(헌재 1998. 6. 25. 99헌바35), 조세감면의 우대조치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의 모기이기도 하여 가급적 억제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특히 정책목표달성에 필요한 경우에 그 면제혜택을 받는 자의 요건을 엄격히 하여 국가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헌재 1996. 6. 26. 93헌바2) 판시한 바 있음
- 따라서 「농지법」 제38조, 「초지법」 제23조 등에 규정된 감면사유, 감면대상과 비교하여 평평성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도 다른 법률에 따른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은 민간기업이 기업도시를 개발하기 있도록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게 한 법률이므로(같은 법 제3조) 개발규모, 부담금 감면 필요성에서 소방안전체결관과 동일하게 비교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고, 부담금 부과 근거 법률(「초지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6항)에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시설을 부담금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소방안전체결관과 부담금 감면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면, 부담금 감면기준은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부담금 부과요건과 유사하므로 부과 여부를 알기 쉽게 하고 다른 감면대상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가능하면 「농지법」 등 부담금 부과 근거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하 생략)

03 • 조세의 감면 여부

법률안에 소득세 등 조세감면으로 인하여 국가세입의 감소를 초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조세감면에 관한 사항은 개발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안에서 빈번히 등장하므로 각 소관부처에서는 해당 법률안에서 말하는 조세감면에 관한 사항이 정책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조세 감면은 유사한 범위의 납세의무자와의 관계에서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는 점에서 조세감면의 필요성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조세 감면을 위해서는 국세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지방세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야 하는 점에서 이들 법률을 소관하는 기획재정부 또는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Memo

청년기본법안

주요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
 - 국무총리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년 실태조사와 청년정책연구 등을 수행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청년정책으로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마련 향상, 청년창업의 지원, 청년 능력개발 지원, 청년 주거지원, 청년 복지증진, 청년 금융생활지원 등을 하도록 함

검토의견

-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조세 및 지방세특례를 정할 수 있는 법률을 한정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는 개별법 차원의 세제지원 근거 규정은 부과세·감면을 통합관리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 입법 취지에 배치되며, 조세지원 정책의 일관성·효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외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조세감면 조치를 규정하지 않는 이상 제정안에 따른 감면 규정은 혼시적 규정으로, 납세자가 조세감면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Memo

■ 정부조직의 신설·폐지·변경 여부

법률안에 정부조직을 신설하거나 기존 조직의 폐지 또는 변경을 가져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정부조직법」은 중앙행정조직의 설치·조직과 지위범위의 대강을 정한 법률로서 헌법에 설치 근거가 있는 감사원 등 헌법기관을 제외하고는 중앙행정조직을 일괄하여 통합하여 규정하므로 중앙행정조직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조직을 법률로 신설하는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마찬가지로 기존 조직의 폐지 또는 변경을 가져오는 사항도 그것이 법률사항일 때에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여법에 관한 사항을 개별법에서 정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기존의 정부 부처에 소속기관을 법률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속기관의 설치에 법률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조례(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입법과적을 달성할 수 없는지, 개별법에 소속기관 설치의 근거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정부 부처에 위원회 조직을 신설하는 법률안의 경우에는 기존에 설치된 위원회를 활용할 수 없는지 등 위원회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참조, 「정부조직법」 상 단순한 직무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에 대통령령으로도 가능한 점에서 위원회의 설계를 고려하여 위원회 설치를 위하여 법률 개정이 필요한지도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 합의제 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위원의 자격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은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한다.

■ 인원의 소요 여부

개별 법률안에 인력의 소요가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주요 검토사항이다. 통상적으로 조직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인력의 출가가 수반되므로 조직과 인력에 관한 사항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이 조직 및 인력과 관련 있는지는 법률안에 첨부되어 있는 바를추계서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공무원의 소속을 변경하는 등 공무원의 신분과 관련한 법률안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에 경과조직 등을 둘 필요가 있다. 조직 및 인력의 변경과 관련한 사항은 관련부처인 행정안전부 및 인사혁신처의 의견을 반드시 듣고 협의를 하여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

- 교육정책의 기본방향과 중장기 정책목표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도록 함

검토의견

- 안 제3조제1항에서 교육정책의 기본방향과 중장기 정책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를 둔다고만 규정하여 그 소속이 불분명함
- 헌법에서 국가 권한 행사 주체를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배분하고 있으므로 국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로 설치하는 기관은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 어느 하나에 소속되는 것이 바람직함
- 헌법재판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행정부 소속이라고 명시되지 않았고 업무의 독립성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음(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9헌라67가)
-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인 교육부가 수행하던 정책 수립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므로 안 제14조제2항 정부 내 행정위원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행정부 소속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 소속인지, 국무총리 소속인지 등에 따라 중립성의 주체가 상이하므로 제정안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소속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23) 청구인은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고 타 부처와의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타청구인의 명목 없이 행정 각부를 통괄하는 국무총리나 피청구인에 의해 운영이 해결될 수 있고, 청구인의 대표자가 국무회의에 출석해 국무위원들과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서도 청구인이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4) 제14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육발전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정책목표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가 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이하 생략)

재활용물수거노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

- 종합계획 수립 및 재활용물수거노인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재활용물수거노인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

검토의견

- **(위원회 설치의 요건)** 행정기관위임하법 제2조에 의하면 심의·자문위원회의 경우 ①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고, ②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 제정안의 입법목적 또는 취지가 전문지식을 갖춘 위원회의 자문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안인지, 행정기관의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사안인지에 대한 검토 필요
- **(유사·동북 위원회)** 현행 법령상 재활용물수거노인 지원을 포함하여 노인복지정책을 전담하여 심의·자문하는 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찾아보기 어려움.
 - 제정안이 지원대상을 노인 중 "재활용물수거노인"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다른 사회복지 영역 또는 노인복지 영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정책을 심리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제정안의 주된 내용이 사회보장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논의와 연계되어 있고,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주기와도 연계될 필요가 있다는 점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별도의 심의·자문을 위한 위원회 설치보다는 전방적인 사회보장 또는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전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두는 방안도 검토할 여지가 있음
- **(위원회의 성격)** 제정안이 재활용물수거노인지원위원회에서 재활용물수거노인 지원 종합계획 및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해당 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기구로서의 성격이 강하므로 반드시 법률에 근거규정을 둘 필요가 없음.
 - 다만, 종합계획 및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 등 위원회 심의사항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여 위원회 설치근거를 반드시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관광숙박업자는 관광숙박 요금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사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검토의견

- 헌법 제15조제1항에서 직업의 자유와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규정하면서, 제37조제2항²⁵⁾과 제119조제2항²⁶⁾에서 기본권 제한과 경제에 관한 규제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음.
- 직업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 내지 직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그가 선택한 직업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포함하는 개념임.
- 직업의 자유는 영업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포함하고, 경쟁의 자유는 기본권의 주체가 직업의 자유를 실제로 행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결과이므로 당연히 직업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고,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국가의 간섭이나 방해로 받지 않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함.
- 기본권인 직업행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그 침해가 공익상의 충분한 이유로 정당화되고 또한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함.
- 즉 입법자가 선택한 수단이 의도하는 입법목적에 달성하기에 적당해야 하고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꼭 필요로 효율적인 수단 중에서 기본권을 되도록 적게 침해하는 수단을 사용하여야 하며, 침해의 정도와 공익의 비중을 전반적으로 비교衡量하여 입법사이에 적절한 비례관계가 이루어져야 함.
- 관광숙박업도 숙박업이므로 「공중위생관리법」이 적용됨²⁷⁾.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라목(1)에서 숙박영업자는 잠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각각 게시하여야 하며, 게시된 숙박요금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반 시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할 수 있으므로 숙박요금 게시 및 준수 의무는 이미 도입되어 있음.
- 숙박요금 게시 및 준수 의무 외에 신고의무까지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입법례를 살펴보면 요금 안가·숨김을 받도록 하고 있는 입법례, 요금 신고를 받도록 하고 있도록 하는 입법례, 게시 의무만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가 있음.

25)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26)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협력을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규제	법률	요금
인가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	전기요금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제2항	기간통신사업자 서비스 요금
	「항공사업법」 제14조	국제항공노선의 운임 및 요금
	「할인운송사업법」 제10조제1항	할인하역사업 운임 및 요금
승인	「수도법」 제38조	수도요금
신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제1항	기간통신사업자 서비스 요금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	집단에너지 요금
	「할인운송사업법」 제10조제2항	할인하역사업 운임 및 요금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마리나항만 이용요금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광고판매대행업무 요금 기준
게시	「무선 및 도선 사업법」 제35조	송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산후조리원 서비스 요금체계

- 요금 인가나 신고를 받도록 하는 입법에는 대체로 독점성이 강하여 자유롭게 요금을 결정하게 하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위험이 높은 분야임
- 따라서 개정인과 같이 관공숙박업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요금 게시 및 준수 의무 외에 신고의무를 도입할 정도로 독점성이 강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위험이 높은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에 숙박요금 게시 및 준수 의무와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규정되어 있는데, 별도로 「관광진흥법」에서 동일한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7) 제37조 ①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8) 제119조 ①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29) 헌법재판소 1996. 8. 29. 선고, 94헌마113 결정, 1997. 4. 24. 선고, 95헌마273 결정, 1997. 10. 30. 선고, 96헌마109 결정

30) 헌법재판소 1996. 12. 20. 선고 96헌가18 결정.

3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 3. 31., 2016. 2. 3.)

1. "공중위생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탕업·여유업·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기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营业을 말한다. 다만, 눈에 띄게 소재하는 민박등 대응영업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입법정책상 부처 간 이견 유무

법률안에 들 이설의 부·처·청과 관계되는 정책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각 부·처·청이 극히를 상대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도록 정부의 통일된 의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법률안이 발의되면 소관부처는 그 법률안에 다른 부처와 관련된 정책적 사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다음으로 그 정책적 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처의 입장을 정리한 후 관련부처와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 경쟁제한적 사항 유무

법률안에 사업자의 가격·거래조건 결정, 시장진입 또는 사업활동의 제한,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등 경쟁제한적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검토하여야 한다. 우리 헌법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적 경제질서를 추구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률안에 사업자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약하는 내용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헌법의 가치에 맞추어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해당 법률안에 경쟁제한적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의하여야 한다.

▣ 그 밖에 집행상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

법률안에 실제 집행이 어려운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법률안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규제가 비현실적일 경우 집행할 남국이나 국민 입장에서 불과된 법안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훼손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소관부처에서는 해당 법률안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하위법령의 준비를 위한 유예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부처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법안에서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에 대한 벌칙, 행정상 제재 등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부처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감염병관리위원회가 감염병의 국내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어 외국인 입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것을 의결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입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손실보상 대상자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금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손실보상액의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검토의견

- 안 제50조의2에서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외국인 입국금지를 요청할 것을 의결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입국금지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의 입국금지 요청대상은 「감역법」 제2조제7호의 검역관리지역으로부터 국내로 입국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이 해당됨
 - 최근 개정된 「감역법」(법률 제17068호, 2020. 3. 4. 일부개정) 제24조에서는 출입국 금지 또는 철지 요청의 대상자를 중천보다 확대하여 「감역관리지역등에서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의 입국금지 요청대상자는 「감역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데, 「감역법」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 법"이라 함)의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동일한 입국금지대상자에 대하여 「감역법」 상 입국금지요청 필요성(공중보건상 큰 위험을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과 이 법 상 입국금지요청필요성(감염병의 국내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는 경우)이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입법필요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함
 - 외국인 입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24611호)이 방외(20.2.13) 되었으나, 국회 심사과정(20.2.19.)에서 감역법과의 중복으로 의결되지 못할
 - 또한, 앞 법에서 모두 규정을 둘 경우, 실제로 어느 법에 근거한 절차에 따라 입국금지가 이루어 지는지 집행상 혼용을 줄 여지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감역법」과 별도로 이 법에서 외국인입국금지요청 근거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입국금지요청전에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며, 위원회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위차이는 공감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은 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입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회의 사무, 인력 구성 등을 고려할 때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측면에서 전문성이 있는 위원회가, 입국 중단 아니라 정치, 경제, 외교, 사회적 측면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두루 고려해야 할 외국인입국금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

나. 자금의 긴급지원

- 현행 제70조에서는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양, 해제 등의 방역 조치 및 소득 조치 등으로 발생한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70조의5에 따르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금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손실보상 대상자에게 손실보상액의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긴급지원 자금의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우선 지급'을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 상 명확하지 않음
 - 긴급지원이라는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효(實效)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현행법상 필수 절차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하도록 하려는 경우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의 문구를 추가 하는 방안 또는 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법률에서 직접 명확히 기술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해 볼 수 있음



Memo



2020 의원입법
지원업무 편람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 Energy



5 장

의원입법지원시스템의 활용

1. 의원입법 지원 업무 소개
2. 의원입법지원시스템 사용자 준비사항
3. 업체처음 매뉴얼
4. 소관부처용 매뉴얼
5. 관계부처용 매뉴얼
6. 그 밖의 활용 정보

**2020 의원입법
지원업무 편람**

How to use the law (application)



의원입법 지원 업무 소개



01 • 의원입법의 심사 절차: 법제업무 운영규정 §11의2, §12조, §12의2

국회	법률안 발의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의결
법제처	회의현황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의사실 및 부처 협의사항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 심의현황 파악 • 법률안 관련 자료 수집 • 법리적 검토필요사항 통보 • 심층적 의견 제시 • 부처 간 이견·법안 조사·환류 및 이견조정 촉진 •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개최 및 정부 의견 청취 	본회의 의사 일정 및 결과 모니터링
소관 부처	소관 의원입법 동향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부처 의견 청취 • 관련부처 의견 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수렴 결과를 법제처 및 상임위 전달 • 관련부처 의견에 대한 소관부처 의견 회신 • 관련부처와 이견내용 협의·조정 	동일권 정부의 의견통 반영
관련 부처	다른 부처 소관 의원입법 중 관련 사항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부처에 의견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 부처와 이견사항 협의 • 제3기관에 이견 조정 요청 	동일권 정부외권 경합에 대응

02 • 법제처의 의원입법 지원

가. 개관

의원입법 모니터링	의원발의 법률안		부처협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회 심의현황 파악 국회 세미나 등 자료 수집 법안 관련 참고자료 수집 일일성황보고서 작성 	1차	발의사실 및 부처협의 필요사항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처 간 이견법안 조사·환류 및 이견 조정 촉진 장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의 개최를 통한 정부의견 청취
	2차	법리적 검토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제시	
	3차	심층적 의견제시	

나. 주요업무 소개

주요업무	소개	대상
발의사실 및 부처협의 필요사항 통보	원활한 부처협의 진행과 신속한 대응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원발의 법률안이 상임위원회 등에 회부된 경우 법안의 내용이 다른 부처와 관련이 있는 경우
법리적 검토 필요사항 의견제시	소관부처가 법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원발의 법률안이 상임위원회 등에 회부된 경우 법안의 내용이 다른 부처와 관련이 있는 경우
심층적 의견제시	법제처의 법리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입법심사에 준하는 상세한 의견을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관부처에서 대안을 마련하는 경우 관계 부처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관부처의 법제이견 심찰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그 밖의 법리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장부입법정책(실무) 협의회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여 국회에 제출할 정부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의회) 법제처장이 의장이 되어, 소관기관 및 관계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위원으로 민간법로 위원을 구성 (장부협의회) 민간 법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영한 주관기관·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 국무조정실, 관계기관 및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

03 • 의원입법지원시스템 소개

▣ 개요

의원입법지원시스템은 의원입법의 발의사실·통보, 법제처 검토의견의 통보, 각 부처의 부처별의 결과 등록 등 의원입법과 관련한 정부 내 업무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안과 관련하여 국회, 소관부처, 관련부처, 법제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정부의 업무용 시스템이다.

법제처가 의원입법지원시스템을 구축한 목적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icms.assembly.go.kr/bill)과 연동하여 의원입법의 발의 및 국회 심의 진행현황을 신속히 파악함으로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종전에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의원입법 관련 공식적·비공식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함으로써 효과적인 의원입법 대응·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입법지원센터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의안 자료를 1일 3회 제공 받고 있다. “의원입법 지원” 안전망 또는 국회입법지원에서 보이는 법안의 상세 조회 페이지에서는 국회의 심의 진행 현황, 소관 상임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서, 해당 법인과 관련 있는 관계부처 및 협의 필요 조문 등을 볼 수 있다.

또한 법제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일부 법안의 경우 법제처의 검토의견서도 조회할 수 있다. 그 밖에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과 관련된 언론자료 등의 정보도 열람할 수 있다.

다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받아 오는 자료가 실시간이 아니므로 시점 차이에 따라 의안정보 시스템에 있는 의안이 없는 경우도 있고, 의안원문 등의 문서자료가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의안 원문 등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망에서 의안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직접 확인하거나, 정부입법지원센터 고객센터(1577-91788)로 문의하여야 한다.

▣ 구성 및 업무 흐름

의원입법지원시스템의 전체 메뉴는 크게

- 1) 본인이나 소속된 부서와 관련된 의원입법안을 조회하고 해당 의안에 대한 심사 현황, 협의필요 사항 및 관계부처 유무, 국회 소관위 검토보고서, 법제처 검토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는 의원 입법 검토

2) 발의된 전체 의원입법안을 조회하고 해당 의안에 대한 심사 현황, 협의필요사항 및 관계부처 유무, 국회 소관위 검토보고서, 법제처 검토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국회 의사일정 현황까지 파악할 수 있는 국회입법현황

3) 법제처 내부 관계자가 의원입법안을 조회하고 기타 앞에서 언급한 기능을 관료할 수 있는 법제처 현황-관리(법제처에서만 사용)로 나눌 수 있다.

의원입법지원시스템의 사용자는 법제처와 각 중앙부처로 나눌 수 있는데, 법제처 직원이 사용하는 시스템과 각 부처 담당자가 사용하는 시스템은 약간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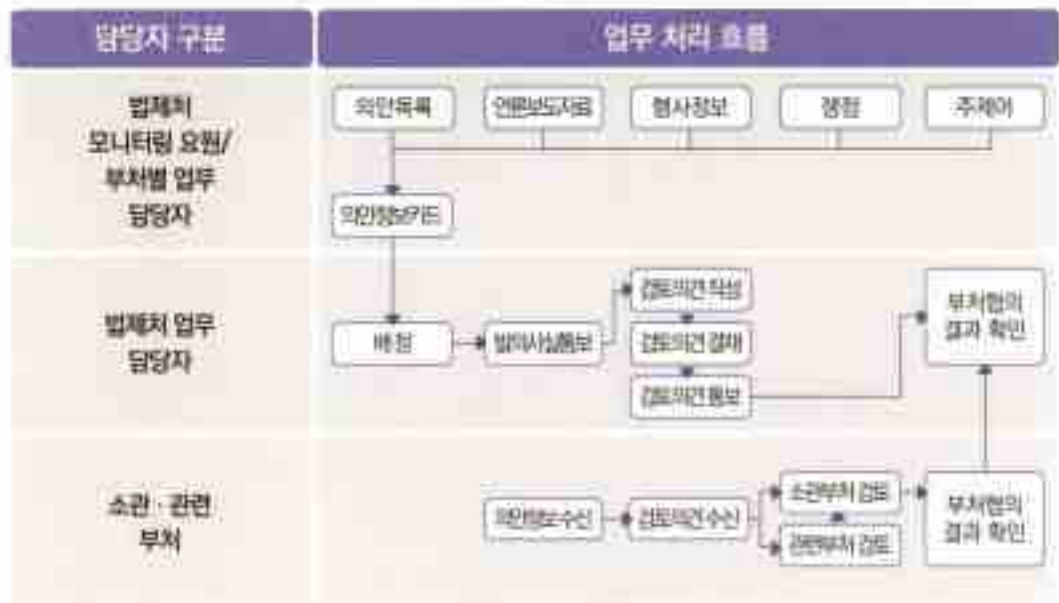
의원입법지원시스템(부처 사용) 메뉴 구조도



의원입법지원시스템(법제처 사용) 메뉴 구조도



의원입법지원 업무 처리 흐름도



2

의원입법지원시스템 사용자 준비사항



01 • 시스템 이용 대상

정부입법지원센터는 법령입법시스템 사용자라면 누구나 사용 가능하다. 주로 각 부처 법무담당 부서 직원이 시스템 이용 대상자인데, 각 부처 법무담당관 직원은 법제처에서 시스템을 통해 동보하는 법률안 발의사실 수신 후 자기부처 내에서 해당 법률을 담당할 소관 부서를 지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다만 조직, 예산과 관련되는 법안은 협의 필요성이 더 높으므로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의 법무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조직기획과, 예산총괄과도 시스템 상시 이용대상자에 해당한다.

02 • 시스템 접속

내부 업무망 주소창에 www.lawmaking.go.kr(정부입법지원센터)을 입력하여 정부입법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03 + 회원가입 및 로그인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 아래의 절차에 따라 가입한다.



▣ 회원정보 입력창

회원정보 입력 창에서 '필수'된 항목은 반드시 입력하여야 한다.

■ 회원정보 입력 (* 또는 필수입력 사항입니다.) [취소] [저장]

기본 정보	사용자 아이디 (이메일 형식)	* 알파벳과 숫자로 구성된 7자리 이상을 필수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예) abc123456789		
	성명	이름		
	성별	남성 <input type="checkbox"/> 여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생년월일	* 19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입력가능합니다. 예) 19800101		
	주민번호	* 14자리 주민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예) 12345678901234		
	주민번호 뒷자리			
주소 및 연락처	주소	* 14자리 이상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예)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전화번호	지역번호 (국번)	전화번호 (국번)	전화번호 (국번)
	휴대폰 번호	휴대폰 번호	휴대폰 번호	휴대폰 번호
	팩스 번호	* 14자리 이상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예) 02-1234-5678		
	우편번호			
	홈페이지 주소	홈페이지 주소	홈페이지 주소	홈페이지 주소
사용자 인증	인증서 정보	* 인증서 정보 입력 시 인증서 정보 입력을 필수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인증서 확인	* 인증서 정보 입력 시 인증서 확인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사용자 보장	보장업체 구분	<input type="checkbox"/> 본인보장		
	보장업체명	보장업체명	보장업체명	보장업체명

[취소] [저장]

* 사용자 아이디는 반드시 형장망 이메일 주소 형식(@korea.kr)이어야 한다.

* '온나라 사용자 확인'을 클릭하여 온나라 사용자 ID를 인증 받는다.

- * '온나라 사용자 확인' 시 현재 소속기관- 부서까지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 * '아이디인증 요청' 버튼을 클릭하면, 인증에 성공하였다는 메시지와 함께 '온나라 시스템 아이디 사용' 버튼이 생성된다.



- * * 표시된 필수 항목을 입력한다. 비밀번호는 영문, 숫자, 기호 모두를 포함하여 8자 이상으로 입력한다.

* GPI 인증서를 등록한다 (비등록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가능)



* 인증서를 선택한 후,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인증서를 등록한다. 모든 항목을 입력했으면 저장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한다.

로그인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한 후, 상단의 '의원입법 지원'을 클릭하여 의원입법지원시스템사용을 시작한다.

04 • 사용자정보 현행화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는 발의된 법안과 관련있는 부서를 기준으로 해당 부서원 모두에게 의원 입법 심의 변동사항을 시스템상 자동으로 문자로 알리는 3단계 불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등록된 개인정보(부서명)가 정확하지 않아 담당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문자가 발송 되는 경우가 많으니 부서 이동 등 정보에 변경이 생길 경우 가입정보를 주기적으로 현행화 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변경 시 사용자 설정에서 휴대폰 문자 수신 여부를 체크하여야 알림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 3단계 불보 해당 법안의 발의 단계뿐만 아니라 상임위 상정, 상임위 의결 시 시스템에 등록된 법안 담당자가 알 수 있도록 sms와 e-mail을 통해 공지하는 서비스

■ 담당자 정보 변경 방법





01 • 시스템 접속

법제처 사용자는 법제포털시스템 로그인 후 우측의 '시스템 바로가기'를 통해 정부입법지원 센터로 별도의 로그인 없이 곧바로 접속할 수 있다.

정부입법지원센터에 접속하여 보이는 메뉴 중 '의원입법 지원'을 클릭한다.

The screenshot shows the '법제포털시스템' (Legislation Portal System) interface. At the top, there is a search bar and navigation tabs for '홈', '입법', '법제', and '지원'. Below this, there are several columns of service links. A red box highlights the '의원입법지원' (Legislative Support) link in the right-hand column of the main content area.

02 • 의원 법률안 검토

의원입법 링크 부분은 크게 네 개의 메뉴 즉, ① 안전함, ② 안전함(관계기관), ③ 철저함, ④ 환요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원입법 주의

- 안전성(관계기관)
- 안전성
- 철저성

의원입법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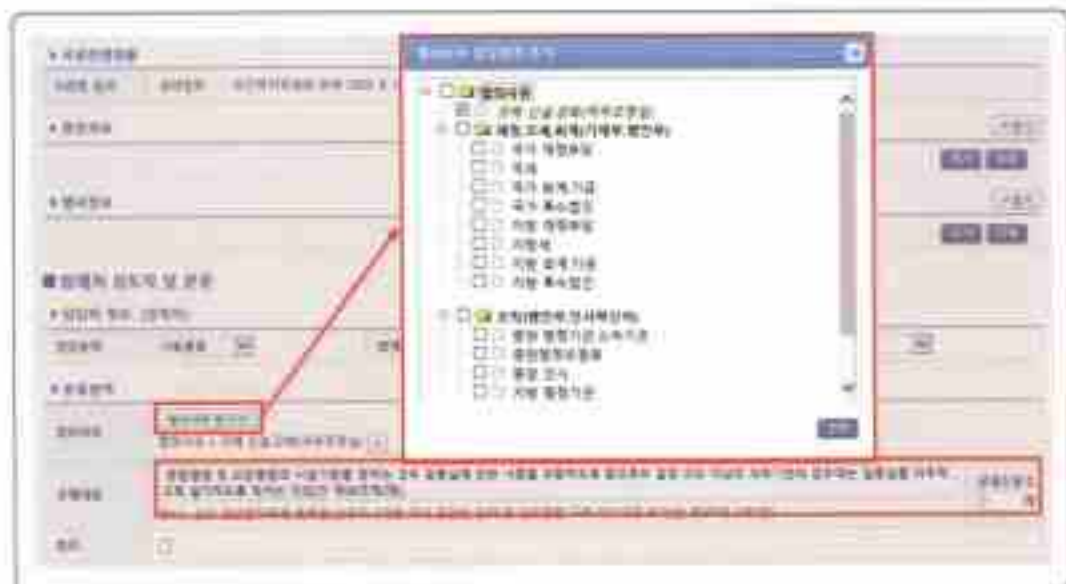
구분	가능 설명
안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일, 제안번호, 제안일자 등 다양한 관계기관을 이용한 의원입법에 대한 안내 • 로그인하기 위한 부가기 소문문자로 지정한 안전확인 검색용 • 부가의 입부입법부서명은 해당부서의 담당자를 지정 • 부가의 담당자는 입부일자 및 부가일자 내역을 등록
안전성(관계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일, 제안번호, 제안일자 등 다양한 관계기관을 이용한 의원입법에 대한 안내 • 로그인하기 위한 부가기 관계기관으로 지정한 안전확인 검색용 • 부가의 입부입법부서명은 해당부서의 담당자를 지정 • 부가의 담당자는 입부일자 및 부가일자 내역을 등록
철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부입법일자, 권역의 내부결정 기록 및 전산화 연계 기능별 기록에 대한 안내 • 로그인하기 불대행이 될 입법승인 기록 (입력 불성실)의 시에는 기록에서 삭제됨 • 입부일자, 입부번호, 입법승인/입법일자, 입법일자 및 기록 검색
환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결정, 입부입법일자, 입법승인 등 안전확인 안내 • 입법승인 내역검색 취소, 입부입고, 입법승인 취소 할 수 있음

▣ 발의사실 정보

안전이 개정되면 법제처 담당자는 해당 안전의 발의사실을 소관부처 및 관계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발의사실 통보는 ① 협의사유 지정, ② 관계부처 지정, ③ 형의 필요 조문 특정, ④ 개정 정보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 협의사유 지정

각각의 법률안을 클릭하여 들어가서 우측 상단의 '수정' 버튼을 누른 후, 기본정보 분류항목에서 '협의사유 추가' 버튼을 누르고, 소관부처가 관계부처와 왜 협의를 해야 하는지 '협의사유'를 체크한다.



※ 의원입법 검토 > 안전항 > 법안 상세 화면 > 수정 화면 > 협의사유 추가

■ 안전 검토 > 간단검토, 심층검토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간단검토'의 경우는 수정버튼을 눌러 의견정보 > 법제처 의견란에 협의 필요사항 검토서준 올리면 되는데 방법은 찾아보기 버튼을 눌러 한글 파일을 첨부하는 방법과 자동작성 버튼을 눌러 불러오는 방식에 직접 작성하는 방법이 있다.

'심층검토'의 경우는 소관부처의 요청이나 법제처 내부의 판단으로 별리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성하는데 심층 검토서도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의견정보 > 심층검토(법제처) 항목에 올리면 된다.

★ 의원입법 검토 > 안전합 > 법안 상세 화면 > 수정하면 > 간단 검토 또는 심층 검토 작성

검토서 파일을 첨부하거나 작성했으면 화면 우측 맨 하단의 저장버튼을 누르고 수정화면에서 나와 발급 완료한 검토서 파일 열람 의견통보 버튼을 누르고 활성화되는 창의 메모결재 또는 온나라 결재 절차를 진행해 담당 법제관의 결재를 받으면 해당 검토서가 소관부처 및 관계부처 담당자에게 통보 된다.



★ 의원입법 검토 > 안전함 > 법안 상세 화면 > 간단 검토 또는 심층 검토 결재 진행

① 안전함(관계기관)

법제처 입장에서 안전함(관계기관)은 법제처가 관계부처로 선택되어진 안전을 말한다. 입법안 내용에 법령 정비가 포함되는 경우 정도가 법제처가 관계부처로 선택될 수 있겠다.

② 결재함

*의원입법 검토> 결재함*에서는 법제처 안전 담당자 또는 법제관의 메모결재, 전자결재(온나라 기관), 통보현황 목록을 조회할 수 있다.

결재 권한이 있는 사람(법제관)의 경우 결재할 의원입법 안전 목록이 조회되고 안전명을 클릭하여 결재 승인/반려를 할 수 있는데, 반려 시에는 반려사유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

또한, 정보현황 탭에서는 의원입법 시스템에서 소관부처 및 관계부처 담당자에게 문자 메시지와 메일 등의 방법으로 국회 입법상황을 통보한 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

④ 완료형

“의원입법 검토 > 완료형” 메뉴를 선택하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거나 대안반영 폐기, 철회, 수정가결된 안전의 목록을 볼 수 있다.

03 • 법제처 현황·관리

“법제처 현황·관리”에서는 의원입법의 안전 조회 및 통계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 회의결과 및 의원입법 관련 자료 관리도 이 메뉴에서 한다.

① 접수배정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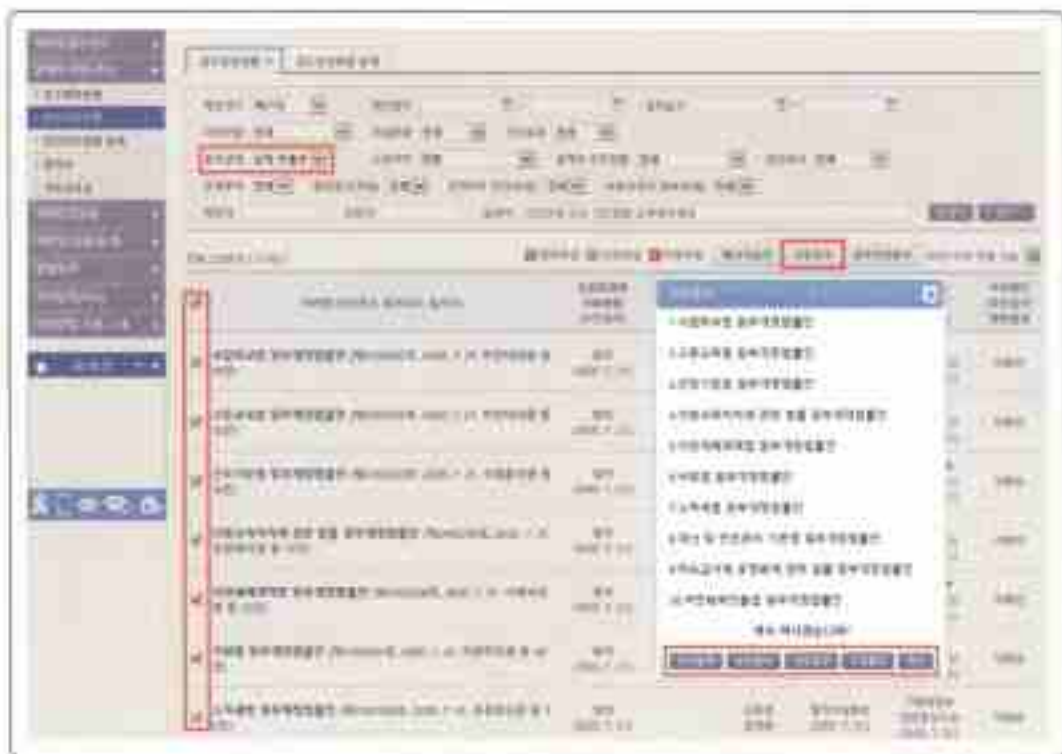
“법제처 현황·관리 > 접수배정현황” 메뉴를 선택하면 법제처 법제관/실무자, 소관부처/관련부처를 배정해야 할 의원입법의 목록을 조회할 수 있다. 현재는 법령 제정의 소속 부처를 기준으로 하여 담당분야/법제관/실무자/소관부처가 시스템 상으로 자동 배정되고 있다. 다만, 검토 불필요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유를 입력해야 한다.

자동으로 배정되지 않는 안전의 경우에는 해당 안전을 클릭하여 수정버튼을 눌러 수정화면에서 담당분야, 법제관, 실무자를 선택하여 배정할 수 있다.

② 안전검토현황

“법제처 현황관리 > 안전검토 현황”은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안전을 각종 검색 값으로 조회하는 기능과 3단계 통보(발의사실, 상임위 상정, 상임위 의결) 서비스 및 소관부처 또는 관계부처 담당자에게 메시지를 제공하는 기능이다.

3단계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은 정보상태 검색 값에서 정보상태) 상정 미동보 또는 의견 미동보 선택 후 조회되는 법안을 체크하고 우측 상단의 사실정보 버튼을 누른 후 활성화 되는 상태에서 상정정보 또는 의견정보를 누르면 된다.



※ 법제처 현황-관리 > 안전검토현황 > 4단계 정보

② 안전검토현황 통계

"법제처 현황-관리 > 안전검토현황 통계" 메뉴에서는 법제처에서 검토 중인 안전의 통계를 담당자 분야별, 연도별, 소관부처별 등 조건을 정해 조회할 수 있다.

③ 안전분류함, 안전분류관리

"법제처 현황관리 > 안전분류함" 메뉴에서는 안전 분류된 의안목록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안전명을 클릭하여 안전상세 화면을 볼 수 있고, 대상을 체크하여 '일괄안전분류'를 할 수도 있다. 또한 "법제처 현황관리 > 안전분류관리" 메뉴를 선택하면 안전분류관리 화면을 조회할 수 있다. 특별히 자주 쓰는 기능은 아니다.

⑥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법제처 현황·관리 >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메뉴에서는 각 개최된 협의회 결과를 조회할 수 있고 결과보고서를 내려 받을 수 있다. 결과 보고서는 총괄법제관실 사무가 회의등록 버튼을 누른 후 열린다.

회의명	회의일	회의장	주최부처	의제명
국무입법정책조정위원회(제1차) 회의	2019. 1. 17	국무회의관공청	국무총리	국무입법정책조정위원회(제1차) 회의
국무입법정책조정위원회(제2차) 회의	2019. 1. 24	국무회의관공청	국무총리	국무입법정책조정위원회(제2차) 회의
국무입법정책조정위원회(제3차) 회의	2019. 1. 31	국무회의관공청	국무총리	국무입법정책조정위원회(제3차) 회의
국무입법정책조정위원회(제4차) 회의	2019. 2. 7	국무회의관공청	국무총리	국무입법정책조정위원회(제4차) 회의
국무입법정책조정위원회(제5차) 회의	2019. 2. 14	국무회의관공청	국무총리	국무입법정책조정위원회(제5차) 회의
국무입법정책조정위원회(제6차) 회의	2019. 2. 21	국무회의관공청	국무총리	국무입법정책조정위원회(제6차) 회의
국무입법정책조정위원회(제7차) 회의	2019. 2. 28	국무회의관공청	국무총리	국무입법정책조정위원회(제7차) 회의
국무입법정책조정위원회(제8차) 회의	2019. 3. 7	국무회의관공청	국무총리	국무입법정책조정위원회(제8차) 회의
국무입법정책조정위원회(제9차) 회의	2019. 3. 14	국무회의관공청	국무총리	국무입법정책조정위원회(제9차) 회의
국무입법정책조정위원회(제10차) 회의	2019. 3. 21	국무회의관공청	국무총리	국무입법정책조정위원회(제10차) 회의

* 법제처 현황·관리 > 정부입법정책협의회 > 협의회 결과보고서 관리

⑦ 자료공유실

*법제처 현황·관리 > 자료공유실 메뉴에서는 부서원들과 공유할 만한 의원입법 업무 관련 주요 자료를 게시할 수 있다. 총괄법제관실 사무가 등록 버튼을 누른 후 열린다.

04 • 국회입법현황

① 국회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 국회입법현황” 메뉴에서는 의안발의안 전체 목록을 조회할 수 있고, 정부입법, 의원입법(위원회의안 제안 포함) 등 모든 안건을 구분하여 조회할 수 있다. 발의구분별(정부/의원/위원장)로 조회가 가능하여 회의일자 및 제안일자 등 다양한 검색조건을 이용하여 현황을 검색할 수 있다.

제안일자	제안번호	제안명	제안자	제안구분	제안일자	제안번호
2023.01.10	2023-001	국회입법현황	김영민	의원입법	2023.01.10	2023-001
2023.01.10	2023-002	국회입법현황	김영민	의원입법	2023.01.10	2023-002
2023.01.10	2023-003	국회입법현황	김영민	의원입법	2023.01.10	2023-003
2023.01.10	2023-004	국회입법현황	김영민	의원입법	2023.01.10	2023-004
2023.01.10	2023-005	국회입법현황	김영민	의원입법	2023.01.10	2023-005
2023.01.10	2023-006	국회입법현황	김영민	의원입법	2023.01.10	2023-006
2023.01.10	2023-007	국회입법현황	김영민	의원입법	2023.01.10	2023-007
2023.01.10	2023-008	국회입법현황	김영민	의원입법	2023.01.10	2023-008
2023.01.10	2023-009	국회입법현황	김영민	의원입법	2023.01.10	2023-009
2023.01.10	2023-010	국회입법현황	김영민	의원입법	2023.01.10	2023-010

또한 간혹 법률안에 대한 소관부처 및 법제처 담당자 지정이 누락되거나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의원 법률안 검토 > 안전함’에서 조회가 안 되거나 담당자가 아닌 직원의 안전함에 해당 법률안이 배정되어 있다. 이때에는 국회입법현황 메뉴 법안 상세페이지에서 수질 버튼을 눌러 기본정보/담당자정보 부분에서 담당자를 올바르게 지정하면 된다.

② 국회입법현황 통계

“국회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통계 메뉴에서는 국회에 계류된 정부입법 및 의원입법 법률안에 대한 통계를 조회할 수 있다. 제안대수별, 연도별, 위원회별, 소관부처별, 담당분야별, 관련 차르별로 검색할 수 있다.

05 • 자료실 (현황/통계)

① 안전현황/통계

“자료실(현황/통계) > 안전현황” 메뉴에서는 소관부처 또는 관련부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안전 현황/통계 피안발의안 목록을 조회할 수 있다.

의안명, 의안번호, 제안일자 등의 검색조건을 이용하여 다양하게 검색할 수 있으며 안전명을 클릭하면 안전 상세화면을 볼 수 있다.

“자료실(현황/통계) > 안전통계” 메뉴에서는 소관부처별/관련부처별 안전통계를 조회할 수 있다. 특별히 자주 쓰는 기능은 아니다.

② 언론보도 등

“자료실(현황/통계) > 언론보도 등” 메뉴에서는 의원입법안과 관련된 주요 언론보도 정보를 볼 수 있다.

06 • 통합검색

통합검색 메뉴를 선택하면 의원입법지원시스템에서 작성된 권토의견서, 심층보고서 및 의안 원문, 소관 상임위 심사보고서, 법사위 문서, 관련위 문서 파일을 한번에 검색할 수 있다.

07 • 질의답변/FAQ

“질의답변/FAQ > 질의답변” 메뉴에서는 사용자가 시스템 이용과 관련 기존 질의답변을 조회할 수 있다. “질의등록” 기능을 사용하여 새로운 질의 또는 시스템 관련 요청을 할 수 있다. 질의가 등록되면 법제처 담당자가 “답변쓰기” 기능을 사용하여 답변을 작성하고 저장할 수 있다.

“질의답변/FAQ > FAQ” 메뉴에서는 동일한 내용의 질의 빈도가 높은 질의답변이나 중요한 내용의 질의답변을 검색할 수 있다.

08 • 의원입법 지원 소개

“의원입법 지원 소개” 메뉴는 의원입법 심사단계별 소관부처, 관계부처, 법제처의 역할 소개 및 법제처 의원입법 지원업무의 개관과 주요업무를 표로 도식화하여 안내하고 있다.



01 • 법무담당부서의 확인 및 법안 검토 담당부서 지정

법제처에서 소관부처에 발의사실 통보시 해당 부처 법무담당부서에서는 의원입법 검토(안건환 메뉴에서 각 부처에 배정할 법안목록을 조회할 수 있다. 목록에서 해당 법안을 클릭하여 법안 상세페이지로 이동한다.

법률입법정보시스템

법안번호: 2019-0000

법안명: [검색]

법안번호	법안명	제정연도	제정월	제정일	제정시간	제정인
2019-0000	국회법률입법정보시스템 개선안(제21호) 국회사무총장 제정	2019	1	2019-01-01	10:00:00	국회사무총장
2019-0001	국회사무총장 업무처리절차 개선안(제22호) 국회사무총장 제정	2019	1	2019-01-01	10:00:00	국회사무총장
2019-0002	법제처(국회사무총장) 업무처리절차 개선안(제23호) 국회사무총장 제정	2019	1	2019-01-01	10:00:00	국회사무총장
2019-0003	법제처(국회사무총장) 업무처리절차 개선안(제24호) 국회사무총장 제정	2019	1	2019-01-01	10:00:00	국회사무총장
2019-0004	법제처(국회사무총장) 업무처리절차 개선안(제25호) 국회사무총장 제정	2019	1	2019-01-01	10:00:00	국회사무총장

해당 의안의 상세정보 페이지로 이동했다면 상단의 수정 버튼을 누른다. 법무담당부서 직원은 아래 [소관부처/관계부처 항목에서 해당 법안을 상세 담당할 부서를 지정 후 저장 버튼을 누르고 수정화면에서 나와 부서종보 버튼을 눌러 실제 법안을 담당할 담당자 인건항에 해당법안이 배정되게 한다.



※ 인건항 > 법안상세화면 > 수정화면 > 법안 담당 부서 지정

▶ 법정의 당사자 및 관계

주소: 05084-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 (삼성동) | 대표전화: 82-2-3456-7890

법정: 02000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서: 0000 형사부

▶ 소관부처/기관명/부처

소관부처: 법무부

연도	기간	구분	비고	비율	비율	비율
2019년	12월 31일	일반	법정	10%	20%	30%
2020년	12월 31일	일반	법정	10%	20%	30%
2021년	12월 31일	일반	법정	10%	20%	30%

▶ 소관부처/기관명/부처/연도/기간/구분/비고/비율/비율/비율

▶ 관할지역/법정/부처

연도	기간	구분	비고
2019년	12월 31일	일반	법정
2020년	12월 31일	일반	법정
2021년	12월 31일	일반	법정

▶ 관할지역/법정/부처/연도/기간/구분/비고/비율/비율/비율

▶ 행정/기관명

기관명: 서울고등지방법원

주소: 05084-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 (삼성동) | 대표전화: 82-2-3456-7890

주소: 02000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서: 0000 형사부

▶ 행정/기관명

기관명: 서울고등지방법원

주소: 05084-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 (삼성동) | 대표전화: 82-2-3456-7890

주소: 02000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서: 0000 형사부

▶ 행정/기관명

기관명: 서울고등지방법원

주소: 05084-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 (삼성동) | 대표전화: 82-2-3456-7890

주소: 02000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서: 0000 형사부

* 안건항 > 법안상세화면 > 법안 담당 부서로 홍보

Memo

☐ 소관 부처 담당 부서의 의견조회 실시

해당 법안의 부처 담당자가 안전행에서 법안을 확인 후 해당 법안이 의무협의대상이면 그 즉시 공문을 통한 관계부처 의견을 조회한다.

* 시스템을 통한 의견 조회는 현재 안 되고 있다. 현재 시스템은 의견 조회 결과를 등록하는 등 관리 차원의 기능만 있다.

☐ 관계부처가 지정되어 있고 관련부처 협의 필요사항에 협의 필요 조문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의무협의 대상이다. 만약 소관 부처에서 해당 법안이 의무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또는 해당 법안이 각 부처 소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즉시 **내기관정보에서** 법제처 담당자정보를 확인 후 법제처 담당자와 전화하여 의무협의 대상 여부에 대해 협의 후 협의 이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소관부처 검토지침 및 알림

법제처 : 법제처 (법안, 입법예고, 사무지, 입법예고, 제정안, 조약안) | **2024. 11. 29. 09:30**

대상 : 법제처 - 법안 - 사안 - 조약안/조약예고

문의 : 법안 -

☐ 소관부처/연계부처

* 부처 지정내역

부처	직명	부처담당자	연계부처명	연계부처명	연계부처명
소관부처	법제처/법안	부처담당자 김민준			
	연계부처				
	연계부처				

* 소관부처 연계부처 지정 후 연결되는 조약안/조약예고 대상 조약안/조약예고에 법제처 담당자가 우선 검토를 요청할 수 있음.

*** 연계부처 협의 결과내역**

부처	직명	협의 결과내역
소관부처	법제처/법안	
연계부처	연계부처	연계부처는 해당 조약안/조약예고 대상 조약안/조약예고에 대해 협의 후 4시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연계부처가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법제처가 협의대상 조약안/조약예고에 대해 협의할 수 있음. 연계부처가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법제처가 협의대상 조약안/조약예고에 대해 협의할 수 있음. 연계부처가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법제처가 협의대상 조약안/조약예고에 대해 협의할 수 있음.
연계부처	연계부처	연계부처는 해당 조약안/조약예고 대상 조약안/조약예고에 대해 협의 후 4시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연계부처가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법제처가 협의대상 조약안/조약예고에 대해 협의할 수 있음. 연계부처가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법제처가 협의대상 조약안/조약예고에 대해 협의할 수 있음.

☐ 부처 검토시간

* 전체적 시간

부처	직명	연계부처명	부처	연계부처명	2024. 11. 29
소관부처	<input checked="" type="checkbox"/>	법제처/법제처/법제처/법제처/법제처	연계부처	연계부처/연계부처/연계부처/연계부처	

연계부처

■ 소관 부처 담당 부서의 협의 결과 등록 등

소관부처는 자기부처 입장을 아래 보건복지부(예시) 의견 첨부바탕에 업로드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 결과는 부처별의 결과정보에 등재한다.

관련 정부자료가 있으면 첨부자료도 업로드하고 소관부처와 관계부처 간 법안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면 이점 여부에도 체크한다.

또한 협의기간이 10일 미만일 경우 협의 기간 등록 시 오른쪽에 협의기간 미준수 사유를 등록하는 빈칸이 생성되니 그 빈칸에 미준수 사유를 기재한다.

아울러 협의결과와 시스템 등재와는 별개로 관계부처에서 제시한 이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관계 부처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답변 하도록 한다.

'소관부처'에서 검토의견서가 작성되었을 때, 소관부처를 변경하면 검토의견서 등의 자료가 삭제된다. 이 경우에 고려행위로 문의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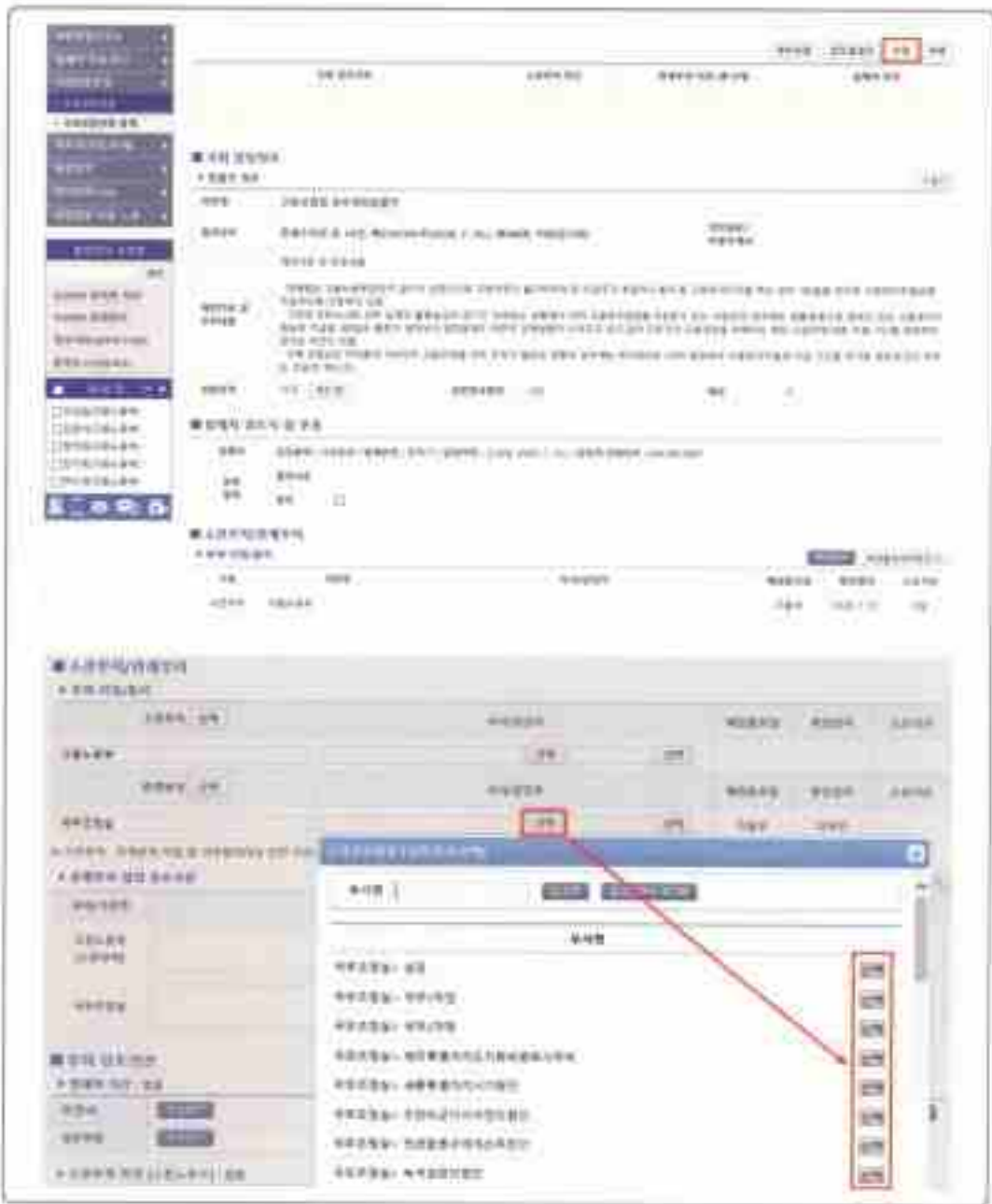
01 * 법무담당부서의 확인 및 법안 검토 담당부서 지정

법제처에서 관계부처로 발의사실 통보시 관계부처 법무담당부서에서는 의원입법 검토(안전함(관계기관) 메뉴에서 법안 담당 부서에 배정할 법안목록을 조회할 수 있다. 목록에서 해당 법안을 클릭하여 법안 상세페이지로 이동하게 된다.

The screenshot displays the 'Law Drafting System' (법안작성시스템) interface. The main content area shows a search bar and a list of bills. A table below lists bills with columns for '법안번호' (Bill Number), '법안명' (Bill Title), '상태' (Status), '입법예고일' (Legislation Announcement Date), '제정일' (Enactment Date), and '제정번호' (Enactment Number). The first row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법안번호	법안명	상태	입법예고일	제정일	제정번호
11	법제처에서 발의사실 통보한 법안	입법예고	2023. 1. 10.	2023. 1. 10.	2023. 1. 10.
12	국회입법예고된 법안	입법예고	2023. 1. 10.	2023. 1. 10.	2023. 1. 10.
13	국회입법예고된 법안	입법예고	2023. 1. 10.	2023. 1. 10.	2023. 1. 10.
14	국회입법예고된 법안	입법예고	2023. 1. 10.	2023. 1. 10.	2023. 1. 10.
15	국회입법예고된 법안	입법예고	2023. 1. 10.	2023. 1. 10.	2023. 1. 10.

해당 법안의 상세정보 페이지로 이동했다면 상단의 수정 버튼을 누른다. 법무담당부서는 아래
 ○ 소관부처/관계부처 항목에서 해당법안을 처리할 부서를 지정 후 저장 버튼을 누르고 수정화면
 에서 나와 부서정보 버튼을 눌러 실제 법안을 담당할 담당자 안전함에 해당법안이 배정되게 한다.



※ 안전함 > 법안상세화면 > 수정화면 > 법안 담당 부서 지정

02 - 관계부처 담당부서의 의견제시 및 등록

부서정보를 통해 해당 법안 발의사실을 전달받은 관계부처 담당자는 소관부처에서 공문을 통한 의견조회를 실시할 때 이견이 있을 시 공문 회신을 통해 소관부처 및 법제처에 의견 제출을 하고 그 의견을 **내 의견정보** 항목에서 자기 부처(예시 : 기획재정부) 의견 첨부파일 찾아보기 버튼을 누른 후 업로드 한다.

* 해당법안 상세페이지에서 수정버튼 누르면 나오는 화면에서 찾아보기 버튼 활성화

● 소관부처/관계부처

▲ 부처 의견/정보

소관부처 의견	부처담당자	제출일시	제출일자	소속기관	
공공부	김민	김민	2020.7.23	2020.7.24	14
문화체육관광부	부처담당자	부처담당자	제출일시	제출일자	소속기관
국회교육부	김민	김민	2020.7.23	2020.7.24	14

▲ 소관부처 - 관계부처 의견 및 의견정보를 관리 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의견제출 - 의견조회 - 의견제출 - 의견조회 - 의견제출 - 의견조회 순으로 접근 가능합니다. 의견제출 - 의견조회 순으로 접근 가능합니다.

▲ 의견정보의 관리 정보입니다.

부처의견정보 의견제출/조회

의견제출
의견조회

국회교육부 국회교육부 의견 정보들을 관리 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의견제출 - 의견조회 - 의견제출 - 의견조회 - 의견제출 - 의견조회 순으로 접근 가능합니다. 의견제출 - 의견조회 순으로 접근 가능합니다.

● 부처 의견/정보

▲ 의견제출 (20)

의견제출 의견제출

의견조회 의견조회

▲ 의견정보 (20)

의견정보 의견제출/조회 의견제출/조회

의견제출 의견제출 의견제출

의견조회 의견제출/조회 의견제출/조회

▲ 의견정보 (20)

의견정보 의견제출/조회 의견제출/조회

의견제출 의견제출 의견제출

의견조회 의견제출/조회 의견제출/조회



법안 목록에서 관해 기능에 관계부처 유무, 협의 결과 첨부 유무, 관련부처 의견 유무, 비용 추계서 첨부 유무 검색 기능을 신설하여 편리하게 필요한 법안을 검색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번호	법안명	제정연도	제정일	제정처	제정일	제정처	제정일
11	2019001	2019	01-14	국무총리	2019. 1. 14.	국무총리	2019. 1. 14.
12	2019002	2019	01-14	국무총리	2019. 1. 14.	국무총리	2019. 1. 14.
13	2019003	2019	01-14	국무총리	2019. 1. 14.	국무총리	2019. 1. 14.
14	2019004	2019	01-14	국무총리	2019. 1. 14.	국무총리	2019. 1. 14.
15	2019005	2019	01-14	국무총리	2019. 1. 14.	국무총리	2019. 1. 14.
16	2019006	2019	01-14	국무총리	2019. 1. 14.	국무총리	2019. 1. 14.
17	2019007	2019	01-14	국무총리	2019. 1. 14.	국무총리	2019. 1. 14.
18	2019008	2019	01-14	국무총리	2019. 1. 14.	국무총리	2019. 1. 14.
19	2019009	2019	01-14	국무총리	2019. 1. 14.	국무총리	2019. 1. 14.
20	2019010	2019	01-14	국무총리	2019. 1. 14.	국무총리	2019. 1. 14.

이 밖에도 메뉴의 질문답변/FAQ > 질문답변 메뉴를 선택하면 사용자가 질문한 모든 질문답변을 조회할 수 있다.

※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쓰기' 버튼을 사용하여 답변을 작성하고 저장할 수 있다.

※ '질의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새로운 질문을 할 수 있다.





2020 의원입법
지원업무 편람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6장

참고자료

1. 관련 법령
2. 의원입법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
3. 주요 홈페이지 안내

2020 의원입법 지원업무 편람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지원과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 2019. 11. 14] [대통령령 제30045호, 2019. 9. 1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입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국가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0. 5.]

제2조(정의) 이 영에서 "법령"이란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10. 5.]

제3조(입법활동의 기준) ① 모든 입법활동은 헌법과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입법에 관련된 정부기관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개정 2019. 8. 13.)

② 법제처장은 법령의 합헌성, 합법성 및 통일성 등을 도모하기 위해 법령의 입안과 심사에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보완·발전시켜야 한다. (신설 2019. 8. 13.)

[전문개정 2010. 10. 5.]

제2장 정부입법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입법계획의 총괄·조정) 법제처장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법령안의 입법계획을 총괄·조정한다.

제5조(부처입법계획의 수립) ① 법제처장은 매년 각 중앙행정기관이 해당 연도에 추진할 법령안 입법 계획의 작성방법, 제출 시기, 그 밖의 필요사항 등을 마련하여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공보하여야 한다.

② 법령안의 입법을 추진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법령안 추진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과 다른 정보 내용에 따라 해당 연도 주요 업무계획 등의 추진에 관한 법령안의 연수 및 제정 등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0. 31]

제6조(부처입법계획의 내용) ① 제5조제2항의 입법계획에는 법령안별로 입법의 필요성, 내용 고시, 추진 일정, 입법지 다른 예상되는 문제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다른 입법의 필요성여부 중적인 제도 운영도내, 위법 추진계획, 인법으로 밀어지는 효과와 관련 단체 등의 입법에 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추진일정에는 입안 시기, 논의 기반과의 협의 계획, 위법예고 및 광범의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 법제처 제출 시기, 국회 제출 시기 및 시행 예정일도 명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0. 31]

제7조(부처입법계획 수립 시유의사항) ① 법령안 추진기과의 같은 입법 제정등 수립함에 관계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조건을 도모록 하고, 입법적외 국회의 중부위 법령안 심의기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률안의 국회 제출은 인종 모두 인쇄되도록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법률안은 정기국회이서, 그 밖의 법률안은 임시국회이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전문개정 2010. 10. 31]

제8조(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등)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한 입법계획은 전년도 11월 30일까지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처에 소속된 기관의 장은 그 소속 부처의 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처장은 제1항의 다른 입법 제정등 별다른 지체 없이 이를 종합하여 해당 연도에 성취여부 추진등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입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다른 제출된 입법 제정등 입법 추진일정, 준비-심송되는 사항 등을 수정할 수 있다.

③ 법제처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그 내용을 권고로 고시 하고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0. 31]

제9조(정부입법계획의 시행 수정)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정부입법계획에 따라 입법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정부입법 계획의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1항 후단을 단용한다.

1. 정부입법계획이 포함된 법률의 입법 추진을 철회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정부입법계획이 포함되지 않은 법률의 입법을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정부입법계획상 입안과외 제출 예정 법률안문 정기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 90일정을 변경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법제처장은 제2항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의 수정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수정 요청에 따라 정부 입법계획을 수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입법계획의

수정 내용 중 법률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정기국회로 변경하거나 추가되는 법률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정기국회로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질과 협의하여 해당 법률안의 입법 추진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0. 5.]

제10조(정부입법 추진상황의 국무회의 보고 등) ① 법제처장은 정부입법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제9조제3항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수정한 경우에는 수정된 정부입법계획의 내용 또는 정부입법 추진상황을 국무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라 수정된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0. 5.]

제10조의2(중·장기 입법계획) 법제처장은 국가정책의 중·장기 예측가능성의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중·장기 입법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0. 5.]

제3장 입법과정에서의 협조

제11조(정부입법과정에서의 기관 간 협조)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령안의 입안 초기단계부터 관계 기관의 장(법령에 따른 협의대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법령안을 입안하였을 때에는 해당 법령안의 내용을 관계 기관의 장(법령에 따른 협의대상기관의 장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안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10. 10., 2017. 12. 29.)

1.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인사·재정 등에 관하여 규율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에게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3. 일정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
4. 국가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귀납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안으로서 법령안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친 법령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령안의 내용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시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1. 22.)

1.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국민생활과 직결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2. 그 밖에 법령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협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법령안 또는 대통령령안을 입안할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령안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재정소요비용에 관한 추계서

(補正案)로 과잉하여 조부회의 상정안이 철회하여야 한다.

㉠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법령안에 대한 의견표출기간은 10일 이상인 되어야 하며, 다만, 법령안은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등 특별한 사정으로부터 하여 역시회신기수를 10일 미만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조하여 역시회신기수를 승인 수 있다.

㉡ 법령안 국가기관의 심 및 법제처장은 법령안의 입안 조항사 및 중요 규임변과경 전만에 걸쳐 정본법령에 관한 협의, 의견 조성, 그 밖에 중부기관 등의 협조요인 조부법조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법령안 주부기관의 장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방지위원회, 통령법 제12조의2에 따른 분계기반정책평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자치분권 추진협의회를 요청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발의안을 보내면서 함께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회의원위원회, 통령법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특정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기간(행정절차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지 하는 경우 그 입법예고기간을 포함한다)이 끝나기 전까지 요청하는 법령안 주부기관의 장에게 동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2., 2013. 10. 10., 2017. 5. 8., 2019. 3. 12.)

[전문개정 2010. 10. 5.]

[처음개정 2014. 11. 15.]

제11조의2(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정부내 기관 간 연조) ㉠ 법제처장은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하 "의원발의법률안"이라 한다)이 국회 소위 상임위원회 등에 회부된 때에는 그 사실을 의원발의법률안 소관 중앙행정기관(이하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법령에 따른 협의대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은 여당 조차·규제 등과 관련하여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하여 추천하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관계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원정질 10일 이상의 기간은 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5. 5.)

㉢ 관계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중부기관의 용인이나 취합과 집행 등을 위하여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은 관계 기관의 장이 제시한 의견을 검토하여 관계 기관의 장의 의견은 제시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에 의견을 표시해야 하고, 15일 이내에 회신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회신 기한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8. 8. 25., 2019. 8. 13.)

㉣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은 통령의 제출을 위하여 정부의 승인된 의견 마련이 필요한 경우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회의회의 등의 회의 또는 조차조정심판위원회 등의 조차를 신속히 거쳐 국회의 제정 의원발의법률안의 심리가 직각 철회하여야 한다.

㉤ 법제처장은 의원발의법률안의 취합을 위하여 별리적 조항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반제시원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 15.]

[총선 제11조의2는 제11조의3으로 이동 (2014. 11. 19.)]

제11조의3(법령안에 대한 기관 간 이견의 해소)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부입법과정에서 법리적 이견으로 입법이 지연되거나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정부의견의 통일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그 사안을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 상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1., 2013. 10. 10., 2014. 11. 19.)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 사안 중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은 지체 없이 국무조정실장 등 관련조정기관에 통보하여 조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09. 6. 9.]

[제11조의2에서 이동 (2014. 11. 19.)]

제12조(법률안 국회 심의과정의 협조 등)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 및 법제처장은 법률안의 국회 심의 시 그 심의과정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상호 협조하여 정부의 입법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및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은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률안의 충분한 검토와 효율적인 입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법률안의 국회 심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③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및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은 법률안이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수정·편경되거나 폐기되고 대안이 발의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및 법제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관계 기관의 장 및 법제처장과 신속히 협의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5. 8.)

④ 법제처장은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이견 여부를 파악하여 해당 이견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1. 19.)

[전문개정 2010. 10. 5.]

제12조의2(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① 제11조의3에 따른 법령안에 대한 관계 기관 간 이견의 해소와 제12조에 따른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입법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 11. 19.)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정부 입법과정에서 법령안의 내용에 대하여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 사이에 법리적 쟁점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한 사항
2.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통일적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3. 대통령령안, 국무총리령안과 내용에 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 사이에 법리적 쟁점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한 사항
4. 「대한민국 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재의(再議) 요구와 관련한 부처 간 협조 및 대책에 관한 사항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및 법제처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법령안 주관기관,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 및 관계 기관 소속의 공무원등에 속하는 일반서
 공무원

㉔ 협의회의 의장은 법제처장이다. 한다.

㉕ 협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7. 5. 8.)

1. 제11조의3제1항이 다른 모체가 있는 경우
2. 정부입법과정에서 관계 기관 간 이견을 해소하거나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경우프린 통민이
 필요하다고 협의회의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㉖ 제2항에 따른 협의의 대상이 아닌 안전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령안 주관
 기관,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 관계 기관, 국무조정실 및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5. 8.)

[전문개정 2010. 10. 5.]

제13조(정부 이송 법률안의 등보 등) ① 등제처장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국회
 그처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고, 『대한민국 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제의 요구에
 관한 권제 부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및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은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중 새의 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본인 일제처장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㉕ 적제처장은 법률안이 내보 새의 요구 여부 및 이유를 심사·검토하고, 부처 간 협조 및 피속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부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0. 5.]

제4장 국민의 입법외견 수렴

제14조(법령안 입법외고)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입법외고를
 하여야 하며, 부처의 소속된 기관의 장은 그 소속 부처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입법외고를 하여야 한다.

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서 따라 입법외고를 선택하려고 하자마자 부결된 사정이 있어 입법외고기간을 같은 법 제43조
 에서 정한 단행의 최대 입법외고기간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반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7., 2013. 1. 22.)

㉕ 『행정절차법』 제41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 22.)

1. 국민의 권·의부 또는 국민생활과 직결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2. 그 부에 법령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결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전문개정 2010. 10. 5.]

제15조(예고방법)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관보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법제정보시스템(이하 "법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며, 그 밖에 신문,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0., 2017. 5. 8.)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법령안의 내용에 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에 예고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5. 8.)

③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한 입법예고가 아닌 경우에는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0., 2017. 5. 8.)

1. 법령안의 주요 내용
2. 제출의견 접수기관
3. 의견제출 기관
4. 의견제출 방법
5.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6. 법령안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7. 조문별 법령 제정·개정이유서 등 입법 배경에 대한 참고·설명자료
8. 그 밖에 입법예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3항제4호에 따른 의견제출 방법은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한 의견제출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 10. 20., 2017. 5. 8.)

⑤ 법제처장은 법령안의 내용이 국가의 중요 정책사항이나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에게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터넷, 일간신문 등에 유료광고를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0.)

[전문개정 2010. 10. 31.]

제16조 삭제 (2004. 1. 2.)

제17조(법령안의 복사비용) 「행정절차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법령안 복사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10. 31.]

제18조(제출의견의 처리)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전자문서 또는 법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된 의견을 포함한다)을 검토하여 법령안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8.)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결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0. 31.]

제19조(제출의견의 반영 권고) 법제처장은 법령안 심사 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법령안에 반영하지 아니한 의견 중 법외적인 사항 또는 입법체계적인

사함으로써 법원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적 때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권할 수 있다.

[전문기정 2018. 8. 28.]

제19조의2 삭제 (2015. 8.)

제20조(자치법규안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작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상도 의미도 구분, 인터넷 방송, 이허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담회 등을 활용하여 입법안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작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자치법규안의 주요 내용, 기술의견 접수기관, 의견제출 기간,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예고한 내용의 전문(전자구조문래비교를 포함한다)을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0. 20.)

③ 자치법규안에 대한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의 처리 및 그 처리 결과 등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5. 10. 2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 10. 20.)

[전문기정 2010. 10. 3.]

제5장 법령안동의 심사

제21조(법령안동의심사 요청) ① 각급 장관 및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의 법령안 주관기관의 작은 법령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다른 위원조직을 설치 후 법제처장에게 그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이 다른 관계 기관의 장관의 협의
2. 행정안전법 제41조에 따른 입법예고
3. 행정규제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규제심사

② 각급 장관 및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의 법령안 주관기관의 상은 제1항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법령안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지지 없이 그 법령안의 내용을 관계 기관의 상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법제처장에서 심사를 요청한 법령안과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상에게 받은 법령안의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보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 또는 조약안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장관의 협의를 거친 후 해당 조약안의 내용이 확정되기 전에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법제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안 또는 조약안이 심사 요청되었을 때에는 그 사무를 취소하여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상의 협력하여야 한다.

1.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관의 협의, 입법예고 절차 또는 규제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법령안 또는 조약안

2.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법령안

3.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거나 법리적으로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령안 또는 조약안

4. 정부장제의 변경 등 사실변경으로 인하여 심사 요청된 법령안의 내용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령안

5. 그 밖에 입법 추진입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법령안 또는 조약안

① 각부 장관 및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의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법령안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법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5.)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을 긴급히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입법 절차 중에도 법령안에 대한 사전 심사를 법제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7.)

[헌재재판 2010. 10. 5.]

제22조(하위법령의 제때 마련)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법률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총리령 또는 부령(이하 "하위법령"이라 한다)의 제정·개정·폐지가 필요한 법규안을 입안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법률이 공포된 후 6개월 이상이 지난 후 시행되도록 시행규칙기간을 두어야 한다.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하위법령의 제정안·개정안·폐지안을 입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법률의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어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8.)

1. 부칙 법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공포 등의 입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2.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가 필요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3. 그 밖에 법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전 준비가 필요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③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하위법령을 제정·개정·폐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법률의 시행일 45일 전까지 법제처장에게 해당 하위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법률 및 하위법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8.)

④ 법제처장은 하위법령을 제때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하위법령의 마련 상황을 국무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헌재재판 2010. 10. 5.]

제23조(대통령훈령안 등의 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훈령 또는 국무총리훈령의 발령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해당 훈령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라 대통령훈령안 또는 국무총리훈령안의 심사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훈령안이 법원에 제출되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훈령을 발령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 게재를 의뢰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법제처장이 통보한 심사결과 공문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8.)

[헌재재판 2010. 10. 5.]

제23조의2(대통령령 등의 국회제출 안내 및 확인) ① 법제처장은 「국회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국회에

세출하여야 할 과세표준을 부과하거나 용납·양행·대용·유양·복수용납·양행의 실시를 필요하였을 때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포 또는 법령의 일부나 10인 이하에 이를 국외 소관상업위원회의 제출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회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규규·고시 등을 국회에 제출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보조신선 2011. 10. 27.]

제6장 법제의 정비·개선 등 (4행 2007. 2. 2.)

제24조(법제정비의 추진) ① 법제처장은 법령 법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검토·정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행 2011. 10. 27.)

1.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오랜 기간 동안 법령의 주요 부분이 개정·보완되지 아니하여 해당 법령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민의 일상생활과 기업·영업 활동에 지대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국내외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중요한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의 검토·정비가 필요한 경우
- 3의2. 국민이 알기 쉽도록 법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법령 법령이 지닌 검토·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법령정비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령정비의 국상·기준·절차·방법과 그 밖의 협조사항 등을 비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이 따른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상 법령을 검토한 후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관 법령에 대한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법제처장에게 통보하고 정비계획에 따른 법령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④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법령정비를 위하여 일반 국민,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으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법령의 정비·개선과 관련된 일반의견을 법제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 법제처장은 법령 등의 정비·개선과 그 밖의 정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민간단체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보조신선 2011. 10. 27.]

제24조의2(허위법문의 신속한 정비체계 마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내부회의 등에서 시도 개선은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된 사항(이하 "제도개선사항"이라 한다) 중 법령의 정비·개정·폐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법령을 신속하게 정비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하여야 할 법령 중 허위법문에 대해서는 정비 대상 법령과 그 수칙 입법 등이 포함된 하위법령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허위법문 등 제도개선사항을 효율적으로 발굴·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수립한 하위법령 정비계획의 소관별 추진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관리하여야 하고, 그 결과 제도개선사항을 일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하위법령의 일괄정비를 요청하는 동시에 법제처장에게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1.)

④ 제3항에 따라 일괄정비를 요청받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의 지원을 받아 신속하게 일괄정비를 진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0. 27.]

제24조의3(훈령·예규 등의 적법성 확보 및 등재 등) ① 각급 행정기관의 훈령·예규·고시(그 명칭에 상관 없이 법령의 시행과 직접 관련하여 발령하는 규정·규칙·지시·지침·통첩 등을 포함하여, 이하 '훈령·예규등'이라 한다)는 그 내용이 적법하고 현실에 적합하게 발령·유지·관리되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예규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에는 발령 후 10일 이내에 해당 훈령·예규등을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령 후 10일 이내에 법제처장에게 해당 훈령·예규등의 제명(題名)과 비공개 사유를 통보하되, 법제처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훈령·예규등을 문서로 보내야 한다.

[본조신설 2018. 8. 28.]

제25조(훈령·예규등의 사전 검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에 훈령·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하여 규제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제처장에게도 그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예비심사가 끝나기 전에 규제개혁위원회, 소관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토의견을 알려야 한다.

1. 해당 훈령·예규등의 제정·개정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2. 해당 훈령·예규등의 제정·개정 내용이 법령에 위법 근거가 있는지 또는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
3. 해당 훈령·예규등의 제정·개정 내용이 다른 훈령·예규등과 중복·상충되는지 여부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예규등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규제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훈령·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현행개정 2018. 8. 28.]

제25조의2(훈령·예규등의 사후 심사 검토) ① 법제처장은 제2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등재된 훈령·예규등을 수시로 심사·검토하고, 법령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훈령·예규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또는 불합리한 사항을 정한 훈령·예규등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의견을 작성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의견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관련 법령 또는 해당 훈령·예규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심사의견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련 사항을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넘겨지성되지 불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혼·배우등록의 제정 또는 개정의 판단이 각 개별 위원회의 심의 등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가 끝난 후 지체 없이 민청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결사의결은 현명한 경우여는 그 내용
2. 상비할 기뢰의 경우여는 그 정지제지
3. 결사의결은 현명할 수 없는 특별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민청선선 2019. 9. 23.]

제7장 법령해석 (거정 1999. 10. 30.)

제26조(법령해석의 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도지사·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문서 수급이 필요한 질의를 받던 중 법령을 문명·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조상하기 위하여 법령해석요청을 관할하는 기관(민사·상사·형사·행정소송, 국가배상 관리 법령 및 업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일치·소행에 대한 해석의 경우여는 법무부를 말하고, 그 밖의 모든 행정 관리 법령의 대외인 경우에는 적지적을 말한다 이하 '법령해석기관'이라 한다)에 적지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령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해석 요청을 받거나 상무에는 해당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해석기관에 적지해석을 요청하려던 그 달 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은 요청하여 그 보신을 받아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년의 회신 규정이 불명확(리은 있으나 사실상 의견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회신 내용을 전부하여 행정처리기판에 적지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3조에 따라 법령해석을 요청받고도 1개월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여 사유를 통보함으로써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에 회신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신 규정을 전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3항 규정에 따라 사실상 의견이 없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신 규정을 전부하여 법령해석 요청을 받거나 같은 달 규정이 적지 불명확(리은 있으나 사실상 의견이 없는 경우)에 법령해석 요청을 받은 법령해석기관은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법령에 대한 의견을 요청 하여야 하고, 그 요청을 받은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여 사유를 통보함으로써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에 법령해석기관으로 요청에 따른 보신을 하여야 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법령해석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비롯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민원인은 행정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해석에 법령에 부합되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처리기판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리 법령

및 법부부 소관 법령에 대하여 법령해석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㉔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민원인으로부터 법령해석의 요청을 의뢰받으면 민원인에게 화신한 내용(민원인의 법령 질의사항을 포함한다)에 추가할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해석의 요청을 의뢰 받은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민원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3.)

1. 제7항에 따른 법령해석 요청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2. 정립된 판례나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3. 구체적인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
4. 해당 민원인이 당사자인 행정실천 또는 행정소송이 계속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
5. 이미 행해진 구체적인 처분이나 행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
6. 법령이 헌법 또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사항인 경우
7.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정책의 판단이나 중앙행정기관 사이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해석 대상 법령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9. 법령해석을 요청하게 된 근거나 사유와 법령해석을 요청할 법령의 규정 사이에 연관성이 없는 등 법령해석 요청의 전체가 잘못되어 법령해석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10. 법령의 규정을 명백하여 해석이 불필요한 경우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서 명백히 법령해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㉕ 제7항에 따라 법령해석 요청을 의뢰한 민원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해석 의견을 첨부하여 직접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해석기관은 법령해석 요청을 받은 때에 그 사실을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28.)

1.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해석 요청을 의뢰받은 후 1개월이 지나도록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령해석 요청 의뢰가 제8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아니한다고 민원인에게 통지한 경우

㉖ 제1항, 제4항,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법령해석을 요청받은 법령해석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해석을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3.)

㉗ 법령해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해석 요청을 반려한다. 다만, 제9항에 따른 법령해석 요청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법령해석기관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인의 법령해석 요청을 반려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9. 8. 13.)

1. 법령해석 요청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법령해석 요청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2. 법령해석 요청이 제8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0항에 따른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전문개정 2010. 10. 5.]

제26조의2(윤령·예규등에 대한 해석의 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협의의 필요를 느끼는 소관 윤령·예규등을 운영·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유관기관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령해석기관의 소관 윤령·예규등의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윤령·예규등의 해석이 규약에는 제27조(제5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문조신선 2017. 5. 8.]

제27조(법령해석 시유사상 및 회신) ① 법령해석기관의 법령을 해석함에 법령해석에 관해 정무 신체의 통일을 제하고 일관성 있는 집행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념하여야 한다.

1. 해당 법령의 입법 배경·목적 및 운영 상태를 명쾌하게 파악할 것
2. 문제의 제기된 구체적 배경과 이유를 조사·확인할 것
3. 현행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 관세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것
- ② 법령해석기관의 제26조제3항에 따라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 관세 행정기관에 불경하의 자정이 대하여 소명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해석기관의 요구 능이 성실하게 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 ③ 법령해석기관을 넘겨주는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조를 받 때에는 제27조의2에 따른 법령해석심의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④ 법령해석기관은 제26조에 따라 법령해석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령해석 요청기관 또는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신속히 회신하여야 하며, 법령해석 결과를 회신할 때에는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⑤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6조제8항에 따라 민원인이 요청을 보기한 법정해석 시일에 대하여 법령해석기관으로부터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시안에 대한 해당 기관의 의견을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 ⑥ 법령해석기관은 제4항에 따라 법령해석 결과를 회신할 경우에는 관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의 회신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령해석에 따라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여부
 2. 법령해석에 따른 입부처리도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 내용
 3. 법령해석에 따른 입부처리와 관련권 중송이 제기되었는지 여부 및 그 결과
 4. 법령해석과 다르게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을 경우 그 이유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령해석과 관련된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제27조의2(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령해석기관 중 법제처에 요청된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제처장 소속으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제4항에 따른 위원(이하 "지명위원"이라 한다) 및 제5항에 따른 150명 이내의 위원(이하 "의욕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거증 2011. 10. 22.)
- ③ 위원장은 법제처장장으로서 하도.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처 소속 지명위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④ 지명위원은 국무부 성실은 수행하는 급형 수 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원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사람이 근무하는 직위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직위 중 법제처 장이 지명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위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제처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 11. 19)

1.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행정기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법령해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0. 3]

제27조의3(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직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제26조제4항 본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한 법령해석사안에 대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당초 회신내용(법령해석이 불명확한 경우와 회신은 있으나 사실상의견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해석을 하려는 경우
 2. 제26조제5항에 따라 법제처가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해석 내용(법령해석이 불명확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해석을 하려는 경우
 3. 제26조제7항·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민원인의 해석 요청 의의를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제처에 요청하거나 민원인이 직접 법제처에 요청한 법령해석 사안에 대하여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당초 회신내용(법령해석이 불명확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해석을 하려는 경우
- ⑥ 위원회는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위원회는 법령해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건축, 세제, 환경 및 노동 등 각 분야별로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11. 10. 27)

[전문개정 2010. 10. 3]

제27조의4(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회(전문위원회와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과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법령해석 안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법령에서 안전의 기술시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법령에서 안전의 기술시설이 되는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자백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법령에서 안전의 기술시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출석하거나 참여하였던 경우

(4)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과 스스로 그 안전의 심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5) 제1항 및 제2항은 지방 민령의식 양식의 경우 그 밖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이게 적용한다.
 [헌재결정 2010. 9. 5.]

제27조의5(위원의 해촉) 법치자정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의장대로 인하여 직무등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상 부패한 행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기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법조선결 2017. 5. 8.]
 종전 제27조의5는 제27조의6으로 이동 (2017. 5. 8.)

제27조의6(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1) 법치자정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2) 법치자정은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원회에 파견된 사건의 인사·처우 등에 관하여 보고를 제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헌재결정 2010. 9. 5.]

[제27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27조의6은 제27조의7로 이동 (2017. 5. 8.)]

제27조의7(수당 등) 회의에 출석할 의원과 관여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헌재결정 2010. 10. 5.]
 [제27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27조의7은 제27조의8로 이동 (2017. 5. 8.)]

제27조의8(운영세칙)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구성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헌재결정 2010. 10. 5.]
 [제27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27조의8은 제27조의9로 이동 (2017. 5. 8.)]

제27조의9(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지인 문서(전자적 또는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
2.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주요의 공상충돌 내용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헌재결정 2019. 6. 5.]
 [제27조의5에서 이동 (2017. 5. 8.)]

제8장 법령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지원

제28조(법제업무의 전문성 확보 및 법제업무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입법·집행 등 법령 운영에서의 적법성·타당성을 확보하고 법제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9. 8. 13.)

1.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시행
2. 법제업무 담당조직의 전문성 확보 방안 마련
3. 소속 법제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직기준 등 인사관리기준의 제정·시행

② 법제처장은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감사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정부입법계획의 시행 및 수정
2. 제14조에 따른 법령안 입법예고
3. 제22조에 따른 하위법령의 제대 마련
4. 그 밖에 운영실태에 관한 분석·평가가 필요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법제업무

③ 법제처장은 제2항에 따라 분석·평가 결과를 실시한 결과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에게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법제처장은 제2항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 8. 13.)

[전문개정 2018. 8. 28.]

제29조(입안지원 등 법제지원) ①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거나 법령안의 입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입법을 추진하려는 법령안에 대하여 입안지원을 하거나 법적 자문에 응하는 등 필요한 법제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8.)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법제지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법제지원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안의 입안과 심사 등 법제 관련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자에게 자문하거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1. 19.]

[제외개정 2018. 8. 28.]

제29조의2(법제교육) ①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이 법령 입안·해석, 자치법규 입안·해석, 법령정비 등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제전문성 향상을 위한 법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9.)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소속 공무원 등의 법제전문성 향상 등을 위하여 법제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법제교육을 요청할 수 있고, 법제처장은 필요한 법제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1. 19.]

제29조의3(자치입법 지원) ① 법제처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정비하려는 경우 그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지지원을 할 수 있다.

㉞ 별제직장은 지령지시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지지입법 지원에 필요한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헌선 2010. 8. 13.]

㉟ 별제직장은 우수한 지지입법 활동을 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헌선 2010. 8. 13.]

㊱ 협제직장은 제1형부터 제3형까지의 유형에 따른 사형 외의 사치법규의 법적합성을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문성능 높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3.]

[헌조헌법 2014. 11. 19.]

제29조의4(수당) 부서직장은 제29조, 제25조의2 및 제26조의3이 따른 법적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별제직우 등을 수행하는 전문가나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헌조헌법 2014. 11. 19.]

제30조(법제정보시스템의 구축·완성 등) ① 업제직장은 정부에서 다루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처리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법제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8.]

1. 정무원변 제회의 수일 및 추진현황 관리
 2. 직선부의 법률안에 대한 해당 스텝기관·관서의 기간 종료 및 의견 수렴
 3. 정무원 임명 단서(임법이그부터 별첨한공보까지의 단서를 말한다)별 법령인 통일법정보 공자 및 저출의신 조수
 4. 법령안·대통령훈령안·각부총리훈령안의 입안 및 심사
 5. 훈령·예규등이 위한 심사·회의
 6. 법령예식 안건의 검토 및 결과확인
 7. 자치법규 입안 관련 지원
 8. 법령정보(훈령·예규등, 자치법규, 법령해설례, 자치법규 지원사례, 그 밖에 법령의 질의와 해석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의 관리 및 저장
 9. 그 밖에 업제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
- ② 협제직장은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누구나 법령이그 입결안이 관련 의견을 쉽게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헌선 2017. 5. 8.]

㉞ 별제직장은 법제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훈령·예규등을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니 그 밖에 법적업무의 완결이그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5. 8.]

㉟ 별제직장은 법제정보시스템과 법령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8.]

[헌조서총 2010. 10. 5]

[헌조서총 2017. 5. 8.]

부칙 (R30045호, 2019. 8.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계 기관의 장의 의견에 대한 소관기관의 장의 회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9년 9월 1일 이후 발의되는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9. 7. 11 (총리령 제155호, 2019. 8. 28. 일부개정)]

법제처(기획재정부담당관실) 044-200-654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0. 14.]

제2조(법령 입안 시 유의사항) 법령안의 입법을 추진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법령안 주관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령 입안 시 법령안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17.)

1. 입법의 필요성

- 가. 새로운 입법조치가 필요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명확히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검토를 기초로 할 것
- 나. 입법 내용이 그 적용 대상이 되는 일반 국민의 준수를 기대할 수 있는 강제적 규범으로서의 실효성을 가질 것

2. 입법 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 가. 헌법의 이념을 구체화하고,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는 내용으로서 개인의 지위 존중과 공공 복리의 요청이 조화를 이루고, 권한행사의 절차와 방법이 공평하여 부당하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국민생활에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사회 질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것
- 나. 헌법과 상위법에 모순되거나抵触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하위법령과 관련하여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할 것

3. 입법 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 가. 다른 법령(조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의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법령 상호 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을 것
- 나. 입법 내용이 해당 법령의 소관 사항에 적합할 것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 가. 입법 내용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고 입법 의도가 오해되지 아니하도록 정확히 표현 할 것
- 나. 적용 대상이 되는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전체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을 배열할 것

[전문개정 2010. 10. 14.]

제2장 정부입법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입법계획의 수립·시행)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 추진에 관한 충분한 검토와 사전 준비를 통하여 해당 입법이 「법제업무 운영규정」(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규칙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입법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0. 14.]

제4조(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제출 등)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른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법률안을 7월 31일까지 법제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입법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15.)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른 제출기한 후에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른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법률안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법률안의 내용을 미리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15.)

[전문개정 2010. 10. 14.]

[제4개정 2017. 5. 15.]

제3장 법령안 재정소요추계제도의 운영

제5조(재정소요추계서의 작성)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법령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입안할 때에는 영 제11조 제3항에 따라 법령안 재정소요추계서(附設所要推計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부담이 연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성 경미로서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지출 증가
2.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 증가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소요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정소요추계서를 작성한 법률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안을 입안하는 경우. 다만, 법률에서의 재정소요추계 규모보다 재정부담이 현저히 증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령안에 재정소요추계의 내용을 첨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3. 법령안의 성격상 재정소요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

③ 재정소요추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령안 명 및 관련 조문
2. 재정소요추계의 내용
 - 가. 추계의 전제
 - 나. 추계의 결과
 - 다. 재정부담의 방법

3. 시정지

4. 그 밖에 기외제정부상관⁴⁾ 성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9. 10. 14.]

제6조(재정소요추계의 방법 및 기간) ① 제5조에 따른 재정소요추계는 재정의 직접적인 부담에 한정
하며, 필요한 경우 간접적⁵⁾ 부담 및 사회보과를 도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소요추계는 법률안의 내용을 순차적⁶⁾ 부담 증가사유에 대하여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⁷⁾으로 예측되는 재정부담을 제량⁸⁾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감용하여 재정부담의 추계에서 여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소요추계의 대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직접적인 재정부담이 연간 500
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대상기간을 10년으로 한다.

④ 재정소요추계에는 연도별 재정부담의 규모를 표시 하며, 추계의 정확성 인⁹⁾을 제정부담의
규모를 상향하기 위하여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¹⁰⁾과 협의하여 달리 표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10. 14.]

제7조(자원조달의 방법 표시) ① 재정소요추계시에는 유지된 재정부담에 상응하는 자원조달의 방법을
적어야 한다.

② (지)항에 따른 자원조달의 방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 또는 해외부문 중 부문별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14.]

제8조(관계 부처와의 협의) 법령안 주관기관의 상은 재정소요추계시 소정 대상 집행인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장¹¹⁾에게 따른 협의의식기관의 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협의할 때에는 법령안이 재정
소요추계서를 첨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17.)

[전문개정 2010. 10. 14.]

제3장의2 입법과정에서의 협조 (신설 2004. 2. 18.)

제8조의2(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정부 내 기관 간 협조) ① 법제처장은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하
"의원발의법률안"이라 한다)의 국회 소관 하원의원회 등에서의 회부 사실은 영 제11조의2제1항이
따라동차한 때에는 의원발의법률안 소관 유관내장 기관(이하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이라 한다)의
장¹²⁾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법적정보시스템(이하 "법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
으로 송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부처 간 협조가 명백히 곤란한 사실이
대해서는 그 조문을 삭제해서 송신하여야 한다.

② 영 제11조의2제2항 본문에서 "총리 명으로 정하는 경우"라 하는 4종의 이¹³⁾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6. 20.)

1. 헌법 위반 또는 법령(6항)을 위반한다: 상고 권의 체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¹⁴⁾는 경우
2. 규제가 신중도거나 상화되는 경우

법제처장(법제처) 2024. 07.07.

3. 조세 감면이나 세율저축 증가를 수반하는 경우
 4. 조직의 신설·폐지 및 변경이 있거나 정원이 늘어나는 경우
 5. 정부의 중요 정책사항과 서로 배치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6. 해당 법률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7. 양성평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
- ①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의원법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법의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면 지체 없이 관계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의원법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은 국회의 심의 일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처협의 시한(始限)을 달리할 수 있다.
- ② 제3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의원법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은 관계 기관의 장의 의견 및 협의 결과를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 ③ 법제처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법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이 관계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법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에게 관계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6. 2. 17.]

제4장 국민의 입법의견수렴

제9조 삭제 (2013. 1. 22.)

- 제10조(제출의견의 반영)** 법령안 주권기관의 장은 입법예고된 법령안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의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되, 특별 개인이나 단체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 10. 14.]

제5장 법령안동의 심사

- 제11조(법령안의 심사)** ① 법령안 주권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에게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4., 2017. 5. 18., 2019. 8. 28.)
1. 정부입법계획과의 합치 여부에 관한 사항
 2. 관계 기관과의 협의 결과 공문 사본 1부
 3. 부대설명평가, 통계기반정책평가,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및 자치분권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 3의2. 「실비명령평가법」에 따른 실비명령평가에 관한 사항
 4.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의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에 관한 사항

5. 지정소요처서(지크르에 나다 지정소요처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범람만을 심사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법령안에 대한 구체적 사무부의 규제의 신설·종회 및 폐지 전수 등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구체적 사무의 완성된 사항
 7. 조부별 법령 제정·개정 사유서
 8. 조부별 법령(안) 관련도 신청자료 등 법령이 심사의 필요할 사항
- ② 법제처장은 법령안을 심사할 때에는 해당 법령안의 도입 내용 및 형식이 제2조 각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유사과정에서 공생상·지연성·안정성 및 지속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법제처장은 법률안을 심사할 때에는 해당 법률안이 별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포 후 6개월 이상의 시행수요기간을 두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④ 법제처장은 법령안 심사시 필요할 경우에는 하위법령과 부속 법령의 지류는 아니 세출범위인 사실인지 여부를 지라도도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 10. 14.]

제12조(하위법령의 동시 검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국가정책을 집행에 실현하기 법령 단계별 중요적인 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법률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안·총리령안 및 부령안 등 하위법령안이 가능하면 해당 법률안의 입안 시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0. 14.]

제13조(하위법령안의 사전 준비)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공포와 동시에 또는 공포 후 1개월 이내에 시행되어야 할 법률의 하위법령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안의 국회 심의기간 중에 필요한 법령 준비 절차준비하는 등 하위법령이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준비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0. 14.]

제13조의2(국무회의 등 상정을 위한 조치) ① 법제처장은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의 심사준비하는 것이 지체 없이 국무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안일 상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난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안에는 법제처의 심사준비했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0. 14.]

제13조의3 삭제 (제10. 10. 14.)

제6장 법제의 정비·개선 등 (개정 2007. 2. 2.)

제14조(법제정비의 추진절차) ① 별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령정비의 추진에 관한 통보령 관의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법령을 검토한 후 정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법령에 대한 경제적 효율 다른 부처 소관 법령 등 정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부처 소관 법령 등 정비 의견 법령을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자체적으로 법령정비 대상을 조사·발굴하고 해당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정비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법령정비계획과 자체적으로 발굴한 법령정비안 및 영 제2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일반 국민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입법의견을 취합하여 전체 법령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반기별 법령정비 실적을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4.]

제15조(국민법제관) ① 법제처장은 영 제2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정비·개선과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직무를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국민법제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법제처장은 국민법제관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법제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국민법제관의 분야별 구성 및 운임, 국민법제관 회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제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 10. 4.]

제16조 삭제 (2012. 10. 4.)

제17조(법제정비실무협의회 및 실무직업반의 설치) ① 법제처장은 효율적인 법제정비를 위하여 행정기관 간 협力が 필요한 경우에는 각 중앙행정기관 소속 관계 공무원 및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 법제정비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제정비를 위한 기초자료의 조사·분석, 정비 대상 법령의 정비안 마련 및 법제정비실무협의회와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본부·실·국의 주무과 또는 팀의 장 및 법무·법제업무를 담당하는 과 또는 팀의 장으로 실무직업반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0. 14.]

제18조 삭제 (2010. 10. 14.)

제19조 삭제 (2018. 8. 29.)

제20조(훈령·예규 등의 사전 검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훈령·예규·고시그 명칭에 상관없이 법령의 식별과 취급 관련하여 발령하는 규정·규칙·지시·지침·통첩 등을 포함하여, 이하 이 조에서 "훈령·예규등"이라 한다)의 발령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자체심사 의견 및 행정기관·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에 관한 서류

2. 그 밖에 훈령·예규등의 제정·개정과 관련된 설명자료 등 검토에 필요한 서류

② 법제처장은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훈령·예규등의 발령안을 검토하는 경우 그 훈령·예규등의 발령안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8. 8. 29.]

제7장 법령해석

제21조 삭제 (2005. 7. 1.)

제22조(법령해석의 요청방법 등) ①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1. 조항의 요지

2.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 법령의 조문 및 관련 법령

3. 대법원은 의견 및 그 이유

4. 법원행정처 요청기관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 및 이유

② 민원인이 영 제76조제7항 또는 제77항에 따라 해당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하거나 직접 행정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로 하여야 한다.

1. 실의의 요지

2.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 법령의 조문 및 관련 법령

3. 소관도청 의견 및 그 이유

4. 행정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의견 및 그 이유

5. 민원인의 의견 및 그 이유

③ 영 제26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으로부터 민원인이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실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추가된 의견이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의견을 행정해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6.)

[전문가집 2010. 10. 14.]

제22조의2(비공개 사항) 영 제27조제9제2호에서 “관리정보로 성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5. 15.)

1. 법령해석담당부서장이 부치는 안전의 내부 검토자료

2. 식의의 권익할 또는 추더의 위임의 영단

[전문가집 2010. 10. 14.]

제8장 법령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지원

제23조(법무 담당 공무원의 인사관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28조에 따라 법무 담당 공무원의 인사관리기준을 정할 때에는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법무 담당 공무원에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가집 2010. 10. 14.]

제24조(법제업무 지원) ① 고지처장은 영 제29조·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에 따른 부인직원 등 법제

지원, 법제교육,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지원 등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속히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가정 2015. 2. 17, 2018. 8. 29, 2019. 8. 28)

③ 법제처장은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입법에 필요한 법률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0. 14.)

부칙 (제1550호, 2010. 8.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 10. 25.] [국무총리령 제596호, 2017. 10. 25. 타법개정]

법제처(법제정책운영법제관실), 044-200-68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입법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부부처간 및 정부·국회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인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법률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하여 국회의심의 과정에서 주요내용이 수정된 법률안(이하 "적용대상법률안"이라 한다)의 심의·의결 및 공포 등 입법절차의 모든 과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의원발의법률안의 통보 등) ① 법제처장은 의원발의법률안이 제안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법률안 소관부처(이하 "소관부처"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소관부처의 장은 당해 법률안을 검토하고,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및 법제처 등 해당 업무와 관련 있는 부처(이하 "관련부처"라 한다)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협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3. 4. 15., 2014. 12. 31., 2017. 10. 25.>

③ 소관부처의 장은 정부제출 법률안이 국회의심의 과정에서 법제처 장에게 다른 법률과의 충돌, 조세의 감면, 재정지출의 증가, 조직의 신설·폐지·변경, 인원의 소요, 규제의 신설·강화, 정부정책의 변경 등 그 주요내용의 수정에 관한 논의가 있거나 수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예상되는 쟁점 등을 검토하고, 관련부처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협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10., 2010. 6. 4.>

④ 소관부처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법률안이나 제3항에 따른 수정사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부처의 장에게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검토의견과 필요한 조치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 6. 4.>

1. 헌법에 위반되는 등 중대한 법리상 문제가 있거나 다른 법률과의 상충이 명백한 경우
2. 조세감면이나 재정지출 증가를 수반하는 경우
3. 조직의 신설·폐지 및 변경이 있거나 인원의 소요가 있는 경우
4. 규제를 신설하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경우

제4조(적용대상법률안의 검토 및 의견통보) ① 법제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용대상법률안을 검토하고, 그 검토의견을 소관부처의 장 및 국무조정실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08. 7. 10., 2013. 4. 15.>

1. 법리상 쟁점의 유무 여부
2. 다른 법률과의 충돌 여부
3. 조세의 감면 여부
4. 재정지출의 증가 여부

5. 정부조직의 신설·폐지·변경 및 인원의 소요 여부

6. 규제의 신설·강화 여부

7. 입법절차상 부처간 이견 및 그 방에 집행상 문제를 유발 여부

③ 제1항제4호에서 “제정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7. 10.)

1. 국가의 일반회계의 증가 또는 특별회계의 신설·증가

2. 기금의 신설 및 「국가재정법」 별표 2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 증가

3. 부담금의 신설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별표에 의하여 설치된 부담금의 증가

④ 법제처장은 적용대상법령안을 검토한 결과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관련된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1항제5호에 관련된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그 검토의견을 통보한다. (개정 2008. 7. 10., 2013. 4. 15., 2014. 12. 31., 2017. 10. 25.)

④ 법제처장은 제1항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적용대상법령안에 대한 소관부처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관부처에 대하여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검토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제5조(관련부처의 장의 의견 청취 등) ① 소관부처의 장은 적용대상법령안에 조세의 감면, 재정지출의 증가, 조직의 신설·폐지·변경, 인원의 소요, 규제의 신설·강화, 정부조직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련부처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 7. 10., 2010. 6. 4.)

② 관련부처의 장은 적용대상법령안 중 그 관할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처의 장에게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부처의 장관 제시된 의견을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토의견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제처와 관련부처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제6조(의견의 사전조정 등) ① 적용대상법령안에 대하여 소관부처의 장의 의견과 관련부처의 장의 의견이 다른 경우 소관부처의 장관 관련부처의 장과 그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에도 불구하고 의견조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부처의 장 및 관련부처의 장관 부처간 협의를 위하여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정부입법협의회의(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의장에게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2조의2제6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의(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0. 6. 4.)

③ 제1항에 의한 협의에 불구하고 의견조정이 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라 소집된 실무협의회의에서도 의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부처의 장 및 관련부처의 장관 협의회의의 장에게 부처간 협의를 위한 협의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무협의회의의 의장도 협의회 때 의장에게 협의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처 또는 관련부처의 장은 적용대상법령안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즉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규정”에 따른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이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라 한다)에 협의·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 6. 4., 2017. 10. 25.)

⑤ 협의회의의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소집된 협의회의에서도 정책적 판단 등을 원인으로 부처간 의견 협의가 더 이상 진행되기 어려운 경우 법제처장에게 해당 안건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 6. 4.)

⑥ 법제처장은 제5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안건에 대하여 국무조정실장과 협의를 거쳐 국정현안결

진지진취리에 회의·조정을 의의하여야 한다. (헌법 2010. 8. 4., 2013. 4. 15., 제7조 10 25.)

○ 소관부처의 장은 법제처장으로서 제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의견을 불요불박은 아니
는 이를 소관부처의 의견에 반영하거나 반영이부어 관하여 법제처장과 협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되어야 한다. (개정 2010. 8. 4.)

○ 법제처장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의견에 대하여 소관부처가 이견을 지시하는 구
에는 질의회의 또는 협의회에 이를 상정하여 협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제7조(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협의사항) 법제처장(운영규칙 제12조의 3제2항제2호에 따른 협의사항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류대상법률안의 취리적 점정에 대한 대응방안의 협의
2. 적용대상법률안이 조세간부의 필요, 재정지출의 증가, 정부조직의 신설·폐지·년경, 국제적 신
원·경호 또는 그 밖의 집행장구제가 있는 경우 그 대응방안 협의
3. 의원발의법률안의 소관부처기 불분명한 경우 그 소관부처 협의
4. 그 밖에 직류대상법률안에 대한 정부의견의 통일을 위한 회의
[전문개정 2010. 8. 4.]

제8조(협의회의 소집) ① 협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회를 소집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소집된 실무협의회에서 조 부처간 의견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소관부처나 권력부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제6조제8항에 따라 법제처장이 협의회에서 협의하게 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권한이 없으나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8. 4.]

제9조(전담인력) 법제처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업무의 제6조에 따른 협의회의 사무처리 등이
효율적 시행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인력을 둔다. (개정 2010. 8. 4.)

제10조(협의결과보고) 법제처장은 제5조제2항, 제3항,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협의결과 필요하디
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무총리에게 그 협의 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제11조(소관부처의 장의 국회의견제출등) ① 직류대상법률안의 소관부처의 장은 당해 법률안에 관한
정부의 통일된 의견을 국회에 적극적으로 제출하거나 발언함으로써 당해 법률안에 정부의 의견
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법제처장은 제13조에 의하여 국회로부터 보고받거나 제14조에 의하여 기록평가 자료로 활용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부처의 장 및 권력부처의 장이 제11항에 의하여 국회에 제출하
거나 발언한 내용을 제출하지 않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교의당정협의회의 회의 보고) 법제처장은 직류대상법률안에 대한 정부의견의 일관성등을 위
하여 교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쟁합의업무운영규정' 제7조의 따른 교의당
정협의회의 모의에 따른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0. 9. 18.)

제13조(국무회의 보고) 방제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용대상법률안의 입법추진상황 및 정부 대응 개선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제14조(중앙행정기관평가 자료 활용) ① 국무총리는 적용대상법률안에 대한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6조 및 제11조제1항 등에 따른 소관부처 및 관련부처의 대응노력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평가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7. 10., 2010. 6. 4.)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소관부처나 관련부처의 장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0. 6. 4.)

[제4회개정 2010. 6. 4.]

부칙 (제26호, 2017. 10. 25.)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의원입법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



Q1

국회에서 각 부처에 공문으로 기간을 정하여 검토의견을 요청하는 경우 그 기간 내에 의견협의를 안될 경우에는 개별 부처의 의견을 국회에 송부할 수 있는지?

국회의외 의견제시 요구 유무에 관계없이 소관부처 또는 관련부처가 국회에 의견을 제시하는 때에는 부처 간 의견협의 후 정부의 조율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가능하면 국회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속히 협의하여 의견을 제출하되, 합의 전에 의견제시를 해야 하는 경우 관련부처의 이견내용을 명시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Q2

부처에서 법제처에 검토의견을 보내주면 법제처에서 국회에 의견제출 등 대응을 하는 것인지?

소관부처가 부처 간 의견협의 및 국회에 의견제출 등 의원입법에 대한 대응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법제처도 각 부처에서 법제처에 제출한 검토의견과 법제처 검토의견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직접 전달함으로써 정부 의견이 빠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3

부처 간 의견협의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제처에서 의견조정을 해주는 것인지?

부처 간 의견이 조율되지 않은 경우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 상정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① 소관부처 또는 관련부처가 신청이 있거나, ② 법제처가 직권으로 안전을 선정하는 경우에 개최하여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홈페이지 주소	
법 제	http://www.moleg.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정부입법지원센터	http://www.lawmaking.go.kr	
대한민국국회	http://www.assembly.go.kr	
국회상임위원회	국회운영	http://steering.na.go.kr
	법제시법	http://legislation.na.go.kr
	정책무	http://policy.na.go.kr
	기획재정	http://finance.na.go.kr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http://science.na.go.kr
	교육문화체육관광	http://educulture.na.go.kr
	외교통일	http://ufi.na.go.kr
	국방	http://defense.na.go.kr
	행정안전	http://administration.na.go.kr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http://agri.na.go.kr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http://industry.na.go.kr
	보건복지	http://health.na.go.kr
	환경노동	http://environment.na.go.kr
	국토교통	http://itc.na.go.kr
	장보	http://intelligence.na.go.kr
	여성가족	http://women.na.go.kr
	예산결산특별	http://budget.na.go.kr
	윤리특별	http://moral.na.go.kr
	국회입법지원기관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국회예산정책처		http://www.nabo.go.kr
국회입법조사처		http://www.nars.go.kr
국회정보시스템	의안정보	http://likms.assembly.go.kr/bill
	열린국회정보	https://open.assembly.go.kr
	법률지식정보	http://likms.assembly.go.kr/law
	입법예고	http://pal.assembly.go.kr
	국정감사정보	http://likms.assembly.go.kr/inspections
	예산·결산정보	http://likms.assembly.go.kr/budget
	영상회의록	http://w3.assembly.go.kr/vod
	회의록	http://likms.assembly.go.kr/record
	인터넷의사중계	http://assembly.webcast.go.kr
	미디어자료관	http://w3.assembly.go.kr/multimedia
	맞춤입법콘텐츠	http://naph.assembly.go.kr

2020 의원입법 지원업무 편람

발행 2020년 12월

발행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044-200-6805

디자인·인쇄 (주)삼양기획 044) 866-3011

이 책의 저작권은 법제처에 있으며, 무단복제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 법제처, 2020